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2014. 8. 31.

주 의

1. 이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NECA IRB15-004)을 받은 연구사업입니다.
2. 이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의 결과 보고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관리위원회(또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연구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정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민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김선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연구원

차 례

요약문	i
Executive Summary	iv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5
3. 연구 목적	6
II. 선행연구 및 현황	7
1. 문신 관련 국내 선행연구	7
2. 문신의 국내 법적 위치	10
III. 연구 방법	11
1. 유해사례 구조적 문헌 고찰	11
2. 국외 문신 관련 규정 조사	12
3.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12
IV. 연구 결과	13
1. 유해사례 구조적 문헌 고찰	13
2. 국외 문신 관련 규정 조사	29
3.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40
V. 고찰 및 결론	50
1. 고찰	50
2. 연구의 한계	55
3. 결론 및 정책제언	56
VI. 참고문헌	57
VII. 부록	65

표 차례

표 2-1 문신용 염료 내 중금속 함량	7
표 2-2 유해물질이 검출된 문신용 염료 현황	8
표 3-1 국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11
표 3-2 선택/배제 기준	12
표 4-1 국내에서 보고된 문신 관련 유해사례	16
표 4-2 국내에서 보고된 서화문신 관련 유해사례	17
표 4-3 국내에서 보고된 미용문신 관련 유해사례	18
표 4-4 국외에서 보고된 서화문신 관련 유해사례	19
표 4-5 국외에서 보고된 미용문신 관련 유해사례	20
표 4-6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발적 및 통증	21
표 4-7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감염	21
표 4-8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면역 관련 질환	21
표 4-9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신생물(암)	23
표 4-10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기타	23
표 4-11 도구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24
표 4-12 미숙한 시술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25
표 4-13 문신 피술자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25
표 4-14 외부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25
표 4-15 원인 불명의 문신 유해사례	25
표 4-16 국외 문신 유해사례 조사 연구	26
표 4-17 문신 관련 규정 분류	29
표 4-18 국가별 문신 관련 규정 특징	30
표 4-19 미국 각 주의 문신 관련 규정 내 포함 사항	31
표 4-20 미국 주별 미성년자 문신 규제	32
표 4-21 유럽 연합 국가별 문신 관련 규정 현황	35
표 4-22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지 구성	41
표 4-23 설문조사 대상 문신 시술자의 일반적 특성	43
표 4-24 문신 업태	45
표 4-25 문신업을 하지 않는 이유	47
표 4-26 문신 관리 현황	48

그림 차례

그림 4-1 구조적 문헌 고찰 과정	13
그림 4-2 문헌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일별 참여 인원 수	42

요 약 문

□ 연구 배경

: 문신은 외상문신, 서화문신, 미용문신, 의료문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에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화문신은 비의료인인 문신 시술자가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서화문신에 대한 합법화, 제도화 요구가 2007년부터 꾸준히 있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구조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문헌으로 보고된 문신 유해사례를 종류, 양상, 원인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2) 주요 국가의 문신업 관리 규정을 분석하여 문신업자/문신업소 자격 및 관리규정, 염료의 관리규정과 이외 문신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며, 3)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문신 시술자의 현황을 알아보아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연구 방법

문신의 유해사례 검색을 위하여 구조적 문헌 고찰 방법을 차용하여 수행하였다. 검색 대상 데이터베이스는 국외 3개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7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였다.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관련 규정과 염료 규정, 이외 미성년자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한 후 예비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설문 내용을 수정하였다. 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연구 결과

- 문신의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이 있음
- 외국에서는 문신시술자-문신업소, 위생, 미성년자 문신 금지, 염료 등으로 나누어서 문신을 관리하고 있음
-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는 안전한 문신을 위한 요건으로 자격관리 제도 도입, 안전관리 규정 마련, 위생관리 교육 등을 언급함

I. 구조적 문헌 고찰

서화문신, 미용문신, 의료문신 등 문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를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유형화하였다. 국내 17건, 국외 60건의 문헌이 선택되었다. 유해사례는 발적·통증/감염/면역 관련 질환/신생물(암)/기타로 유형화하였다. 감염은 박테리아 등의 급성 감염 및 B형 간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e Virus, HIV), 매독 등의 만성 감염이 있었다. 면역 관련 질환으로는 거짓립프종, 유육종증(sarcoidosis), 육아종 등이 보고되었다.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유해사례로는 편평세포암, 흑색종 등이 있었다. 이외 색소침착,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 시 상호작용으로 인한 신호 없음 등이 보고되었다. 문헌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면역 관련 질환이다.

유해사례의 원인이 명확하게 보고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박테리아에 오염된 염료, 염료 내 중금속,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숙련되지 않은 **시술** 등으로 원인을 추정하였다.

II. 국외 규정 검토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필리핀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문신 관련 규정은 크게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염료 규제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담당하는데, 지금까지 FDA가 승인한 문신 염료는 없었다.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규정·위생 규정·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은 주법으로 규정하였다. 유럽 연합에서는 2008년 문신용 염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의 목록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 각 국가에서도 문신용 염료 규정을 신설하는 추세이다. 프랑스에서는 문신 관련 규정이 2008년 신설되었는데, 문신업자·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규정을 모두 포함하였다. 일본과 대만은 문신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일본에서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한다. 대만은 문신을 서비스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법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은 금지하였고, 문신 시술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필리핀은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이 존재하였고, 임신부 등 문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제한하였다.

Ⅲ.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Tattooist Survey)

2014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까지 10일 간 한국타투인협회(Korea Tattoo Artists Association, KTAA)와 한국타투협회(Korea Tattoo Association, KTA) 협조로 문신 시술자 대상 인터넷 기반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문신을 배우게 된 동기 및 교육 내용/문신 업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총 1,004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538명이 설문조사를 완결하였고, 설문조사 완결자 중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한 537명을 분석하였다.

문신을 배우게 된 동기는 예술성 위주의 관심이 대부분이었다(67.4%). 문신은 기존의 국내 문신 시술자에게 도제식 수업을 받은 경우(71.0%)와 독학으로 문신을 배운 경우(15.1%)가 대다수였다. 1회용 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처리(47.9%)하는 등의 위생 문제가 있었다.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요건으로 자격 관리 등 양성화 요구(33.0%)외에 안전 관리 규정 마련(27.2%)과 위생관리 교육(14.9%)에 대한 응답도 많았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유해사례가 수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국가에서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문신업을 관리하고 있다.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자격 관리, 위생 관리, 염료 관리, 미성년자 문신 금지 등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요어

: 문신, 타투, 문신 시술자, 유해사례, 규정, 설문조사

Pilot study for understanding the present situation of decorative tattoos

Jeong-Su Park¹, Sukyeong Kim¹, Minjeong Kim¹, Sunkyung Kim¹

¹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 **Background**

Tattoos are classified as traumatic tattoos, decorative tattoos, permanent make up, and medical tattoos. Currently the tattooing is considered a medical practice in Korea. Thus, it is illegal for anyone other than medical practitioners to tattoo others. However, tattooists rather than medical doctors perform most decorative tattoos. Therefor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attooist licence regulations have been consecutive since 2007.

☐ **Objective**

We performed a pilot stud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research plan to assess the actual condition of decorative tattoos. The pilot study consisted of three parts: a structured literature review investigating adverse events, a review of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 and a survey of tattooists.

☐ **Methods**

We used a structured strategy to perform a literature review. Specifically, three domestic and seven international databases were selected for inclusion in the literature search. Additionally, tattoo-related regulations/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France, Japan, Taiwan and the Philippines were reviewed. Based on interviews with tattooists,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Subsequently, an anonymous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 Results

- Tattoo-related adverse events involved redness/pain, infection, immune-related diseases, and neoplasm.
- Tattoo regulations included conducting tattooist/tattoo parlor, hygiene, tattooing minors, and tattoo ink.
- License regulation establishment, safety regulation establishment, and sanitary education are needed.

I. Structured review of tattoo-related adverse events

The Literature search was primarily conducted utilizing Ovid MEDLINE, Ovid EMBASE, and PubMed. Domestic databases (KoreaMed, KISS, RISS, KMBASE, Korean National Assembly Library, KISTI,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ere also used. A total of 77 studies were included (60 international studies, 17 domestic studies). Adverse events were categorized into redness/pain/infections/immune diseases/neoplasms/other. Infections were divided into acute and chronic infections (e.g., hepatitis type B, human immune virus, syphilis). Immune diseases consisted of pseudolymphoma, sarcoidosis, and granuloma. Neoplasms included events such as melanoma, squamous cell carcinoma, and basal cell carcinoma. Interactions with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were also reported.

In most studies, the causes of adverse events were not clarified. The suspected reasons included tattoo ink contaminated with bacteria, heavy metals in tattoo ink, needle reuse, poor sanitation, and poor practitioner training.

II. Review of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We reviewed the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France, Japan, Taiwan, and the Philippines. The reviewed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contained the following: conducting tattooist/tattoo parlor, hygiene, tattooing minors, and tattoo ink. In the United States, no tattoo ink pigments have been approved by the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ther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were state codes. On

February 20, 2008, the Committee of Ministers at the Council of Europe adopted a negative list of tattoo ink ingredients (Resolution ResAP(2008)1). As result of this resolution, many European countries considered developing tattoo-ink regulations. In France, tattoo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in 2008, including tattooist/tattoo parlor regulations, hygiene regulations, prohibition of tattooing minors, and tattoo ink regulations. There were no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in Japan and Taiwan. Tattooing was also considered a medical practice in Japan. In the case of Taiwan, tattooing was a gray area and was deemed to a service contract. Tattooing minors was illegal because they are not perceived as capable of making legal decisions. However, the health department of the city government provided health and safety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established tattoo regulations included tattooist/tattoo parlor regulations, hygiene regulations, and prohibiting tattooing minors. Additionally, the law restricted pregnant women and others who are not allowed to get a tattoo.

III. Tattooist survey

We performed an anonymous web-based survey for tattooists from August 8 to August 17, 2014,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Tattoo Artists Association (KTAA) and the Korea Tattoo Association (KTA). The questionnaire domains consisted of areas such as motivations to learn how to tattoo, contents of the training course, and conditions of the tattoo business. etc. A total of 1,004 tattoois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data from 537 tattooists were analyzed who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 large number of respondents replied the motivation to learn how to tattoo was sparked by artistic interest (67.4%). Most tattooists learned to practice tattooing from domestic tattooists (71.0%), and through self-education (15.1%). The major sanitary problem was the general disposal of single use waste (47.9%). Respondents also indicated that the requirements for a safer tattoo practice were establishment of a tattoo license regulation (33.0%), safety regulation establishment (27.2%), and sanitary education (14.9%).

☐ Conclusions

The practice of tattooing is invasive, and involves penetrating the skin and injecting ink pigment.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of adverse events. Many countries have tattoo regulations/legislation related to practicing tattooing. The regulations/ legislation consists of conducting tattooist/tattoo parlor, proper hygiene, prohibiting tattoos for minors, and contents of tattoo ink.

Key words

tattoo, tattooist, adverse event, regulation, legislation, survey



서론

1. 연구배경

1.1. 문신의 개념 정의

문신은 바늘로 살갓을 찢어서 먹물 등의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등의 무늬를 새기는 행위이다.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나 특정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행위, 눈썹이나 눈꺼풀, 입술 등 얼굴과 두피, 유두 등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문신은 'tattoo'라는 용어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decorative tattoo, contour make up, face contour, permanent make up, art make, permanent cosmetic, micro pigmentation, permanent ink design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신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헤나(Henna, 혹은 멘디 Mehndi)가 있다. 헤나는 이집트 등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라우소니아 이네르미스(lawsonia inermis)라는 관목의 잎을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것 혹은 그 분말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헤나는 천연 염료의 일종으로, 염모제 혹은 피부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데에 사용된다. 내추럴 헤나는 붉은 갈색으로 1~2주간 지속되며, 알려진 큰 부작용은 없다. 블랙헤나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검정색을 띠고 3일~2주간 지속된다. 이외에도 반짝이 가루를 붙이는 레인보우 헤나와 큐빅을 붙여 만드는 크리스탈 헤나 등이 있다.

문신은 피부에 글씨나 그림을 그린다는 면에서 헤나와 유사하다. 하지만 헤나는 표피층이나 진피층이 아닌 피부 표면에 색소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며, 2주 정도 지속되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문신과 구분된다.

문신은 바늘 등을 이용하여 피부를 관통한다(penetrates)는 면에서 피어싱(piercing)과 유사하다. 피어싱은 피부에 구멍을 뚫어 장식 고리 등을 다는 행위인데, 색소를 주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신과 구분된다. 반흔문신(瘢痕文身, branding/scarification)은 칼 따위로 살을 베거나 불로 지져서 상처를 내어 신체에 문양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문신은

피부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점에서 반흔문신과 유사하나, 반흔문신은 색소를 주입하지 않는다. 문신 업소에서는 문신과 함께 해나 및 피어싱을 시술하기도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신의 목적에 따라 대략 아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외상문신

외상문신(traumatic tattoo)은 의도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이 아닌,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연필심이나 아스팔트 등이 피부에 침투되어 흔적으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 아말감으로 충치 부분을 치료한 후에 정상 치아 부분이나 구강 점막 부분이 검게 물드는 아말감 문신(amalgam tattoo)도 외상 문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서화문신

‘서화문신’은 ‘decorative tattoo’을 번역한 용어이다. 흔히 문신 중 몸통이나 사지에 글씨나 특정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문신 행위를 특정하여 일컫는다. 보통 tattoo라고 하면 서화문신을 지칭한다.

다) 미용문신

‘미용문신’은 ‘permanent make up’을 번역한 용어이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주입하여 용모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 의료문신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진다.

① 질병 부위 보완

질병이나 화상, 수술 등으로 인하여 피부 색깔이 정상 피부색과 달라지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상 피부색과 비슷한 색깔로 시술한다. 눈썹이나 머리카락의 탈모에는 검정색이나 갈색으로 시술하여 탈모 부위를 보완한다. 백내장으로 눈동자가 하얗게 변한 경우 홍채 부위에 문신을 시술하기도 한다.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았을 때에 유두 재건술의 일종으로 문신을 시술하기도 한다(Clarkson 외, 2006). 유륜과 유두 부위를 절제하지 않은 쪽의 유륜·유두색에 맞추어 문신을 시술한다.

② 치료/수술 부위 표시

수술이나 치료 전 처치로 문신이 사용되기도 한다. 병변의 위치 파악이 중요한 대장 종양의 복강경 수술 등에서 인디아 잉크를 사용한 문신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유효성이 알려져 있다(Hwang 외, 2010). 이외에 생검(biopsy) 부위를 자외선 형광 염료로 문신하거나 방사선 치료 시 치료 부위를 문신으로 표시하기도 한다(Chuang과 Gilcrest, 2012).

1.2. 문신의 합법화·제도화 움직임

국내에서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90노2672에서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91도3219에서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가 신체 등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한 판례가 있다.

가) 의원 입법안(김춘진 의원)

김춘진 의원이 17대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문신업 면허 신설) 또는 문신사법 제정안(18대·19대 국회)’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요점은 ‘문신업자가 할 수 있는 문신의 색소와 종류 및 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문신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과,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문신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이다.

나) 고용노동부¹⁾

2013년 6월 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팀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新직업, 新산업 발굴·육성’방안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 직업 중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된 직업유형의 일종으로 문신 기술자(타투이스트)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주도로 규제완화 및 자격제도 반영을 통한 유망직업 합법·양성화 대책 위원회(task force, TF)를 구성하였다.

다) 한국타투인협회 민원

국내 문신 기술자 협회인 ‘한국타투인협회(Korean Tattoo Artists Association, KTAA)’ 최정원 외 85명이 규제개선신문고를 통해 예술행위로서의 타투 합법화 및 활성화 방안 민원을 제출하였다. 민원의 요지는 ① 음성적으로 행해지는데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건전한 문신 문화 확립, ② 세계적인 문신업자 전략적 육성, ③ 新직업군 발굴

1) 고용률 70%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2013. 6. 4.

로 일자리 창출, ④ 新대중예술문화 창출을 통한 한류 문화 확산, ⑤ 문신제품 및 문신장르(가칭 K-Tattoo) 연구·개발을 통한 세계 시장 수출 등을 위하여 문신 산업의 양성화 및 활성화이다.

2. 연구의 필요성

2.1. 청소년 문신 문제(광역수사대 브리핑)

경기지방경찰청은 2013년 7월 25일 보도자료에서 청소년 상대 불법 문신 시술 피의자 등 8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가·학교주변·상가 밀집지역에 문신 업소(일명 타투샵)를 차려 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과 일반인 등 1,000 여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이다.

청소년 문신은 성인 문신에 비해 다른 문제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일시적 충동으로 인해 문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인 78명의 청소년이 문신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다. 문신을 한 이유도 호기심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려는 목적이 65%로 나타났다. 문신을 한 청소년 문신한 청소년은 일진 등에 가담하여 조직폭력배가 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문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돈 모음, 아르바이트, 자기 옷이나 오토바이를 팔기도 하지만 공갈이나 절도 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청소년 상대 문신시술업자들의 대부분은 모텔이나 일반 가정집을 돌며 시술하거나, 지하나 옥상에 차려진 시술소에서 문신 시술을 하여 위생 관리 부족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불법 의료행위(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는 2013년 12월 19일 보도자료에서 문신·점빠기 등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하였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한 결과 이 중 약 23%에 해당하는 23곳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8곳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 적발되었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구조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문헌으로 보고된 문신 유해사례를 종류, 양상, 원인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2) 주요 국가의 문신업 관리 규정을 분석하여 문신업자/문신업소 자격 및 관리규정, 염료의 관리규정과 이외 문신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며, 3)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문신 시술자의 현황을 알아보아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현황

1. 문신 관련 국내 선행연구

1.1. 식약처 문신 염료 성분 분석 연구²⁾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관리실과 문신업소에서 수거한 30개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함유여부를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27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량은 화장품의 중금속 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치 이하였다. 하지만 문신 염료는 진피 내로 직접 주입되므로 안전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식약처는 2008년 8월부터 「경제영역물품의 효율적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용역 연구를 진행 중이며 안전기준 설정 등 관리방안을 계획하였다.

표 2-1 문신용 염료 내 중금속 함량

구분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파라페닐렌디아민
검출제품수	21	5	24	10	-
검출량(mg/kg) (최소~최대)	0.4 ~ 14.2	0.2 ~ 17.3	0.0001 ~ 0.0744	0.1~0.4	-
화장품 기준	20ppm 이하	10ppm 이하	1ppm 이하	-	-

1.2. 한국 소비자원 문신 염료 성분 분석 연구³⁾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문신용 염료 11개 제품(국내산 2, 수입9)을 시험 검사한 결과 프랑스산 1개 제품에서 ‘나프탈렌과 크리센’ 총량이 유럽연합(EU) 허용치를 1,320배(660ppm) 초과 검출되었다. ‘나프탈렌과 크리센’은 발암 가능 물질로 다량 노출되면 신장·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산 2개 제품에서는 바륨이 EU 허용치보다 최고 485배(24,223ppm) 함유되어 있었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장애·심전도 이상·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09년 5월 21일 (목)

3)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13년 7월 10일 (수)

표 2-2 유해물질이 검출된 문신용 염료 현황

(단위:ppm)					
제품명	제조업체	원산지	검출물질	EU기준	검출량
사모 잉크	Jet France	프랑스	나프탈렌	0.5	655
			크리센	(총 PAHs)	5
이터널 잉크 라이트닝 옐로우	Eternal Ink				5,895
인텐즈 레몬 옐로우	Intenze Products, Inc.	미국	바륨	50	24,233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1.3. 고용노동부 국내 문신 시술자 실태 조사연구

2013년 고용노동부가 ‘한국타투협회(Korea Tattoo Association, KTA)’ 협조로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성별, 문신 시술 경력, 문신을 배운 경로, 문신업 이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문신업소 위치, 현재까지 문신 시술을 한 고객의 숫자, 현재 월수입, 처벌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4. 녹색 소비자연대의 소비자 실태 조사⁴⁾

2008년 9월 24일~10월 13일 녹색소비자연대에서 10세~60세 서울시 25개구 소비자 814명 대상으로 유사 의료행위 이용에 관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남자 90명, 여자 724명이었으며, 연령은 40대가 282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사 의료행위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사례는 문신이였다(349명, 42.8%).

문신 시술을 받은 349명 중 73%는 평생 1회 경험, 23%는 2회, 4%는 3회 이상 경험하였다. 문신 시술 부위로는 눈썹이 59.1%로 가장 많았고, 아이라인(31.63%), 립 라인(5.84%), 기타 순이었다.

문신 시술 장소는 개인 가정집(119명, 33.4%)이 가장 많았으며, 미용실(117명, 32.9%), 피부관리실(82명, 23%)로 나타났다. 문신 시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3.3%인 151명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6.7%인 198명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문신 시술자 중 9.7%인 34명이 문신 시술 이후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작용은 피부손상, 통증, 상처, 흉터 등이었으며 치료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0명이였다.

4)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보도자료, 2008년 12월 11일 (목)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 것이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70.5%인 246명이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10대 청소년층에서는 주로 불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단체 상담실로 상담 의뢰한 유사의료행위 이용 소비자 88명에 대한 사례분석을 보면 58%인 51명이 문신관련 상담으로 나타났다. 상담 부위로는 눈썹이 66.7%로 가장 많았고, 아이라인(19.8%), 립라인(7.8%),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눈썹문신이 맘에 안 들어 수정작업을 반복하다가 눈을 뜰 수조차 없이 눈이 시리고 아프게 되었다.
- ◇ 피부관리실에서 아이라인문신 시술 후 각막손상 입어서 시력이 악화 되었다.
- ◇ 미용실에서 입술문신을 받고 시술자가 준 약과 처방대로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복용 하였지만, 부작용으로 고름이 생겼다. 염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네 군데 다녔다.
- ◇ 눈썹문신을 받고 색소로 인해 눈두덩이가 덮힐 정도로 부어오르고, 색소가 빠지지 않는다.

2. 문신의 국내 법적 위치

2.1. 국내 관련법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⁵⁾. 의료법 제 2조 [의료인]에 따라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예관한특별조치법 제 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서 ‘의료법 제 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게 된 근거는 서울고등법원 판례 90노2672와 대법원 판례 91도3129이다.

2.2. 국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판례 90노2672에서 ‘미용문신의 방법은 눈썹이나 입술 등 문신할 부위를 마취한 후 연필로 문신모양을 그리고 작은 붓을 사용하여 문신염색약을 그곳에 바른 다음 1분에 2,000 내지 5,000회 정도 돌아가는 바늘이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작동시켜 문신모양대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하여 문신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하여 형색을 시키는 소위 색소침윤술로써 눈썹 등 눈 주위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문신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례 91도3219에서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가 신체 등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한 판례가 있다.

5) 대법원 판례, 91도3129, 1992.5.22.

III

연구 방법

1. 유해사례 구조적 문헌 고찰

문신의 유해사례 검색을 위하여 구조적 문헌 고찰 방법을 차용하여 수행하였다. 검색 대상 데이터베이스는 국외 3개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7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였다.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3-1 국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구분	데이터베이스	누리집
국외	Ovid Medline	http://ovidsp.ovid.com/
	Ovid EMBASE	http://ovidsp.ovid.com/
	PubMed	http://www.ncbi.nlm.nih.gov/pubmed/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검색(KISS)	http://kiss.kstudy.com/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검색(KMBASE)	http://kmbase.medic.or.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KoreaMed	http://www.koreamed.org/
	과학기술학회마을(KISTI)	http://society.kisti.re.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http://www.riss.kr

검색어는 문신과 유해사례를 의미하는 단어를 포함하였다. ‘문신’에 해당되는 검색어는 body penetrate, body art, tattoo, micro pigmentation, permanent ink design, decorative tattoo, contour make up, face contour, permanent make up, art make, permanent cosmetic 등이며, ‘유해사례’에 해당하는 검색어는 adverse effect, adverse event, side effect, safety complication, health problem, drug toxicity 등이다.

문헌 검색은 사전 및 시범 검색 수행 후 최종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 전략에 따라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게 검색하였다⁶⁾. 검색은 연구자 1인이 수행하였다.

문헌 선택은 2인 이상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의견 불일치 시 합의 과정

6) 데이터베이스별 검색 전략은 부록에 첨부됨

을 거쳤다. 1차 선택 시 제목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문헌을 배제하였으며, 2차 선택 시 초록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문헌을 걸러내었다. 3차 선택 시에 원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헌을 최종 선택하였다. 선택 및 배제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 선택/배제 기준

구분	내용
선택기준 (inclusion criteria)	- 비 치료적인 문신 시술 연구 - 유해사례가 하나 이상 보고된 연구
배제기준 (exclusion criteria)	- 동물 실험(non-human) 및 전임상시험 연구(pre-clinical studies) - 원저(original article)가 아닌 연구 - 복강경 수술 전처치로 인디아 잉크를 사용한 문신 시술 연구 - 아말감 사용으로 인한 착색(amalgam tattoo) - 문신 제거(removal) 관련 연구 - 초록만 발표된 문헌 -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 중복 출판된 문헌 - 원문이 없는 연구 - 적절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

자료 추출은 독립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불일치하는 경우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해사례를 유형화하였다.

2. 국외 문신 관련 규정 조사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관련 규정과 염료 규정, 이외 미성년자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3.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한 후 예비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설문 내용을 수정하였다. 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문신 시술 현황, 인력 교육 및 배출 구조, 위생교육 및 유해사례 경험 등이다.

IV

연구 결과

1. 유해사례 구조적 문헌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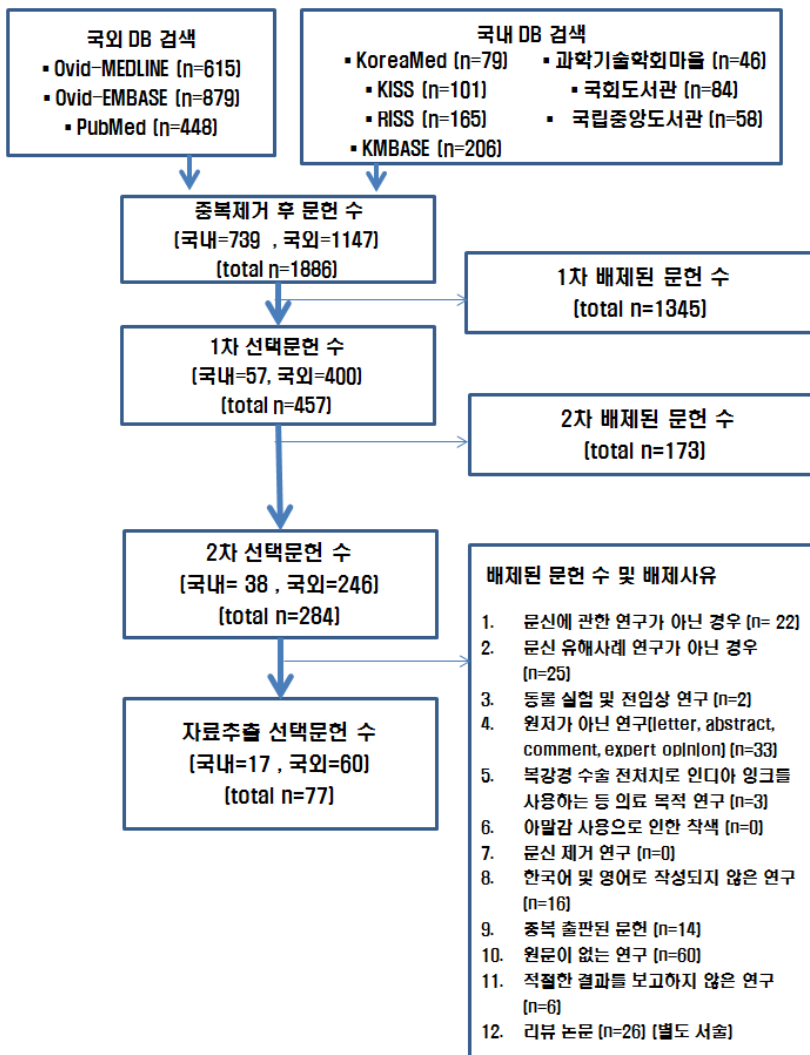


그림 4-1 구조적 문헌 고찰 과정

1.1. 선택 문헌⁷⁾

가) 국내(17건)

국내 문헌은 17건이 선정되었다. 문신 유형으로는 서화문신이 5건, 미용문신이 12건이었다. 연구 유형으로는 사례보고가 11건, 조사연구가 6건이었다.

나) 국외(60건)

국외 문헌은 60건이 선정되었다. 문신 유형으로는 서화문신이 43건, 미용문신이 15건, 의료문신 1건, 기타 1건이었다. 연구 유형으로는 사례보고가 49건, 조사연구가 11건이었다.

1.2. 문신 관련 유해사례

가) 발적/통증

문신은 바늘(needle)로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술 직후 시술 부위에 생기는 약간의 통증과 발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신은 시술 이후 대략 1~2주 정도가 지나면 인설(鱗屑)이 탈락하면서 시술 부위가 아물게 되며, 통증도 소실된다.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 경우는 유해사례라고 볼 수 있다. 소실되지 않는 경우는 문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아이라인 등에 미용 문신 시술을 하였을 때에 안구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가한 경우 등이 있었다.

나) 감염

감염은 급성 감염과 만성 감염으로 나눌 수 있었다. 급성 감염은 문신 시술부위의 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감염,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Mycobacteria chelonae*) 감염, 봉와직염 등이 보고되었다. 문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만성 감염은 B형 간염, C형 간염과 매독, HIV 감염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문헌으로 보고된 사례는 이차성 매독을 보고한 사례 보고 1건이 있었다. 조사 연구에서는 C형 간염과 문신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조사가 있었다.

다) 면역 관련 질환

면역 관련 질환은 육아종, 거짓상피종증식, 피부섬유증, 알레르기 반응, 거짓립프종,

7) 선택 문헌의 목록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사르코이드, 포도막염, 편평태선 등이 있다. 많이 보고되는 유해사례는 거짓림프종, 유육종증, 이물육아종이다. 이 중 이물육아종은 체내로 유입된 외부 물질에 대한 만성 염증성 반응이기 때문에 문신 염료에 대한 반응이라고 추정한다. 거짓림프종과 유육종증은 원인 불명인 질환으로, 화상(火傷)이나 자상(刺傷) 이후에도 발생한다.

- **거짓림프종(pseudolymphoma):** 양성 림프구 증식성 질환으로서 임상 및 조직학적 소견상 피부 악성 림프종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지만 임상적으로 양성 경과를 보인다. 특정한 질환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피부에 국한된 병변이며, 림프구나 다른 염증세포가 축적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임상적으로 두경부, 사지, 가슴, 외음부 등에 단발성의 결절이나 구진, 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병변은 특발성으로 발생하지만 약제나 문신, 감염, 곤충교상, 옴, 침술, 금 장신구 등이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다.
- **유육종증(sarcoidosis):** 사르코이드증은 1875년 Jonathan Hutchinson이 처음 기술한 질환으로서 원인과 병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만성 육아종질환이다. 피부를 포함한 여러 내부장기를 침범하고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며 호전과 재발의 만성경과를 나타낸다. 폐, 눈, 피부, 림프절, 중추신경계, 간, 비장, 신장 등의 다양한 장기에 병변이 발생한다.
- **육아종(granuloma):** 체내로 유입된 외부 물질에 대한 만성 염증성 반응으로 효소나 대식세포의 포식작용으로도 외부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 되며, 임상적으로 피하결절이나 경결성 구진, 판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 신생물(암)

문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신생물에는 흑색종, 편평상피세포암, 각질가시세포종 등이 있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트라우마, 자외선, 염증반응으로 추정한다.

마) 기타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로는 색소 퍼짐현상, 색소 침착, 림프절 내 색소 전이 등이 있었다. 이 외에 MRI 촬영 시 상호작용으로 인한 통증, 신호 없음이 보고되었다.

1.3. 국내 문신

국내에서 문신으로 보고된 문신 관련 유해사례와 추정 원인은 아래와 같다.

표 4-1 국내에서 보고된 문신 관련 유해사례

#	유해사례 내용	추정 원인
1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한 부종과 고름딱지(육아종)	붉은색 염료 내 수은 등
2	통증, 시력 저하, 눈물막 파괴시간 감소(각막상피결손)	훈련되지 않은 인력
3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시술 부위의 국소 감염	비의료인이 행함. 위생관념과 부작용에 대한 대처 부족
4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소양증,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시술 부위의 감염	비전문가가 행함. 염료(먹물)
5	소양증과 동통을 동반한 경화성 판	염료 문제*
6	알레르기성 육아종, 태선양 피부염	색소 중 크롬에 의한 알레르기, 적색 색소 성분의 수은에 대한 반응*
7	안통과 이물감, 유루와 안검부종, 수명과 따가움증, 시력장애	미용실에서 시술받음
8	눈썹 부위를 시작으로 얼굴 전면에 여러 개의 verruca plana 발생	감염
9	Basal cell carcinoma	원인 불명
10	문신 부위에 수개의 침대대 크기의 홍반성의 단단한 구진과 판이 발생(알레르기성 육아종)	문신 색소 내 크롬*
11	문신 부위에 육아종 발생	염료*
12	농피증,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임파선종, 염증후 과저색소침착, 문신부위반흔	염료(먹물), 비전문가가 행함
13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염증후 색소침착 및 소실, 농피증	염료(먹물)
14	양측 눈썹에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 판(알레르기성 육아종)	염료 내 포함된 중금속
15	눈썹 문신 후 국소 소양감, 홍반, 부종, 발적 등(과민성 염증 반응)	원인 불명
16	눈썹 문신 부위에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 경화성 판	원인 불명
17	단순 포진 발생, 접촉성 피부염, 세균감염, 흉터, 의도하지 않은 부위에 문신용 색소 주입	피부관리실 등에서 시술받음

* 문헌에서 유해사례의 원인을 분명하지 않게 추정한 경우

가) 문신 유형에 따른 분류

① 서화문신

국내에서 서화문신에 대한 조사는 4건이 있었다.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85년과 2006년에 1건씩 발표되었고 신검 장정 대상 조사가 1988년과 2010년에 1건씩 발표되었다.

1985년 군입대 신검 장정 중 문신소유자 1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신자 128명 중 11명(8.6%)에서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하였다. 농피증 4례, 비후성 반흔 또는 켈로이드 4례, 임파선종 2례, 염증후 과저색소침착증 2례, 문신부위반흔 1례가 발생하였다. 원인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으나 가장 흔히 먹을 갈아서 문신하였고, 비전문가인 자신 또는 친구가 문신하였으며, 재봉용 바늘로 피부를 찔러 문신물질을 침투시킨 것

으로 보아 문신 시술자가 미숙한 경우,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시술한 경우, 염료의 문제로 보인다. 2006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감 중이며 문신을 소유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명 중 16명(16.3%)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소양증이 11명,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3명, 문신 시술 부위의 피부 감염증이 2명에서 나타났다. 조사 대상 98명 중 9명만이 전문가에게 시술받았다고 하였고 먹물을 이용하였다고 답한 사람이 41명이었다. 혈액 매개 감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혈청학적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문신 제거를 받고자 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비뚤림이 있을 수 있다.

1988년 군입대 신검 장정 중 문신 소유자 4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신자 440명 중 23명(5.2%)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가 13명(3.1%), 염증후 색소침착 및 소실이 6명(1.4%), 농피증이 4명(0.9%)이 발생하였다.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료로 먹을 이용한 경우가 258례(58.6%), 제조된 잉크가 181례(41.2%), 닭피를 이용한 경우 있는 것으로 보아 염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을지병원과 국군양주병원 피부과에 내원한 문신 소유자 223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 223명 중 31명(14.3%)에서 부작용 발생하였고,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10명, 시술 부위의 국소 감염이 9명, 시술부위의 과/저색소 침착이 3명, 기타 소양감, 미립종, 육아종 등이었다. 문신 시술을 주로 비의료인이 행하여 위생관념과 부작용에 대한 대처 부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화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 사례보고는 1건이 있었다(황선옥, 2008). 문신 부위 중 붉은 색 부분에만 육아종이 발생하였다. 원인은 염료로 추정된다.

표 4-2 국내에서 보고된 서화문신 관련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유해사례 유형	진단명	추정 원인
이정연(2011)	면역 관련	소양증,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감염	미숙한 시술자, 위생관념 부족
황선옥(2008)	면역 관련	알레르기성 육아종	염료 문제로 추정
이형래(2012)	면역 관련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감염, 색소침착 등	미숙한 시술자, 위생관념 부족
김진우(1986)	면역 관련	농피증, 비후성 반흔 또는 켈로이드, 임파선종, 색소침착 등	미숙한 시술자, 위생관념 부족, 염료 문제
이유신(1989)	면역 관련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염증 후 색소 침착, 농피증	염료 문제로 추정, 먹을 이용한 경우가 258례(58.6%), 제조된 잉크가 181례(41.2%), 닭피 사용 례 보고

② 미용문신

미용문신에 대한 조사는 2건이 있었다. 1건은 1986년 7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외래로 방문한 환자 중 눈 주위에 미용문신을 시술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홍철, 1989). 문신은 대부분 미용실에서 시술되었고, 4례(3%)만 의료기관에서 시술되었다. 유해사례로는 안통과 이물감 4례, 유루와 안검부종 3례, 수명과 따가움증 1례, 시력장애 1례가 보고되었다.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비의료인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수집한 조사연구가 있었다(조성빈, 2008). 미용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22례가 수집되었다. 문신을 받은 부위에 단순 포진 발생 11례, 접촉성 피부염 9례, 세균감염 1례, 흉터 1례, 의도하지 않은 부위에 문신용 염료 주입 1례가 있었다.

미용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 사례보고는 10건이 있었다. 붉은색 염료로 입술에 문신한 경우와 눈썹 문신 부위에 발생한 욱아종, 눈썹 부위에 발생한 편평사마귀, 아이라인 문신 시 미숙한 시술자로 인해 발생한 각막상피결손, 눈썹 문신 부위에 발생한 암 등이 보고되었다.

표 4-3 국내에서 보고된 미용문신 관련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유해사례 유형	진단명	추정 원인
권순호(2014)	면역 관련	욕아종	붉은색 염료 내 수은
설보람(2013)	통증	각막상피결손	미숙한 시술
조운화(1989)	면역 관련	알레르기성 욱아종, 태선양 피부염	염료 내 크롬, 수은
홍철(1989)	통증	각막염, 각막찰과상	미숙한 시술자
정재윤(2009)	감염	편평사마귀	문신 시술 중 바이러스 감염
이종선(2009)	암	Basal cell carcinoma	원인 불명
이미경(1990)	면역 관련	알레르기성 욱아종	문신 염료 내 크롬
김정원(1988)	면역 관련	욕아종	문신 염료
노영석(2014)	면역 관련	욕아종	문신 염료 내 중금속
김영우(1992)	통증	과민성 염증 반응	원인 불명
심헌수(2010)	면역 관련	욕아종	원인 불명

1.4. 국외 사례 보고 문헌

가) 문신 유형에 따른 분류

① 서화문신

서화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로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 통증이 보고되었다. 감염으로는 포도알균(*S. aureus*), 화농연쇄구균(*S. pyogenes*),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M. chelonae*, *M. fortuitum*), 전염성 연속종, C형 간염 등이 있었다. 면역 관련 질환으로는 육아종, 거짓상피종 증식, 피부섬유증, 사르코이드 반응, 알레르기 반응, 유육종증, 포도막염 등이 보고되었다. 신생물로는 편평세포암, 각질가시세포종이 보고되었다. 통증은 MRI 촬영 시 산화철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통증이 보고되었다.

표 4-4 국외에서 보고된 서화문신 관련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유해사례 유형	진단명	추정 원인
Bedocs(2008)	면역 관련	육아종	염료 내 폴리메틸 메타크릴산 원인 불명
Bhagal(2009)	감염	소양성 홍반, 괴사	비위생적인 환경
Biro(1967)	기타	염증성 습진	염료 내 황화수은
Biswas(2011)	면역 관련	거짓상피종 증식	붉은색 염료
Bittencourt(2013)	면역 관련	피부섬유종	염료/불특정 원인
Fioramonti(2012)	감염	<i>S. aureus</i> , <i>S. pyogenes</i>	-
Foulds(1982)	감염	전염성 연속종	바이러스에 오염된 염료
Garcovich(2012)	면역 관련	알레르기 반응	붉은색 염료(Pigment Red 5)
Goldenberg(2008)	신생물(암)	편평세포암	원인 불명
Khetarpal(2010)	기타	색소 퍼짐현상	미숙한 시술자
Kluger(2008)	신생물(암)	각질가시세포종	원인 불명
Kluger(2010)	면역 관련	피부림프관다형성	외부 물질 주입
Kreidstein(1997)	통증	MRI 검사 시 통증	염료 내 산화철
Lubeck(1952)	감염	C형 간염/매독	바늘 반복사용
Lucke(1999)	발적	홍반성 구진/비립종	-
Matsika(2013)	기타	문신 색소 림프절 내 전이	대식 세포에 의한 이동
McLean(2011)	감염	봉와직염, 패혈성 쇼크, 괴사성 근막염	전통적인 사모아 문신 시행 도중 감염
Pasolini(2011)	면역 관련	거짓림프종	외부 물질 주입
Porter(2005)	감염	봉와직염/괴사성 근막염	전통적인 사모아 문신 시행 도중 감염
Rorsman(1969)	면역 관련	포도막염	파란색 염료 내 코발트
Sanghavi(2013)	기타	태선양 반응	염료
	면역 관련	사르코이드 반응	녹색 염료
Sergeant(2013)	감염	<i>M. chelonae</i>	<i>M. chelonae</i> 에 오염된 염료
Shinohara(2012)	감염	<i>M. chelonae</i>	-

	면역 관련	거짓림프종 반응, 홍반성 낭창 유사반응	-
Tsang(2012)	면역 관련	육아종	문신 염료 내 멜라민
Wolf(2003)	감염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문신 시술 자체(트라우마)
Wollina(2008)	면역 관련	알레르기성 발열반응	-
Bhardwaj(2003)	면역 관련	알레르기 반응	붉은 염료 내 황화수은
Korner(2013)	면역 관련	접촉성 피부염, 루프스양 반응, 사르코이드 반응	염료
	신생물(암)	비정형 모반, 흑색종	트라우마, 자외선, 염증반응
Mahalingam(2002)	면역 관련	반상경피증 유사반응	문신 염료
Marchesi(2014)	면역 관련	거짓림프종	붉은색 염료
Morales-Callaghan (2006)	면역 관련	유육종증	검은색 염료
Sweeney(2013)	면역 관련	육아종 유사 반응	붉은색 염료
Taaffe(1980)	면역 관련	소구진성 편평 태선	피시술사의 직업(금속 추출)
Ostheimer(2014)	면역 관련	포도막염	검은색 염료
Philips(2014)	감염	<i>M. fortuitum</i>	-
Wood(2013)	면역 관련	변성괴저형 육아종 반응	붉은색 염료

② 미용문신

미용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로 감염, 면역 관련 질환, 통증이 보고되었다. 감염으로는 포도알균(*S. aureus*), 비결핵형 마이코박테리아(*M. haemophilum*)이 있었다. 면역 관련으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육아종이 보고되었다. 이외 유해사례로 색소 침착이 있었다.

표 4-5 국외에서 보고된 미용문신 관련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유해사례 유형	진단명	추정 원인
Marshak(2008)	통증	결막염	미숙한 시술자
Giulieri(2011)	감염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임파선염	염료 내 <i>M. haemophilum</i>
Goldberg(1989)	기타	눈꺼풀 과사	원인 불명
		색소 퍼짐	원인 불명
Klontz(2005)	면역 관련	상피 과다형성, 부종, 육아종	특정 브랜드의 염료
Lee(2001)	기타	색소 침착	미숙한 시술자
Rubianes(1993)	감염	<i>S. aureus</i>	-
Teixeira(2006)	면역 관련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 결막염	염료 내 파라-페닐렌디아민
Vagefi(2006)	면역 관련	알레르기성 육아종 반응	염료
Wollina(2011)	면역 관련	비감염성 육아종 반응	염료
Yang(1989)	면역 관련	육아종성 염증 반응	염료 내 칼슘, 티타늄, 실리콘
Moshirfar(2009)	기타	색소 침착	대식 세포 이동
Peters(1999)	기타	색소 침착	대식 세포 이동
Schwarze(2000)	면역 관련	육아종	문신 염료 내 규산 알루미늄

나) 유해사례 종류에 따른 분류

① 발적/통증

통증은 2례가 보고되었다. 미숙한 시술자가 시술하여 물리적 손상이 있었던 경우와, 염료로 인해 비립종이 생겨서 통증이 있었던 경우가 보고되었다.

표 4-6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발적 및 통증

1저자(발행년도)	진단명	문신 부위	문신 색깔	추정 원인
Marshak(2008)	결막염	아이라인	검정-회색	미숙한 시술자
Lucke(1999)	비립종	팔다리	붉은색	붉은색 염료

② 감염

감염은 13례가 보고되었다.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이 다수 보고되었다. 이외 전염성 연속종, 포도알균 감염이 보고되었다. 이차성 매독과 C형 간염은 1952년 발표된 문헌에서 1례 보고되었다.

표 4-7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감염

1저자(발행년도)	진단명	문신 부위	문신 색깔	추정 원인
Bhogal(2009)	소양성 홍반, 괴사	팔다리	검정-회색	원인 불명
Fioramonti(2012)	<i>S. aureus</i>	팔다리	기타	-
Foulds(1982)	전염성 연속종	팔다리	검정-회색	바이러스에 오염된 염료
Giulieri(2011)	<i>M. haemophilium</i>	눈썹	기타	박테리아에 오염된 염료
Lubeck(1952)	이차성 매독, C형 간염	몸통/팔다리	기타	바늘 반복사용
McLean(2011)	괴사근막염, 봉와직염	몸통	-	전통 사모아 문신
Porter(2005)	괴사근막염, 봉와직염	기타	-	전통 사모아 문신
Rubianes(1993)	<i>S. aureus</i>	눈썹	기타	-
Sergeant(2013)	<i>M. chelonae</i>	팔다리	검정-회색	박테리아에 오염된 염료
Shinohara(2012)	<i>M. chelonae</i>	몸통	검정-회색	-
Wolf(2003)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팔다리	기타	-
Wollina(2011)	<i>M. haemophilium</i>	눈썹	기타	-
Phillips(2014)	<i>M. fortuitum</i>	팔다리	검정-회색	-

③ 면역 관련 질환

면역 관련 질환은 27례가 보고되었다. 문헌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면역 관련 유해사례는 육아종이었다. 이외 거짓립프증, 사르코이드증, 알레르기 반응, 포도막염 등이 있었다.

표 4-8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면역 관련 질환

1저자(발행년도)	진단명	문신 부위	문신 색깔	추정 원인
Bedocs(2008)	육아종	팔다리	기타	UV 문신 염료 내 폴리메틸 메타크릴산

Biswas(2011)	거짓상피종증식	팔다리	붉은색	붉은색 염료
Bittencourt(2013)	피부섬유종	팔다리	검정-회색	염료/불특정 원인
Garcovich(2012)	알레르기 반응	팔다리	붉은색	염료 내 중금속
Klontz(2005)	상피 과다형성, 피부 부종, 육아종	아이라인	검정-회색	특정 브랜드 염료에 포함된
		입술	붉은색	미지의 성분
Kluger(2010)	거짓림프종	팔다리	-	외부 물질 주입
Lubeck(1952)	사르코이드/원판상홍반성 낭창	팔다리	붉은색	염료 내 황화수은
Pasolini(2011)	거짓림프종	팔다리	기타	염료
Rorsman(1969)	포도막염	팔다리	기타	염료/염료 내 코발트
Sanghavi(2013)	사르코이드 반응	팔다리	기타	녹색 염료
Shinohara(2012)	거짓림프종 반응, 홍반성 낭창 유사반응	팔다리	붉은색	-
Teixeira(2006)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 결막염	눈썹	기타	염료 내 파라-페닐렌디아민
	육아종성 피부염			
Tsang(2012)	육아종성 피부염			
Vagefi(2006)	알레르기성 육아종 반응	아이라인	검정-회색	염료
Wollina(2011)	비감염성 육아종 반응	눈썹	기타	염료
Wollina(2008)	알레르기성 발열반응	팔다리	붉은색	-
Yang(1989)	육아종성 염증반응	눈썹	기타	염료 내 칼슘, 티타늄, 실리콘
Bhardwaj(2003)	알레르기 반응	팔다리	붉은색	붉은색 염료내 황화수은
Korner(2013)	낭창성 피부염/육아종성/사르코이드성 반응	손발	검정-회색	검은색 염료
	반상경피종 유사반응	손발	기타	염료
Marchesi(2014)	거짓림프종	팔다리	붉은색	붉은색 염료
Morales-Callaghan(2006)	유육종증	기타 얼굴	검정-회색	검은색 염료
Schwarze(2000)	육아종	아이라인	검정-회색	염료 내 규산 알루미늄
Sweeney(2013)	육아종 유사반응	몸통	붉은색	붉은색 염료
Taaffe(1980)	소구진성 편평태선	몸통	붉은색	문신 피술자의 직업 (금속 추출)
Ostheimer(2014)	포도막염	몸통	검정-회색	검은색 염료
Wood(2013)	변성괴저성 육아종	팔다리	붉은색	붉은색 염료

④ 신생물(암)

신생물(암)은 3례가 보고되었다. 편평세포암, 각질가시세포종, 비정형모반, 흑색종이었다. 신생물(암)의 원인은 불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일부 문헌에서 문신 염료 내 색소가 장기간 자외선과 반응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켜 발암시킨다는 서술이 있었다.

표 4-9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신생물(암)

1저자(발행년도)	진단명	문신 부위	문신 색깔	추정 원인
Goldenberg(2003)	편평세포암	팔다리	기타	원인 불명
Kluger(2008)	각질가시세포종	몸통	붉은색	트라우마
Korner(2013)	비정형모반, 흑색종	몸통	붉은색	트라우마, 자외선, 염증반응

⑤ 기타

기타 유해사례로는 문신 색소가 퍼지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외로 MRI 촬영 시 통증과 염증성 습진, 태선양 반응이 있었다.

표 4-10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기타

1저자(발행년도)	진단명	문신 부위	문신 색깔	추정 원인
Biro(1967)	염증성 습진	팔다리	붉은색	열상 부위 내 타투 염료 유입, 염료 내 수은
Goldberg(1989)	안검착색	아이라인	검정-회색	원인 불명
Khetarpal(2010)	색소퍼짐	손발	검정-회색	심부에 염료 주입
Kreidstein(1997)	MRI 시 통증	몸통	검정-회색	MRI 촬영 시 상호작용
Lee(2001)	색소침착	아이라인 눈썹	검정-회색 기타	비전문가 시술
Matsika(2013)	림프절 내 문신 색소 전이	몸통	검정-회색	색소를 포함한 대식세포 이동
Sanghavi(2013)	태선양 반응	팔다리	붉은색	염료
Moshirfar(2009)	각막윤 색소침착	아이라인	검정-회색	색소를 포함한 대식세포 이동
Peters(1999)	눈꺼풀-눈 밑 주름 색소침착	아이라인	검정-회색	색소를 포함한 대식세포 이동

다) 유해사례 원인에 따른 분류

① 도구

보고된 유해사례의 추정 원인은 염료가 가장 많았다. 염료로 인한 유해사례의 추정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염료 내 포함된 물질과 염료의 오염이다. 유해사례를 일으키는 염료 내 포함된 물질로는 염료 내의 황화수은, 코발트 등의 중금속과 자외선에 반응하는 특이한 문신 염료 내에 포함된 폴리메틸 메타크릴산, 투명 문신에 사용하는 멜라민이 있었다. 염료의 오염은 박테리아에 오염이 있었다. 이외 바늘을 반복사용하거나 시술 시 위생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표 4-11 도구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구체적인 원인(추정)	비고
Bedocs(2008)	서화문신	면역 관련	염료 내 폴리메틸 메타크릴산	UV light에 반응하는 특이한 문신 염료
Biro(1967)	서화문신	기타	염료 내 수은	열상 부위로 염료 유입
Biswas(2011)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Bittencourt(2013)	서화문신	면역 관련	염료	불특정 원인
Foulds(1982)	서화문신	감염	염료	바이러스 오염
Garcovich(2012)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염료 내 중금속
Gilieri(2011)	미용문신	감염	염료	박테리아 오염
Klontz(2005)	미용문신	면역 관련	염료	특정 브랜드
Kluger(2010)	서화문신	면역 관련	외부 물질 주입	
Lubeck(1952)	서화문신	면역 관련	바늘 반복 사용	
McLean(2011)	서화문신	감염	-	염료 내 황화수은 전통 사모아 문신
Pasolini(2011)	서화문신	면역 관련	외부 물질 주입	
Poter(2005)	서화문신	감염	부적절한 위생상태	전통 사모아 문신
Rorsman(1969)	서화문신	면역 관련	파란색 염료	염료 내 코발트
Sanghavi(2013)	서화문신	기타/면역 관련	염료	
Sergeant(2013)	서화문신	감염	박테리아에 오염된 염료	<i>M. chelonae</i>
Teixeira(2006)	미용문신	면역 관련		염료 내 파라-페닐렌디아민
Tsang(2012)	서화문신	면역 관련	염료	염료 내 멜라민
Vagefi(2006)	미용문신	면역 관련	염료	
Yang(1989)	미용문신	면역 관련	염료	염료 내 칼슘, 티타늄, 실리콘
Bhardwaj(2003)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염료 내 황화수은
Korner(2013)	서화문신	면역 관련	검은색 염료	
Mahalingam(2002)	서화문신	면역 관련	외부 물질 주입	
Marchesi(2014)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Morales_Callaghan(2006)	서화문신	면역 관련	검은색 염료	
Schwarze(2002)	미용문신	면역 관련	염료	염료 내 규산 알루미늄
Sweeney(2013)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Ostheimer(2014)	서화문신	면역 관련	검은색 염료	
Wood(2013)	서화문신	면역 관련	붉은색 염료	

② 미숙한 시술

민감한 부분인 눈 주위에 시술 시 미숙한 경우 결막을 관통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사례 및 염료가 깊이 주입되어 색소가 퍼지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표 4-12 미숙한 시술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구체적인 원인(추정)	비고
Marshak(2008)	미용문신	통증	시술자의 부주의	결막 관통
Khetarpal(2010)	서화문신	기타(색소퍼짐)	심부에 염료 주입	-
Lee(2001)	미용문신	기타(색소침착)	미숙한 시술	-

③ 문신 피술자

문신 피술자의 직업으로 인해 유해사례가 발생한 사례 1례가 있었다.

표 4-13 문신 피술자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구체적인 원인(추정)	비고
Taaffe(1980)	서화문신	면역 관련	문신 피술자의 직업이 금속 추출 공정, 수은 노출	소구진성 편평태선

④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

MRI 촬영 시 문신 염료 내 산화철과 자기장이 반응을 일으켜 피술자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표 4-14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구체적인 원인(추정)	비고
Kreidstein(1997)	서화문신	통증	염료 내 산화철	MRI와 상호작용

⑤ 원인 불명

신생물(암), 감염, 면역 질환 발생 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표 4-15 원인 불명의 문신 유해사례

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구체적인 원인(추정)	비고
Bhagal(2009)	서화문신	감염	원인 불명	괴사
Goldberg(1989)	미용문신	면역 관련	원인 불명	눈꺼풀 괴사
Goldenberg(2008)	서화문신	신생물(암)	원인 불명	편평세포암
Kluger(2008)	서화문신	신생물(암)	트라우마,	각질가시세포종
Korner(2013)	서화문신	신생물(암)	트라우마, 자외선, 염증반응	비정형 모반, 흑색종

1.5. 국외 조사 연구(11건)

문신과 관련 있는 유해사례에 대한 국외 조사 연구는 11건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화문신 조사연구 8건, 미용문신 조사연구 2건, 의료문신 조사연구 1건이 있었다.

표 4-16 국외 문신 유해사례 조사 연구

1저자(발행년도)	문신 유형	유해사례 유형	비고
Antoszewski(2006)	서화문신	- 부분적인 홍반 21.63% - 출혈 7.7%	- Lodz의 선술집에 있는 문신이나 피어싱을 한 14~52세 416명 대상 - 문신한 사람 중 31.25%에서 유해 사례 발생
Deschesnes(2006)	서화문신	- 출혈 10.1% - 문신 부위 피부 자극감 19% - 문신 부위 감염 5.1% - 염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5.1% - 문신 부위 부종 4.4%	- 퀘벡 내 23개 고등학교 12~18세 청소년 2145명 대상 설문조사 - 2145명 중 8%가 문신, 158명이 유해사례 경험
Falsey(2013)	서화문신	-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문신 부위 발진 - A지역에서 27명 감염, B지역 4명 감염 - 사용된 염료 중 하나에서 <i>M. chelonae</i> 검출됨	2011년 7~12월에 문신시술자의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결절성/궤양성 발진이 1주일 이상 지속된 사람 모집
Hosberg(2013)	서화문신	- 문신 관련 불만의 58%는 햇빛에 대한 광과민성 -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들뜸, 가 려움증	- 성병 클리닉에 래원한 환자 154명 조사 - 3개월 이내 유해사례 발생 15%, 3개월 이후 유해사례 발생 27% - 대부분 검정색,붉은색 색소 관련
Hosberg(2013)	서화문신	- 미개봉된 58개의 염료 중 6개가 박테리아 오염 - 개봉되어 사용한 6개의 염료 중 1개가 박테리아 오염	- 문신 관련 유해사례가 발견된 문신 시술자가 사용한 염료 6개와 개봉 전 염료 58개 조사
Klugl(2010)	서화문신	- 문신 시술 직후 피부 유해사례 2,302명(67.5%), 전신 유해사례 225명(6.6%)이 경험 - 시술 후 4주 이후 264명(7.7%) 유해사례 경험함 - 대부분 경미하나 중등도 이상 425명(12.5%)	- 독일어 사용 국가 3,411명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 염료의 일부가 인체에 흡수되어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

Kvitko(2013)	서화문신	- C형 간염	- 3,391명 대상 단면연구 - 문신 소유자 16.16% - Risk factor만을 조사
Richards(2006)	서화문신	- C형 간염	- 결핵병원 내 결핵 환자 272명 대상 혈액 검사 - 61명(22%)이 HCV 양성 - Odds Ratio 2.6 (1.2-5.7)
Spear(1995)	의료문신	- 표재성 감염 - 발진 - 인설	- 유두 재건 문신 한 151명 대상 설문조사 - 151명 중 5명(3%)에서 표재성 감염, 1명 발진, 1명 인설 보고 - 10%는 색이 열어져 다시 시술 받음
Tope(2002)	미용문신	- 따가움 - 타는 듯한 느낌	- 아이라인 미용문신 한 1032명 대상 설문조사 - 135명(13.1%)이 MRI 검사를 하였고, 이 중 2명 유해사례 경험
Wenzel(2010)	미용문신	- 입술 주위 수포 - 입술 부종 - 타는 듯한 느낌 - 붉은 염료 혹은 그 안에 포함된 Pigment Red 181(CI 73360)에 대하여 심각한 피부 유해사례 발생	- 입술 미용문신 후 유해사례가 발생한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패치 테스트(알레르기 테스트) 실시

1.6. 국외 고찰(review) 문헌

국외 고찰 문헌은 총 26건이 선정되었다. 각 문헌마다 유해사례의 분류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상이하나 큰 줄기는 비슷하였다. 문신의 유해사례는 감염성/비감염성/신생물/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감염성 유해사례는 감염원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세균감염,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염 등이 있었고 증상의 발현까지를 기준으로 급성감염, 만성감염, 감염 부위를 기준으로 국소 감염, 전신 감염이 있었다. 세균 감염으로는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결핵, 한센병,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화농성 연쇄상구균, 매독, 결핵 등이 있었고, 바이러스성 감염으로는 전염성 연속종, B형 간염, C형 간염, HIV, 헤르페스, 우두, 수두 등이 있었다. 진균 감염으로는 접합균증, 칸디다성 질염, 적색백선균, 유모표피사상균 등이 있었다.

비감염성 유해사례로는 육아종, 유육종증, 사르코이드, 농가진, 편평태선, 두드러기, 편평태선, 루푸스양 반응, 켈로이드, 건선, 급성 국소 림프절 팽창 등이 포함되었으며, 신생물에는 흑색종, 피부암,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각질가시세포종, 용기피부섬유육종, 광 과민성, 포도막염 등이 있었다.

기타 유해사례로는 MRI 시 신호가 감지되지 않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 요추 부위 경막외 마취 시 따가움과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다. 국외 고찰 문헌의 정리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2. 국외 문신 관련 규정 조사

2.1. 국가 선택 기준

국외 문신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북미/유럽/아시아 등 각 대륙별로 나라를 선택하였다. 미국에서 문신 관련 규정은 주법(州法)에 따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공통 규정을 살펴되, 비교적 자유로운 주인 뉴욕 주/뉴욕 시와 엄격한 주인 코네티컷 주를 선택하였다. 유럽 국가 중에는 문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어, 2008년 문신 관련 규정이 신설된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살펴보았다.

가) 문신 관련 규정

문신 관련 규정은 크게 문신 시술자·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내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분류별 상세 내용은 상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큰 갈래는 유사하다.

표 4-17 문신 관련 규정 분류

항목	내용
문신시술자·문신업소 규정	- 문신시술자 자격 발급, 혈액 매개 질병·위생 및 소독 방법 교육, 문신 시술자 자격 발급 전 일정 시간 이상의 경력 등 - 분리된 업소, 세면대·멸균기 등 위생 시설 등
위생 규정	일회용품 사용, 멸균기 사용,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B형 간염 예방접종 등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문신 규제, 미성년자 문신 시술 시 부모의 동의서 필요
염료 규정	니켈 등 특정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염료만을 사용

나) 국가별 규정 특징

표 4-18은 각 국가별 문신 관련 규정의 요약표이다.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O, 존재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하였으며, 규정이 준비 중인 경우이거나 모호한 경우 △로 표시하였다.

표 4-18 국가별 문신 관련 규정 특징

국가	문신 시술자· 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금지 규정	염료 규정	특이사항
대한민국	X	X	X	△	문신은 의료행위 염료 안전관리 검토
미국	-	-	-	X	FDA 승인 문신 염료 없음
뉴욕 주	O	X	X	-	문신시술자·문신업소 허가 규정
뉴욕 시	O	O	O	-	보편적인 미국 규정
코네티컷 주	O	O	O	-	의사의 관리감독 필요
유럽 연합	-	-	-	O	2008년 문신용 염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 발표
프랑스	O	O	O	O	2008년 규정 신설됨
일본	X	X	X	X	문신은 의료행위
대만	X	X	X	X	문신을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 미성년자는 불법 자체 위생교육 실시
필리핀	O	O	X	△	무해한 염료 사용이라고만 명시, 임신부 등 문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법적으로 제한

2.2. 국가별 문신 규정 상세

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문신 관련법은 없으나 판례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게 된 근거는 서울고등법원 판례 90노2672와 대법원 판례 91도3129이다⁸⁾.

나) 미국

문신 시술자 자격 허가와 문신 업소 허가는 주법에 따른다. 미국에서는 2011년 까지 41개의 주가 주(州) 차원의 문신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50개 중 나머지 9개 주는 주(州)의 문신 규정은 없고, 몇몇 지역(county)에 지역 단위 문신 규정이 있다. 규제 내용은 문신시술자의 자격 요건, 업소의 등록, 허가제 실시, 일회용품 사용 및 소독, 장갑 등의 착용,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시술 금지 및 부모의 동의요건 등이다.

문신 시술자는 과거에는 의사로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문신 시술자 자격을 주고 관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의사의 감독을 요하기도 한다. 코네티컷 주의 경우는 단독으로 문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에 한정하고 문신 시술자

8) 본 보고서 10쪽에 판례의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자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의 감독 하에 문신 기술을 해야 한다. 이외 주에서는 자격을 갖춘 문신 기술자가 허가 받은 문신업소 내에서 문신 기술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이노홍, 2011).

표 4-19는 주별 규제 내용을 문신 환경 위생 기준/문신 기술자 및 문신 업소 허가/감염 예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Carson 외, 2012). 30개 이상의 주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문신 기술자에게 자격 발급을 하고 있다. 환경 위생 기준으로 설정한 내용은 문신용 바늘(needle) 등 뾰족한 도구의 폐기 방법, 지역 위생 당국의 정기적인 점검, 업소 내 음주·흡연·약물 제한, 유해물질 폐기 방법, 물청소가 가능하고 흡수가 되지 않는 재질로 된 벽·바닥, 벽 등으로 대기실과 독립된 작업 공간, 일정 이상의 채광과 적절한 환기 조건 등이 있다. 문신 기술 중 장갑 착용과 일회용품 및 멸균기(autoclave)를 사용한 문신 도구 소독, 살균 성분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및 서면으로 된 문신 후 관리 방법(aftercare) 제공 또한 규정하고 있다.

표 4-19 미국 각 주의 문신 관련 규정 내 포함 사항

문신 환경 위생 기준	#	문신 기술자 및 업소 허가	#	감염 예방	#
뾰족한 도구 폐기 방법	36	혈액 매개 질병	30	장갑 착용	35
지역 위생당국 정기 점검	36	심폐소생술	8	일회용품/멸균기 사용	37
업소 음주·흡연·약물 제한	32	응급처치	19	문신기술자 B형 간염 접종	14
유해물질 폐기 방법	37	해부학/생리학	17	문신 피술자의 병력 확인서 (위험요인 확인용)	23
벽·바닥 등 공간	36	위생/소독	25	유해사례 보고 방법	14
세면대 등 위생환경	36	문신 규제 법규	16	건강한 피부에만 문신	31
작업 공간 분리	34	300시간 이상의 경력	14	비상 상황 대처 방법 (구급상자 구비 등)	12
규제 위반 처벌/과태료	36	정기적인 교육 갱신	16	전염병 이환 시 문신 기술 제한	27
환기/채광 등의 조건	31	문신업자 자격 발급	32	문신 후 관리 방법	32
해충 방제	27	문신업소 허가	34	멸균기 정기 점검	34

미국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미성년자 문신 규제이다.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문신 기술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문신 피술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책임은 문신 기술자에게 있다.

표 4-20은 미국의 주별 미성년자의 문신 규제이다. 총 17개 주에서는 부모의 동의서 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에게는 문신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28개 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문신 기술 시에 부모가 대동할 시,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부모 대동 시 미성년자에게도 문신 기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NCSL 2013).

표 4-20 미국 주별 미성년자 문신 규제

항목	해당 주(州)
미성년자 문신 전면 금지	알래스카(AK), 캘리포니아(CA), 조지아(GA)* 아이오와(IA) ¹⁾ , 아이다호(ID) ²⁾ , 일리노이(IL)*, 메인(ME), 미시시피(MS), 뉴햄프셔(NH), 뉴욕(NY), 노스캐롤라이나(NC), 오클라호마(OK), 로드아일랜드(RI), 사우스캐롤라이나(SC) ³⁾ , 테네시(TN) ⁴⁾ , 워싱턴(WA), 위스콘신(WI)* 총 17개 주
동의서 필요	알라바마(AL), 알칸소(AR), 콜로라도(CO), 코네티컷(CT), 델라웨어(DE), 플로리다(FL), 하와이(HI), 인디애나(IN), 캔자스(KS), 켄터키(KY), 루이지애나(LA), 마이애미(MI), 미시간(MI), 미네소타(MN), 미주리(MO), 몬타나(MT), 네브라스카(NE), 뉴저지(NJ), 노스 다코타(ND), 오하이오(OH), 펜실베이니아(PA), 사우스다코타(SD), 텍사스(TX) [†] , 유타(UT), 버몬트(VT), 버지니아(VA), 웨스트버지니아(WV), 와이오밍(WY) 총 27개 주
문신 시술 시 부모 대동 필요	아리조나(AZ), 알칸소(AR), 인디애나(IN), 캔자스(KS), 루이지애나(LA), 네브라스카(NE), 노스 다코타(ND), 오하이오(OH), 펜실베이니아(PA), 버지니아(VA), 와이오밍(WY) 총 12개 주
미성년자에 관한 문신 규정 존재하지 않음	메릴랜드(MD), 매사추세츠(MA), 네바다(NV), 뉴멕시코(NM), 오레곤(OR)

* 의학적 필요에 의한 문신은 본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 지금 가지고 있는 문신을 커버하기 위한 목적만 허용함

1) 문신 규제는 미혼인 미성년자(unmarried minor)만 해당함

2) 14세 이하는 전면 규제, 14~18세는 부모의 동의서 필요함

3) 18세 이하는 전면 규제, 18~21세는 부모의 동의서 필요함

4) 16세 이하는 전면 규제, 16~18세는 부모의 동의서/문신 시술 시 부모 대동 필요함

※ 나머지 주는 문신이 금지되는 미성년자를 18세 이하로 간주함

미국의 50개 주 중 45개 주에서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 미성년자 문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5개 주는 네바다,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멕시코, 오레곤이다. 네바다 주에는 주 단위 문신 규정이 없고, 일부 지역(local county) 단위의 규정이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현재 주 규정은 없지만 지역 보건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안(model form)을 제시하였고, 기본 안 내에 18세 미만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이 있다. 메릴랜드에는 문신 규정이 존재하며 주의 노동부에서 자격을 발급한다. 뉴멕시코에도 문신 규정 존재한다. 뉴멕시코의 문신 관련 규정은 문신 시술사 자격 발급 및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오레곤 주에도 문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내용은 주 자체 자격 발급이다. 오레곤 주에서 문신 시술자는 이발, 미용, 네일아트 등과 동일한 미용 전문가(cosmetic professional)로 분류된다. 문신 시술자가 되려면 오레곤 주에서 허가한 직

업학교(career school)를 졸업해야 하며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생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색소 첨가물(color additive)로 분류되나 어떠한 문신 염료도 인체 주입 용도로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허가를 받지 않았다. 미 FDA에서는 문신용 염료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안전 관리를 위해 문신 염료로 인한 유해 사례 보고를 받고 있고, 박테리아 오염 등으로 문신용 염료 회사가 자체 회수를 결정할 때에 이를 게시하고 있다.

미국 내 주별 문신 관련 규정은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대표적으로 뉴욕 주, 뉴욕 시의 문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문신 시술 시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한 코네티컷 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③ 뉴욕 주

뉴욕 주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보건부에서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누구도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거나 문신업소를 개업할 수 없고, 허가를 발급하는 보건부 담당자가 발급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뉴욕 시

뉴욕 시(市)의 문신 관련 규정에서는 문신 시술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문신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 18세 이상일 경우 문신 시술자 자격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나라나 주에서 문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7일 간의 임시 자격증을 발급한다. 문신 시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부가 정한 사항에 따라 감염 관리, 위험 방지(risk factor management),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 이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증명을 제출한다. 문신 시술자 자격증은 2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2년 이내에는 재시험 없이 갱신이 가능하며, 만료 후 2년이 지나면 자격증은 말소된다. 자격증을 발급받은 문신 시술자는 신문 잡지 등에 광고할 수 있다.

문신업소는 올바른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통풍이 원활하고, 밝은 불빛과 폐기물 처리 용기, 차갑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세면 시설, 위생 비누와 수건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문신 시술자는 작업 전 손을 씻어야 하고 작업 시에는 라텍스 장갑

9) 뉴욕 주의 규정 전문 번역이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을 착용하여야 한다. 문신 시술이 완료된 후, 문신 시술자는 피술자에게 사후 관리 방법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피술자의 이름과 문신 시술을 받은 날짜 등 보건부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하였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문신 시술자 자격 정지 및 취소에 처한다.

문신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해 시(市) 보건부에 자문을 해 주기 위하여 문신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람, 살균 및 위생 전문가, 피부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¹⁰⁾.

⑤ 코네티컷 주

코네티컷 주에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숙련된 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 nurse), 의료 보조원(physician assistance), 간호사(registered nurse), 기술자(technician)이다. 여기에서 기술자는 일반적인 서화문신을 하는 문신 시술자를 의미한다. 의사는 단독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고, 그 외 숙련된 간호사, 의료 보조원, 간호사, 문신 시술자는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관리 감독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문신업소를 방문하여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문신 시술자의 지식과 숙련도에 관하여 매년 기록을 남겨야 한다. 관리 감독 역할을 하는 의사는 문신 시술자에게 의료 상담이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¹¹⁾.

다) 유럽 연합

2003년까지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에만 문신 관련법이 존재하였다. 문신이 대중화되고 이에 따라 문신으로 인한 유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유럽 연합 위원회는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문신 관련법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2003년까지의 현황은 표 4-21과 같다.

10) 뉴욕 시의 규정 전문 번역이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11) 코네티컷 주의 규정 중 의사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표 4-21 2003년 기준 유럽 연합 국가별 문신 관련 규정 현황

국가	문신 규정 존재 여부	특징	비고
오스트리아	O		
벨기에	O		
덴마크	△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 - 머리, 손, 목에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	
프랑스	X		2008년 제정
그리스	△	초안 단계	
아일랜드	X		
이탈리아	O		
룩셈부르크	X		
포르투갈	X		
스페인	X		
스웨덴	X		
네덜란드	△	초안 단계	
영국	O	-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 - 이외 상세 규정은 일부 지역의 지역법에 존재	
노르웨이	O		
스위스	X		

2008년 유럽의 보건 분야 장관 회의에서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 (ResAP(2008)1)」에서 문신용 염료의 권고사항을 천명하였다. 이 권고사항은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없는 방향족 아민의 목록, 독성 물질의 목록, 중금속의 최대 허용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¹²⁾. 유럽 연합의 ResAP(2008)1은 권고사항으로, 문신용 염료에 대한 허가 사항이 아니다. 2008년 ResAP(2008)1 발표 이후에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도 문신 관련 규정이 발표되었다. 프랑스는 문신업자의 자격과 교육 조건, 위생 조건, 문신용품의 제조 포장 및 유통에 대한 조건 등을 망라하는 명령을 발표하였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규정을 신설하여 ResAP(2008)1의 권고안대로 문신용 염료에 포함할 수 없는 물질의 목록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12) ResAP(2008)1의 목록은 부록에 실려 있음

라) 프랑스¹³⁾

프랑스 문신 관리 법령은 2008년 2월 19일에 신설되었다. 프랑스의 건강, 젊음, 체육, 참여적 삶 부(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이하 프랑스 보건부)에서는 공중 위생법에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장을 삽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월 20일까지 문신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문신 관련 규정에는 위생 조건, 문신용품의 제조 포장 및 유통, 문신 시술 시 문신 피술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정보, 문신과 피어싱 시술자의 교육 요건, 문신업소의 신고 방법, 문신업소의 조건 및 문신 시술 시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기구 살균 매뉴얼 포함) 등을 명령(Décrets)으로 규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문신 용품도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갖추어 모니터링 하고 있다.

문신 시술자가 문신 시술 전 피술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영구적인 신체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문신의 돌이킬 수 없는 특징
-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특징
- 감염 위험
- 알레르기 위험, 특히 문신의 염료나 피어싱의 장신구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진행 중인 시술의 금기 징후에 대한 연구
- 시술된 기술에 따른 유착 시간, 유착에 따르는 위험성
- 시술이 이루어진 후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 특히 빠른 유착을 위한 것

프랑스 보건부에서 규정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이론 교육

1영역	문신과 피어싱에 관련한 규칙과 문신의 염료와 피어싱의 장신구에 대한 규칙 상기
2영역	해부학, 피부 생리학 특히 유착에 대한 일반 지식
3영역	“공중 위생법” R. 1311-4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위생 규칙 - 세균 미생물 - 위생 규칙과 관련된 보편적인 주의 사항 - 소독제와 살균제 : 효력 범위와 사용 방법
4영역	감염과 알레르기 위험성에 대한 일반 지식. 특히, - 감염을 일으키는 요인, 특히 문신과 피어싱 행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대표적인 요인 - 감염의 메커니즘 - 위험 인자 - 전염이 일어나는 방식 - 실제 시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 금기 징후¹⁴⁾
5영역	소독과 살균 - 열에 민감한 재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의 살균 - 기구들의 소독, 사용한 의료 기구의 조정과 유지를 포함함. - 절차와 사용 기구들의 명시성

13) 부록에 프랑스의 문신 관련 법령 번역 전문이 수록됨

6영역	시술자 보호를 위한 규칙들, 특히 혈액에 의한 감염사고로부터의 보호 규칙,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과 권고되는 백신
7영역	폐기물의 처리

○ 실습 교육

8영역	다양한 작업 공간에 대한 이해(청소와 살균)
9영역	문신이나 피어싱 행위를 위한 무균 과정의 시술 방법 - 손 위생에 대한 과정 지식 - 장갑 사용에 대한 지식. 특히, 소독 - 일하는 장소를 준비하는 지식 - 장비들을 준비하는 지식. 특히, 소독과 그 준비 - 소독된 장소를 준비하고 이용하는 지식 - 소독의 과정을 아는 지식, 소독 과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식

마) 일본

일본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의료 행위 판단 근거는 판례시보 1370호 159항(도쿄 지방법원 1990년 3월 9일)이다.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명, 기미 등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국소 마취제 실로카인 주사액을 신체 부위에 도포하고 해당 신체 부위에 주사기나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일본 의료법 제 17조에서 의사가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의정의발 제 105호(2001년 11월 8일)에서 레이저 광선 혹은 기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을 모근(毛根) 부위에 조사하여 모유두(毛乳頭), 피지선 개구부(開口部) 등을 파괴하여 제모 하는 행위, 바늘 끝에 색소를 묻혀 피부 표면에 먹 등의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 산(酸) 등 화학약품을 피부에 도포하여 주름, 기미 등에 대하여 표피 박리를 행하는 행위를 모두 의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라고 규정하였다¹⁵⁾.

바) 대만¹⁶⁾

대만에는 문신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신은 민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 취급된다(Article 490¹⁷⁾). 만약 계약 당사자가

14) 시술하지 말아야 할 상황

15) 판례시보 1370호 159항과 후생노동성의 의정의발 제 105호의 번역이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

16) 대만 식약처와 대만 문신인 협회에 유선으로 질문하여 답변 받은 내용임

17) ¹⁾Article 490 노무자가 사용자에게 특정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특정 작업의 완수 후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작업 시에 사용되는 자재의 비용은 지급하는 보수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만 20세 미만일 경우(Article 12ⁱⁱⁱ and 13^{iv})¹⁸⁾에는 법에 의하여 계약 자격이 없다고 간주되어 계약 시에는 법적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하다(Article 77^v and 79^{vi})¹⁹⁾. 문신업자는 미성년자가 문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불법 계약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만은 국가 차원에서 문신 시술자 자격을 허가하지는 않는다. 2014년 4월에 설립된 대만 문신인 협회(Taiwan Tattooist Association)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대만에는 대략 100~200개의 문신 업소가 존재하며, 300~400명의 문신 시술자가 있다. 정해진 자격 수료 요건이나 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문신 시술자의 자질은 차이가 많다. 대만 문신인 협회에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문신 시술자 양성을 위하여 문신 관련 법률, 국가 차원의 자격 허가 등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신 시술자들은 의사가 아니다. 일부 피부과·성형외과 의사가 피어싱이나 문신 시술을 하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매우 적다. 다만, 문신 제거는 의사가 전담한다.

문신 시술에는 감염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만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나 지역 보건소에서는 혈액 매개 감염 질환 발생 방지를 위하여 문신 시술자에게 관련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지역 보건소와 문신인협회가 협조하여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결정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문신 시술자는 수료증을 받기는 하지만, 이러한 교육 과정은 자체적이며, 위생 교육 수료가 법으로 규정된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은 공중 위생법에 따라 첫 해에는 여섯 시간, 다음 해부터는 매년 세 시간의 위생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대만에서 문신 업소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과 같은 범주로 간주된다.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도구나 염료에 관한 사항은 애매한 부분이다. 먼저, 문신용 염료는 대만에서 화장품으로 취급된다. 화장품 회사는 제품 판매에 선행하여 제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판매 허가를 받은 문신용 염료는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만 식약처(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산업계를 초청하여 문신용 염료 관리 규정 마련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 회의에서 도출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8) ⁱⁱⁱArticle 12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임

^{iv}Article 13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어떠한 법적 결정도 내릴 수 없음.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는 제한된 법적 결정권을 가진. 기혼 미성년자는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음

19) ^vArticle 77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의 의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 결정 당사자가 결정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득을 가지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일 경우는 예외임

^{vi}Article 79 보호자 동의 이전에 법적 결정권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계약은 보호자의 승인 이후에 유효함

다음으로, 문신용 기기에 관한 부분이다.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Law)에 따라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 치료, 완화 혹은 예방에 사용되는 기기를 지칭한다. 혹은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료기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문신용 기기의 의료 기기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문신은 의료용 목적이 아니므로 문신용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의견과, 문신 피부 표면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므로 의료기기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문신용 기기가 의료기기 관리 규정(Regulations Governing Management of Medical Devices)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대만에는 문신업이나 문신 시술자 자격, 문신용 염료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 필리핀

필리핀의 문신 관련 법률은 2010년 문신 피술자 보호법(Tattoo Patrons Protection Act of 2010)이다. 필리핀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보건부의 허가 없이 문신 시술을 하거나 문신업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문신 시술자는 문신 피술자에게 MRI 부작용을 포함한 문신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문신 시술자는 문신 피술자의 이름, 나이, 주소, 문신 도안, 문신 시술날짜, 문신 위치, 문신 시술자의 이름 등을 포함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문신업소에는 문신 시술 절차가 서면으로 잘 보이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문신 시술자는 작업 시에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며 설사, 구토, 발열, 황달, B형 간염, 에이즈 등이 있을 때에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 문신 시술자는 문신 시술 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일회용 타월에 손을 닦고 일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문신 부위의 제모가 필요한 경우 일회용 면도날만을 사용해야 한다. 문신 시술 전 문신 부위를 항 박테리아 제제로 소독하여야 한다. 문신업자는 인체에 무해한 염료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 명의 고객마다 일회용 문신 염료 컵에 염료를 덜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문신 전용 염료 취급 업자가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신에 사용하는 바늘(needle)은 멸균된 것이어야 하며 하나의 멸균된 바늘은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어야 한다. 멸균되었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멸균 작업을 거쳐야 한다.

문신 시술 이후에는 관리 방법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약물을 한 사람이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으며, 심신 미약자나 피부 상태가 문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임신부나 수유부에게 문신하는 것은 불법이다.

3.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3.1. 설문지 개발

가) 설문지 개발 및 배포 과정

국내 문신 시술자(타투이스트²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0일 간) 한국 타투인협회(Korea Tattoo Artist Association, KTAA)와 한국 타투협회(Korea Tattoo Association, KTA) 회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고용노동부의 ‘타투이스트 신직업 창출과 타투법제화를 위한 한국 타투아티스트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연구진 회의를 거쳐 초안을 수정한 후, 인터넷 설문 형태로 구현하였다. 본 설문조사 시행 전 한국 타투인협회에서 추천한 회원 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후 집단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예비조사 시에는 중복 참여를 방지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협회 회원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실명 혹은 별명(문신시술자 활동 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문신 시술자 예비조사 결과, 문신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에 문신 시술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남기기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 문신 시술자 활동 지역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설문조사 배포는 각 협회의 대표자에게 인터넷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전달하였고, 각 협회의 대표자가 회원 개인에게 전송한 후, 회원 개인이 URL에 접속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는 한 IP(internet protocol) 당 1회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설문지 구성 요소

문신 시술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문신을 배우게 되고 현재 문신 시술의 업태는 어떠한지, 도구 등의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0) 본 보고서에서는 문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문신 시술자로 지칭하였으나 서화 문신을 주로 하는 문신 시술자는 타투이스트로도 불림. 설문 조사 시 문신 시술자를 타투이스트로 지칭하였음

표 4-22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지 구성

항목	내용	문항 수
동기 및 교육 내용	- 배우게 된 동기 - 문신을 배운 경로 - 교육 시 포함되는 내용 - 교육 시간	5
문신 업태	- 전업 문신 시술자 여부 - 문신 업소 운영 여부 - 한 달 간 문신 시술 횟수 - 문신 시술 부위 - 개인적인 문신 금기사항 - 마취 연고 또는 마취제 사용 여부 - 문신 시술로 인한 처벌 여부 - 피술자 방문 경로	13
문신 관리 현황	- 문신용 도구 구입 경로 - 위생적인 문신 시술 시 필요한 사항 - 1회용 폐기물 처리 방법 - 문신 피술자가 호소하는 불만사항 - 문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조건 - 문신 시술시술 자격 마련에 대한 의견	8
일반 정보	- 성별 - 연령 - 최종학력 - 활동 지역	4

3.2.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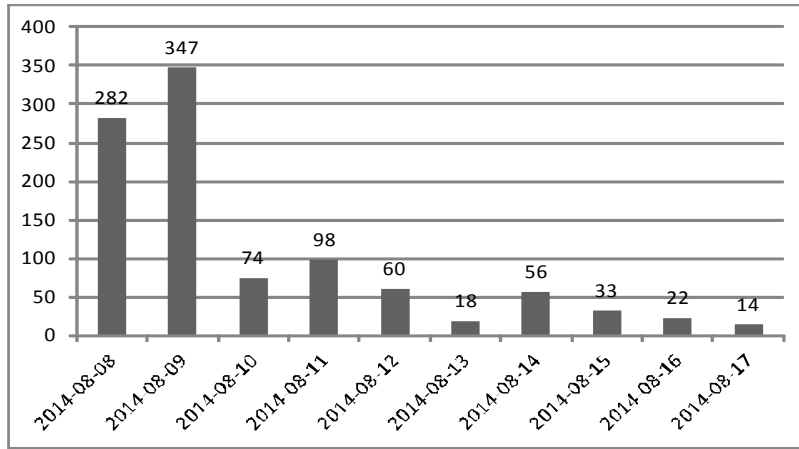


그림 4-2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일별 참여 인원 수

2014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0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일별 설문조사 참여자 수는 그림 4-2와 같다. 설문조사는 총 4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에 참여한 1004명 중, 중간에 설문조사를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 질문까지 답한 538명의 답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1명을 제외한 537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537)

설문에 응답한 537명 중 남성이 426명으로 79.33%였고 여성은 111명으로 20.67%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31세였다. 최연소자는 만 18세였고, 최연장자는 만 57세였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77명(32.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학교 중퇴가 126명(23.46%)이었다. 기타라고 답변한 14명은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문신 시술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 159명(29.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105명, 19.55%), 부산(54명, 10.06%) 순이었다. 외국에 있거나 현재 배우는 중이라고 답한 사람이 18명(3.35%)이었고, 현재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지 않는 다고 답한 경우가 17명(3.17%)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문신 업소를 운영하거나 문신 시술자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문신 시술자로서 활동하는 지역은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표 4-23 설문조사 대상 문신 시술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26	79.33
여	111	20.67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1	2.05
고등학교 중퇴	32	5.96
고등학교 졸업	177	32.96
대학(교) 중퇴	126	23.46
2년제 대학교 졸업	83	15.46
4년제 대학교 졸업	81	15.08
석사 이상	13	2.42
기타(재학 중, 휴학 등)	14	2.61
문신 시술자 활동 지역(복수 선택 가능)		
서울	159	29.61
인천	34	6.33
대전	22	4.10
부산	54	10.06
대구	27	5.03
울산	17	3.17
광주	19	3.54
경기도	105	19.55
강원도	11	2.05
충청북도	21	3.91
충청남도	18	3.35
경상북도	23	4.28
경상남도	42	7.82
전라북도	4	0.74
전라남도	6	1.12
제주도	4	0.74
기타(외국, 배우는 중 등)	18	3.35
문신 시술자 활동 안 함	17	3.17

나) 문신 시술자가 된 동기 및 교육 내용(N=537)

문신을 배우게 된 동기는 예술·창작에 대한 욕구가 362명, 67.41%로 최다였다. 다음으로는 문신 시술자가 유망 직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라고 답한 사람이 106명, 19.74%였다. 기타 답변으로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예술이 좋아서, 수입이 높다고 들었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문신을 배우게 된 경로는 기존의 국내 문신 시술자에게 도제식 수업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381명, 70.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인터넷 등을 통한 독학(81명, 15.08%), 타투 아카데미 등 학원 수강(35명, 6.52%) 등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독학하였다’, ‘기존의 문신 업소에 미술 전공자로 취직하였다’, ‘지인

으로부터 배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국외 문신 시술자에게 도제식 수업을 받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8명, 3.35%였다. 외국에서 배운 경우 해당 국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일본, 미국, 브라질 등이었다. 문신을 배울 때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은 문신 기기 사용법, 문신 도안(타투 디자인) 등 미술 관련 교육, 기존 문신 시술자의 시술 과정 관찰, 피부·고무판 등에 문신 실습·문신에 대한 이론 등이 고르게 분포하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위생교육과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루에 대략 몇 시간 씩, 며칠간 교육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문신을 해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별로 편차가 컸다. 어떤 사람은 3시간씩 이틀 간 교육을 받은 후라고 답변하였고, 어떤 사람은 67시간씩 630일 간 교육을 받은 후라고 답변하였다. 중앙값은 5시간씩, 95일이고, 최빈값은 3시간씩, 90일 이었다.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오해와 편견이 있다’, ‘불법적인 부분을 악용하여 고의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문신 시술 요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다.

다) 문신 업태

현재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76명(88.64%),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1명(11.36%)이었다.

① 문신업을 하는 경우(N=476)

표 4-24 문신 업태

항목	빈도(명)	비율(%)
문신 시술자 활동 여부		
예	476	88.64
아니오	61	11.36
문신 시술자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128	26.83
아니오	349	73.17
현재 문신 업소 운영 여부		
예	375	78.62
아니오	102	21.38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문신 시술자 활동 방법		
다른 문신 시술자의 문신 업소에 고용	22	21.36
출장 문신	13	12.62
다른 문신 시술자의 문신 업소에 프리랜서 형태	44	42.72
기타(집, 견습중, 문신 업소가 아닌 작업실 등)	24	23.30
주로 받는 신체 부위(복수 선택 가능)		
얼굴	8	1.68
목	36	7.56
몸통	349	73.32
팔다리	461	96.85
손발	123	25.84
안구	0	0
기타(등, 손가락, 옆구리, 골반, 허벅지, 상처부위, 두피 등)	22	4.62
개인적인 금기사항 여부		
예	460	96.64
아니오	16	3.36
마취 연고 또는 마취제 사용 여부		
예	33	6.93
아니오	443	93.07
처벌 여부		
예	120	25.21
아니오	356	74.79
문신 피술자 방문 경로		
기존 고객의 소개로	372	73.15
문신 업소를 지나다가	3	0.63
블로그나 SNS를 보고	75	15.76
광고를 보고	13	2.73
기타(지인, 지인 및 SNS, 작업사진 등)	13	2.73

문신업을 하는 경우 전업 문신 시술자인 경우가 349명(73.17%) 이었고,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문신업을 하는 경우가 128명(26.83%)이었다.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문신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375명(76.62%)이었고,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102명(21.38%)으로,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자신의 문신 업소를 운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면서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문신 시술자의 문신 업소에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44명, 42.72%). 기타 의견으로는 지인들만 집에서 시술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 한 달 간 문신 시술은 평균 17명에게, 20건을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평균 11명, 여성은 평균 7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평균 20~30대 15명, 40~50대 4명, 60대 이상 1명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에게 문신을 시술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주로 문신 시술을 하는 부위로는 팔다리가 96.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몸통이 73.32%를 차지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어깨, 등, 손목, 두피 등이 있었으며, 커버 목적으로 제왕절개 등 상처 부위에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개인적인 문신 금기사항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60명(96.64%)이었고 그 금기사항으로는 ‘땀이 심하게 나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경우 작업하지 않는다’, ‘당뇨병 환자·에이즈환자 등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 ‘켈로이드 피부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작업하지 않는다’, ‘임신부나 심신 미약자에게는 작업하지 않는다’, ‘성기에는 작업하지 않는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작업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문신 시술 시 마취 연고나 마취제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43명(93.07%)이 아니 오라고 답하였고 33명(6.93%)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마취 연고나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고객이 고통을 참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는 경우 고객이 챙겨오는 경우’,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의 예민한 부위에 작업할 경우’, ‘부위가 클 경우’라고 답변하였다.

문신 시술자 활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20명(25.21%)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356명(74.79%)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처벌 내용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문신 기기 압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있었다.

문신 피술자가 문신 시술자를 방문하는 경로는 기존 고객의 소개로 방문한다는 답변이 372명(78.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블로그나 SNS를 보고 방문한다는 답변이 75명(15.76%)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인 소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광고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블로그 등 SNS를 운영한다는 답변이 258명(54.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광고하지 않는다는 의견(206명, 43.28%), 인터넷 광고(59명, 12.39%)등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인 광고, 문신 박람회(타투 컨벤션) 참가, 커뮤니티

니터 활동 등이 있었다.

② 문신업을 하지 않는 경우(N=61)

문신 시술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1명이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26명(42.62%)이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답하였고, 14명(22.95%)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활동 중 사고를 당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아 공부 중’, ‘처벌이 두려워서’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4-25 문신업을 하지 않는 이유

항목	빈도(명)	비율(%)
문신업을 하지 않는 이유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	26	42.62
현재 처벌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	3.28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14	22.95
기타(불법, 실력 부족, 재정 부족,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처벌이 두려움 등)	19	31.15

라) 문신 관리 현황(N=537)

문신 관련 도구를 구입하는 경로로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라고 답변한 사람이 238명(44.32%)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문신용품점에서 구입한다는 답변이 184명(34.27%)으로 다음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배우는 선생님에게서 구입한다’, ‘본사에서 주문한다’, ‘손수 제작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위생적인 문신 시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회용품 사용이라고 답한 사람이 264명(49.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위생적인 작업 환경이라고 답한 사람이 112명(20.86%)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위 항목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1회용 거즈나 바늘 등의 폐기물 처리 방법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257명(47.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176명(32.77%)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바늘은 고철로 처리한다’, ‘찔리지 않도록 깡통이나 페트병에 모아서 처리한다’, ‘고물상에 넘긴다’,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모아두고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문신을 받은 사람이 흔하게 불평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색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202명(37.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이 52명(9.68%)이었다. 문신 자체에 대해 후회한다는 답변도 46명(8.57%)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불평이 없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디자인 선택에 후회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신 시술 이후 어떠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에게 방문할 것을 권고하느냐는 질문에는 ‘시술 후 염증이 있을 경우’, ‘작업 부위가 붉는 경우’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도 많았다. 본인이 시술한 경우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문신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염증, 피부가 붉는 것, 예이즈, 켈로이드 피부, 심장마비, 파상풍 등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른다는 의견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전한 문신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답변에는 문신 관련 안전관리 규정 마련과 문신 시술자 자격 관리제도 마련이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보기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문신 시술자의 활동 혹은 문신 시술자 자격 마련 등에 대한 자유 서술 의견으로는 문신 시술자 합법화, 자격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문신 용품의 미용기기 분류, 위생교육 실시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4-26 문신 관리 현황

항목	빈도(명)	비율(%)
문신 관련 도구 구입 경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	238	44.32
국외 인터넷 사이트	80	14.90
오프라인 문신용품점	184	34.27
기타(지인, 선생님, 국내외 모두 등)	35	6.52
위생적인 문신 시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1회용품 사용	264	49.16
멸균기를 사용한 도구 소독	51	9.50
문신 시술 부위 소독	3	0.56
위생적인 시술 환경	112	20.86
문신 시술자가 시술 전 손을 씻는 것	2	0.37
기타(모두 해당, 손 씻기 등)	105	19.55
1회용 폐기물 처리 방법		
일반쓰레기로 처리	257	47.86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	176	32.77
소각	48	8.94
기타(고철 폐기, 바늘은 강동, 처리방법 몰라서 모아둠, 펌프병, 고물상 등)	56	10.43
문신을 받은 이후 불평사항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	52	9.68
부작용 발생	7	1.30
문신 색이 얼어짐	202	37.62
문신 시술 자체에 대한 후회	46	8.57
기타(없음, 사이즈, 즉흥적으로 해서 후회, 오랜 시간, 가려움, 통증, 디자인 선택,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알고 후회, 업소 선택 후회, 관리 소홀로 인한 불평, 가격 불만 등)	230	42.83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문신 시술자를 위한 위생관리 등의 교육 실시	80	14.90
문신 시술자 자격 관리제도 마련	177	32.96
문신 업소 등록 및 관리제도 마련	76	14.15
문신 시술 관련 안전관리 규정 마련	146	27.19
기타(모두 해당 등)	58	10.80



고찰 및 결론

1. 고찰

최근 문신업 합법화 움직임에 따라 합법화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문신 기술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더 위험하며, 법적으로 문신이 양성화되면 오히려 적절한 가이드에 따른 기술이 가능해져 안전한 기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 및 문신 기술 자체에 대한 후회,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문신 기술 등을 들어 문신업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내 문신 기술자 숫자는 대략 만 명에서 이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²¹⁾. 문신 기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의 종류 및 발생률, 국내 문신 기술자 및 피술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비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문신의 특성상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서화 문신 실태조사 연구를 기획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유형화하고 국외의 문신업 관리 실태를 검토하며, 국내 서화문신 기술자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1.1. 구조적 문헌 고찰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검색어는 예비검색에서 '문신' 및 '유해사례'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를 수집하여 선정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특정 분야로 한정(limit)하지 않고 검색할 경우 저자명에 '문신'이 포함된 문헌이나 역사 분야 문헌이 다수 검색되었다. 따라서 제목 한정 및 의학학 분야로 한정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비뚤림 위험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 무작위배정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21) 한국 타투인협회 의견

trial)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은 문헌 선정 이후 비뮴립 위험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의 특성상 선정된 문헌의 대부분이 사례 보고 연구이고, 비교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문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C형 간염의 위험 승산비(odds ratio) 보고와 같은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비뮴립 위험 평가의 의미가 크지 않다. 다만 학위 논문이나 학회 발표 초록의 경우에는 동료 평가(peer review)되지 않은 문헌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학술지에 발표된 문헌만을 선정하였다.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는 발적 및 통증, 급성 및 만성 감염, 육아종 등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 기타로 유형화하였다. 각 유해사례에 따른 추정 원인도 염료를 포함한 도구, 미숙한 시술자, 문신 피술자, 상호작용, 기타 원인으로 유형화하였다. 문신 시술 이후 박테리아 감염이 있었고 시술 시 사용된 염료에서 같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검출된 경우에는 명확히 문신이 원인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하지만 C형 간염 등의 만성 감염이나 신생물의 경우 유해사례의 발생 원인이 문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감염부터 질병 발생까지의 기간이 길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결과에 제시한 원인은 선정된 문헌 내에서 추정한 원인이다.

유해사례가 발생한 문신 부위는 팔다리가 가장 많았다.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시술하는 부위가 팔다리이기 때문에 유해사례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용문신의 유해사례에서는 아이라인 문신을 한 경우에 유해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미용문신 시술 시 안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민감한 부위인 안구 주변을 시술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유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유해사례와 우리나라의 유해사례는 구분하였다. 선정된 문헌을 검토하였을 때에 국내 문헌은 미용 문신 관련이 많았고, 국외 문헌은 서화 문신 관련이 많은 등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문신의 유해사례 발생은 염료의 색과 관련이 있는데,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술되는 문신의 크기나 색깔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유해사례 발생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이 있다. 초기에 발생하는 유해사례는 감염이나 발적·통증 등이 흔하고 후기 이후에는 면역 관련 질환이나 신생물 등이 많다. 중증도는 질환 내에서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하였다.

1.2. 국외 규정 검토

국외 문신 관련 규정 검토 시 국가 선정은 대륙별 분포와 문신에 대하여 보수적/개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문신 관련 규정은 해당 국가의 성격에 따라 국가법/주법(州法)/지역 조례 등으로 나뉜다. 프랑스는 국가 단위의 명령이고, 미국의 경우 문신 시술자 및 문신 업소 자격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규정은 주법(州法)이다. 문신의 상세규정, 기록이나 신고 등 상세 사항은 지역(city 혹은 county) 조례로 정한다. 뉴욕 주의 경우 문신 시술자 자격 발급 허가에 대한 사항은 주법이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문신 업소 시설 요건 등은 뉴욕 시(市) 조례(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이다. 영국은 미성년자 금지 규정이 국가법이고, 이외 자격 발급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법으로 정한다. 런던 지역 조례인 London Local Authorities Act 1991에서 문신 시술자의 자격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문신 관련 규정은 성격에 따라 문신 시술자 및 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최근 유럽 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염료이다. 2008년 유럽 연합 위원회의 negative list 발표 이후 2012년 스웨덴²²⁾, 스위스²³⁾ 등에서 염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8년 문신 관련 규정을 발표한 프랑스 규정에서 문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내에서 유통되는 문신 염료에 대한 전성분 표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일부 염료 회사의 경우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표시한다. 미국 인텐즈(intenze) 사의 염료는 성분과 독성 물질 포함 여부, 취급 방법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미국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미국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에서 발암물질이라고 밝힌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표기하였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서 인텐즈 사의 레몬 옐로우 염료에서 바롬 함량이 EU기준보다 485배 초과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와 대비되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문신 관련 규정이 있는 국가가 거의 없었

22) Läkemedelsverkets föreskrifter (LVFS 2012:25) om tatueringsfärger;

23) Verordnung des EDI über Gegenstände für den Schleimhaut-, Haut-und Haarkontakt sowie über Kerzen, Streichhölzer, Feuerzeuge und Scherzartikel (Verordnung über Gegenstände für den Humankontakt)

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중국은 2013년 까지 문신 관련법을 제정한다고는 하였으나 실제 규정을 찾지는 못하였다. 대만에서는 문신업자 자격을 발급하지는 않으나,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생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문신 염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²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발표된 법이나 고시 등은 검색되지 않았다.

1.3. 설문 조사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004명이 참여하였고 538명이 답변을 완료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한 1명을 제외한 537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조사의 특성 상 설문조사 참여 중 인터넷 창을 닫게 되면 탈락이 되어 결측이 발생하게 된다. 1번 문항의 답변자는 897명이고 2번 문항의 답변자는 858명, 3번 문항의 답변자는 615명 등 지속적으로 탈락이 발생하여 설문조사를 완결한 답변자만을 분석하였다. 답변한 사람 모두를 포함한 자료와 완결한 사람만을 포함한 자료는 답변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문신 시술자가 문신을 배우게 된 동기는 예술성 위주의 관심이 대부분이며(67.41%), 상당수가 기존의 국내 문신 시술자로부터 도제식 수업(70.95%)을 받아 양산된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문신을 하기까지의 교육 기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람에게 처음 문신을 해 보기까지 적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독학으로 하루 2시간, 1일 연습한 이후라고 답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 하루 8시간씩 730일, 하루 12시간씩 900일, 하루 24시간씩 800일이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720시간 등 24시간을 초과하는 답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사람에게 처음 문신을 해 보기까지 하루 평균 교육 시간과 교육 일수의 중앙값은 5시간, 95일이었고 최빈값은 3시간, 90일이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문신 시술자 자격 관리제도 마련(32.97%)과 문신 시술 안전관리 규정 마련(27.29%)외에 위생관리 교육(14.84%)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대만의 경우 문신이나 문신 시술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공중위생관리의 일부로 간주하여 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위생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²⁵⁾.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감염, 켈로이드, 피부염, 에이즈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유해사례가 없다고 답변하거나 유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상당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08092의약안 207. 경계영역 물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

25)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 103年委託縣市衛生局 辦理傳染病防治計畫作業手冊

수를 차지하였다. 구조적 문헌 고찰 결과와 문신 시술자가 알고 있는 유해사례가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내 문신 시술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1회용 폐기물 문제이다. 문신 시술 시 사용되는 바늘(needle)은 원칙적으로 1회용이다. 문신 시술의 특성상 문신 피술자의 체액이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혈액 매개 질병 감염이 있을 수 있어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7.71%의 문신 시술자가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변하였다. 국제보건기구(WHO)의 의료용 폐기물 가이드라인에서 문신업소는 피어싱 업소와 함께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의료용 폐기물 배출업소(minor source of health-care waste (activities involving intravenous or subcutaneous intervention))로 분류되어 1회용 문신 도구를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Chartier 외, 2014).

다음으로는 문신 업소 문제이다. 설문에 참여한 문신 시술자의 77.82%는 문신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22.18%는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문신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 중 11.86%는 출장 문신을 한다고 답변하였고, 기타로 답변한 22.88%의 상당수가 지인들만 개인 집에서 시술하는 등 위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술하고 있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문신 업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취제 사용도 또 다른 문제이다. 서화 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문신 시술자(타투이스트) 개별 인터뷰 시에는 서화 문신에서는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문신 시술 시 마취 연고를 바른 후에 시술하게 되면 선이 고르지 않고 잉크가 심하게 번지기도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476명 중 33명(6.93%)이 문신 시술 시 마취 연고나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손님이 마취연고를 구해서 왔을 때’, ‘통증이 심한 부위를 시술할 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 ‘손님이 원할 시에’, ‘항상’, ‘반영구 문신 아이라인 눈썹 입술 시에만’, ‘아픈 것을 무서워할 때에’, ‘리도카인 사용’ 등의 답변이 있었다.

2. 연구의 한계

2.1. 구조적 문헌 고찰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차용하였다. 체계화된 전략으로 문헌을 검색한 후, 계획된 선정/제외기준으로 문헌을 선정하고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차 문헌을 바탕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기보다 구조적 문헌 고찰(structured review)에 가까운 형태이다.

구조적 문헌 고찰에서 유형화의 대상이 된 문헌은 사례 보고(case report)가 대부분이다. 사례 보고는 특이한 임상 사례나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보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는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의 종류와 빈도가 반드시 실제 유해사례와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의 발생률을 도출할 수 없다.

2.2. 국외 규정 검토

대륙별/국가별로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하여 문신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국가별로 문신 규정이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 각 국가의 규정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한 예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문신 시술자의 자격이나 업소, 사용 염료에 대한 규정은 국가 단위에서 정한다. 미국은 문신 시술자의 자격이나 업소에 대한 규정은 주법으로 정하나 일부 주에서는 주 단위에서 권고안을 설정하고 지역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미성년자 문신 금지법만 국가에서 규정하고 이외 문신 시술자의 자격이나 업소에 대한 규정은 지역법으로 정한다.

2.3. 설문 조사

문신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익명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기반 설문 조사의 특성 상 1개의 IP(internet protocol) 당 1회만 설문에 답할 수 있지만 중복 참여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가 모두 문신 시술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본 설문 조사는 서화문신을 하는 문신 시술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어느 경우에 마취 연고나 마취제를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예민한 부위에 시술할 때’라는 답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화문신 시술자 중에서 미용문신을 시술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미용문신 시술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 연구에서는 구조적 문헌 고찰로 문헌으로 보고된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살펴보았고 국외 문신 관련 규정과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의 유형은 실제 발생하는 유해사례의 유형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신 관련 유해사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화문신 피술자 대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보다는, 서화문신 피술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화문신은 대부분 불법 문신 시술자에 의하여 시술되므로, 규모 파악이 어렵다. 실태조사 연구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이나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시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문신용 염료이다. 문신용 염료에는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혹은 제조나 유통 시에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고, 이것이 유해사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품 염료가 아닌 불량 염료를 사용하여 문신을 할 경우 유해사례 발생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화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외 문신업 관리 상세를 검토하여 유해사례 최소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시술자에게는 위생교육 등 유해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술자에게는 시술 전 문신의 객관적인 위험성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VI

참고문헌

1. 본문 참고문헌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보도자료, 2008년 12월 11일 (목)
- 대법원 판례, 91도3129, 1992.5.22.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09년 5월 21일 (목)
- 이노홍. 미국의 문신규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 미국헌법연구 2011;22(1):183-223.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13년 7월 10일 (수)
- Carlson VP, Lehman EJ, Armstrong M. Tattooing Regulations in U.S. States,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Oct 2012;75(3):30-37.
- Chartier Y, Emmanuel J, Pieper U, Prüss A, Rusbrook P, Stringer R, Townend W, Wilbum S, Zghondi R. Safe management of wastes from health-care activities 2nd edi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 Chuang GS, Gilchrist BA. Ultraviolet-fluorescent tattoo location of cutaneous biopsy site. Dermatologic Surgery 2012;38(3):479-483.
- Clarkson J, Tracey A, Eltigani E, Park A. The patient's experience of a nurse-led nipple tattoo service: a successful program in Warwickshire. Journal of Plastic, Reconstructive & Aesthetic Surgery 2006;59:1058-1062.
- FDA Consumer Health Information,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ctober 2009
- Hwang MR, Sohn DK, Park JW, KIM BC, Hong CW, Han KS, Chang HJ, Oh JH. Small-dose India ink tattooing for preoperative localization of colorectal tumor. J Laparoendosc Adv Surg Tech A 2010;20(9):731-734.
- CDC Workplace Safety & Health Topics, Body Art Nevada, Available from: URL: http://www.cdc.gov/niosh/topics/body_art/stateRegs/NV.html
- Denmark notifies EU Commission of tattoo inks ban, ChemicalWatch. Available from: URL: <http://chemicalwatch.com/15641/denmark-notifies-eu-commission-of-tattoo-inks-ban>
- London Local Authorities Act 1991 (c. xii) Available from: URL: <http://www.legislation.gov.uk/ukla/1991/13/part/II/enacted>
- Massachusetts Health and Human Services, Body Art (Body Piercing, Tattooing and

Branding / Scarification) Available from: URL:

<http://www.mass.gov/eohhs/gov/departments/dph/programs/environmental-health/comm-sanitation/body-art-body-piercing-tattooing-and.html>

Material Safety Data Sheet-INTENZE Tattoo Ink. Available from: URL:

http://www.intenzetattooink.com/media/pdfdir/045_Aquamarine.pdf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 Tattoos and Body Piercings for Minors. Updated May 2013. Available from: URL:

<http://www.ncsl.org/research/health/tattooing-and-body-piercing.aspx>

New Mexico Occupational and Professional Licensing Body Artists and Operators Licensure Requirements, Available from: URL:

<http://164.64.110.239/nmregister/xix/xix08/16.36.2.htm>

Oregon Board of Body Art Practitioners, How to Get Licensed: Tattooing, Available from: URL: http://www.oregon.gov/OHLA/BAP/pages/tattoo_arts_licensure.aspx

Oregon Law Statutes Chapter 90- Cosmetic Professionals, Available from: URL:

https://www.oregonlegislature.gov/bills_laws/lawsstatutes/2013ors690.html

Southern Nevada Health District, Southern Nevada Health District Regulations Governing the Sanitation and Safety of Tattoo Establishments. Available from: URL: <http://www.southernnevadahealthdistrict.org/body-art/tattoo-regulations.php>

2. 구조적 문헌고찰 국내 선택문헌

권순호, 최재우, 변상영, 김보리, 나정임. 탄산가스레이저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붉은 색 입술 문신 후 발생한 육아종성 이물반응 1례. 대한피부과학회지 2014;52(2):142-143.

김영우, 김대영. 박피술을 이용한 눈썹문신의 부작용 치험예.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992;19(6):1028-1031.

김진우, 조백기, 허원. 문신의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86;24(2):213-218.

노영석, 전경민, 김선종, 이원태. ICP 분석법에 의한 문신 색소의 정량 분석. 한양의대학술지 1991;11(2):811-817.

설보람, 권지원, 위원량, 한영근. 미용적 눈꺼풀테 문신술 후 발생한 마이봄샘 분비 장애 1예. 대한안과학회지 2013;54(8):1309-1313.

심현수, 설정은, 전지승, 최준희, 서종근, 이드보라, 성호석. Allopurinol로 치료한 이물육아종. 대한피부과학회지 2010;48(12):1108-1110.

이정연, 정혜정, 김민수, 최연진, 이두락, 안지영, 박미연. 수형자의 문신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2011;49(5):398-407.

이미경, 강형철, 함정희, 국홍일. 영구화장문신에 의한 알레르기성 육아종 1예. Ewha Med J 1990;13(3):261-264.

이상학, 석대식, 이유신. 한국 청년의 문신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1989;27(5):530-536.

이형래, 김미선, 한태영, 손숙자, 이현경, 이홍선. 젊은 한국 남성의 문신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

- 한피부과학회지 2012;50(3):212-219.
- 조성빈, 이상주, 심재홍, 김동현.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 분석. 대한피부과학회지 2008;46(11):1507-1512.
- 조윤화, 최병익, 홍창권, 송계용, 노병인, 장진요. 영구화장 문신에 의한 피부반응 2예. 대한피부과학회지 1989;27*5):547-551.
- 홍철. 안미용문신의 임상적고찰. 대한안과학회지 1989;30(2):128-135.
- 황선옥, 김상현, 오두진, 이드보라, 김정옥, 박성옥. 붉은색 영구 문신에 의한 육아종 반응 1예. 대한피부과학회지 2008;45(3):408-410.
- Jung JY, Shin HS, Won CH, Cho S. Facial Verruca Plana That Developed after Semipermanent Tattooing. Ann Dermatol 2009;21(1):92-94.
- Lee JS, Park J, Kim SM, Yun SK, Kim HU. Basal Cell Carcinoma Arising in a Tattooed Eyebrow. Ann Dermatol 2009;21(3):281-284.
- Lee KB, Yi JY, Kim HO, Kim CW. A Case of Granulomatous Reaction to Tattoo Pigment. 대한피부과학회지 1988;26(4):554-559.

3. 구조적 문헌고찰 국외 선택문헌

- Antoszewski B, Sitek A, Jedrzejczak M, Kasielska A, Kruk-Jeromin J. Are body piercing and tattooing safe fashions? European Journal of Dermatology. 2006;16(5):572-5.
- Bedocs PM, Cliffl M, Mahon MJ, Pui J. Invisible tattoo granuloma. Cutis. 2008;81(3):262-4.
- Beerman H, Lane RA. Tattoo; a survey of some of the literature concerning the medical complications of tattooing. The American journal of the medical sciences. 1954;227(4):444-64.
- Bhardwaj SS, Brodell RT, Taylor JS. Red tattoo reactions. Contact Dermatitis. 2003;48(4):236-7.
- Bhogal RH, Thomas SS. Necrotizing black tattoo reaction: What's in a nam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Dermatology. 2009;10(2):131-3.
- Biro L, Klein WP. Unusual complications of mercurial (cinnabar) tattoo. Generalized eczematous eruption following laceration of a tattoo. Archives of dermatology. 1967;96(2):165-7.
- Biswas A. Pseudoepitheliomatous tattoo reaction. Diagnostic Histopathology. 2011;17(6):272-5.
- Bittencourt MJS, De Miranda MFR, De Parijos AM, Mesquita LB, Da Fonseca DM, Jambo DAA. Dermatofibroma in a black tattoo: Report of a case. Anais Brasileiros de Dermatologia. 2013;88(4):614-6.
- Braverman PK. Body Art: Piercing, Tattooing, and Scarification. Adolescent Medicine Clinics. 2006;17(3):505-19.
- Brown KM, Perlmutter P, McDermott RJ. Youth and tattoos: what school health

- personnel should know.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2000;70(9):355-60.
- De Cuyper C. Permanent makeup: indications and complications. *Clinics in Dermatology*. 2008;26(1):30-4.
- De M, Marshak H, Uzcategui N, Chang E. Full-thickness eyelid penetration during cosmetic blepharopigmentation causing eye injury.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08;7(1):35-8.
- Deschesnes M, Demers S, Fines P.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body piercing and tattoo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6;97(4):325-9.
- Durkin SE. Tattoos, body piercing, and healthcare concerns. *Journal of Radiology Nursing*. 2012;31(1):20-5.
- Falsey RR, Kinzer MH, Hurst S, Kalus A, Pottinger PS, Duchin JS, et al. Cutaneous inoculation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 during professional tattooing: A case series and epidemiologic study.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2013;57(6):e143-e7.
- Fioramonti P, Fino P, Ruggieri M, Scuderi N, Onesti MG. A successful collagenase and hyaluronic acid topical use combined with antibiotic therapy in the treatment of ulcerative lesions arising on tattoo. *Case Reports in Medicine*. 2012;2012(253492).
- Foulds IS. Molluscum contagiosum: An unusual complication of tattooing. *British Medical Journal*. 1982;285(6342):607.
- Garcovich S, Carbone T, Avitabile S, Nasorri F, Fucci N, Cavani A. Lichenoid red tattoo reaction: Histological and immunological perspectives. *European Journal of Dermatology*. 2012;22(1):93-6.
- Giulieri S, Morisod B, Edney T, Odman M, Genne D, Malinverni R, et al. Outbreak of *Mycobacterium haemophilum* infections after permanent makeup of the eyebrows.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2011;52(4):488-91.
- Goldberg RA, Shorr N. Complications of blepharopigmentation. *Ophthalmic Surgery*. 1989;20(6):420-3.
- Goldenberg G, Patel S, Patel MJ, Williford P, Sanguenza O. Eruptive squamous cell carcinomas, keratoacanthoma type, arising in a multicolor tattoo. *Journal of Cutaneous Pathology*. 2008;35(1):62-4.
- Goldstein N. IV. Complications from tattoos. *Journal of Dermatologic Surgery and Oncology*. 1979;5(11):869-78.
- Hogsberg T, Hutton Carlsen K, Serup J. High prevalence of minor symptoms in tattoos among a young population tattooed with carbon black and organic pigments. *Journal of the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2013;27(7):846-52.
- Hogsberg T, Saunte DM, Frimodt-Moller N, Serup J. Microbial status and product labelling of 58 original tattoo inks. *Journal of the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2013;27(1):73-80.

- Juhas E, English JC. Tattoo-Associated Complications. *Journal of Pediatric and Adolescent Gynecology*. 2013;26(2):125-9.
- Kaatz M, Elsner P, Bauer A. Body-modifying concepts and dermatologic problems: tattooing and piercing. *Clinics in Dermatology*. 2008;26(1):35-44.
- Kazandjieva J, Tsankov N. Tattoos: dermatological complications. *Clinics in Dermatology*. 2007;25(4):375-82.
- Khetarpal S, Molenda M, Seiger E, Pui J, Obagi S. Blue foot: A second case of "tattoo blow-out" pigment spread successfully treated with the QS-Nd:YAG laser. *Journal of Drugs in Dermatology*. 2010;9(11):1429-31.
- Khosla V, Joseph V, Gordon H. Tattoos: What is their significance?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2010;16(4):281-7.
- Klontz KC, Lambert LA, Jewell RE, Katz LM. Adverse effects of cosmetic tattooing: An illustrative case of granulomatous dermatiti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permanent makeup [12]. *Archives of Dermatology*. 2005;141(7):918-9.
- Kluger N. Cutaneous complications related to permanent decorative tattooing. *Expert Review of Clinical Immunology*. 2010;6(3):363-71.
- Kluger N. Body art and pregnancy. *European Journal of Obstetrics Gynecology and Reproductive Biology*. 2010;153(1):3-7.
- Kluger N. Acute complications of tattooing presenting in the ED. *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2012;30(9):2055-63.
- Kluger N, Minier-Thoumin C, Plantier F. Keratoacanthoma occurring within the red dye of a tattoo. *Journal of Cutaneous Pathology*. 2008;35(5):504-7.
- Kluger N, Vermeulen C, Moguelet P, Cotten H, Koeb MH, Balme B, et al. Cutaneous lymphoid hyperplasia (pseudolymphoma) in tattoos: A case series of seven patients. *Journal of the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2010;24(2):208-13.
- Klugl I, Hiller KA, Landthaler M, Baumler W. Incidence of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tattooed skin: A nation-wide survey in German-speaking countries. *Dermatology*. 2010;221(1):43-50.
- Korner R, Pfohler C, Vogt T, Muller CS. Histopathology of body art revisited - analysis and discussion of 19 cases. *Journal der Deutschen Dermatologischen Gesellschaft*. 2013;11(11):1073-80.
- Kreidstein ML, Giguere D, Freiberg A. MRI interaction with tattoo pigments: Case report, pathophysiology, and management.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997;99(6):1717-20.
- Kuczkowski KM. Labor analgesia for the parturient with lumbar tattoos: What does an obstetrician need to know? *Archives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2006;274(5):310-2.
- Kvitko DT, Bastos GAN, Pinto MEB. Prevalence of risk factors for hepatitis c and associated factors: A population-based study in southern Brazil. *Arquivos de Gastroenterologia*. 2013;50(2):117-22.

- Lee IW, Ahn SK, Choi EH, Whang KK, Lee SH. Complications of eyelash and eyebrow tattooing: reports of 2 cases of pigment fanning. *Cutis: cutaneous medicine for the practitioner*. 2001;68(1):53-5.
- Long GE, Rickman LS. Infectious complications of tattoos.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1994;18(4):610-9.
- Lubeck G, Epstein E. Complications of tattooing. *California medicine*. 1952;76(2):83-5.
- Lucke T, Fallowfield M, Burden D. Lichen planus associated with milia.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1999;24(4):266-9.
- Mahalingam M, Kim E, Bhawan J. Morphea-like tattoo reaction. *American Journal of Dermatopathology*. 2002;24(5):392-5.
- Marchesi A, Parodi PC, Brioschi M, Marchesi M, Bruni B, Cangi MG, et al. Tattoo ink-related cutaneous pseudolymphoma: a rare but significant complication.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4;38(2):471-8.
- Mataix J, Silvestre JF. [Cutaneous adverse reactions to tattoos and piercings]. *Actas Dermo-Sifiliograficas*. 2009;100(8):643-56.
- Matsika A, Srinivasan B, Gray JM, Galbraith CR. Tattoo pigment in axillary lymph node mimicking calcification of breast cancer. *BMJ case reports*. 2013.
- McLean M, D'Souza A. Life-threatening cellulitis after traditional Samoan tattooing.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011;35(1):27-9.
- Messahel A, Musgrove B. Infective complications of tattooing and skin piercing. *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 2009;2(1):7-13.
- Morales-Callaghan AM, Jr., Aguilar-Bernier M, Jr., Martinez-Garcia G, Miranda-Romero A. Sarcoid granuloma on black tattoo.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2006;55(5 Suppl):S71-3.
- Montgomery DF, Parks D. Tattoos: counseling the adolescent.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 official publication of National Association of Pediatric Nurse Associates & Practitioners*. 2001;15(1):14-9.
- Moshirfar M, Espandar L, Kurz C, Mamalis N. Inadvertent pigmentation of the limbus during cosmetic blepharopigmentation. *Cornea*. 2009;28(6):712-3.
- Ostheimer TA, Burkholder BM, Leung TG, Butler NJ, Dunn JP, Thorne JE. Tattoo-Associated Uveitis. *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 2014;158(3):637-43.
- Pasolini G, Ghidini P, Arisi M, Pedretti A, Ungari M, Pinton PC. Pseudolymphoma tattoo-induced. *Dermatology Reports*. 2011;3(3):DOI: <http://dx.doi.org/10.4081/dr.2011.e47>
- Peters NT, Conn H, Cote MA. Extensive lower eyelid pigment spread after blepharopigmentation. *Ophthalmic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1999;15(6):445-7.
- Philips RC, Hunter-Ellul LA, Martin JE, Wilkerson MG. *Mycobacterium fortuitum*

- infection arising in a new tattoo. *Dermatology online journal*. 2014;20(6):10.
- Porter CJW, Simcock JW, MacKinnon CA. Necrotising fasciitis and cellulitis after traditional Samoan tattooing: Case reports. *Journal of Infection*. 2005;50(2):149-52.
- Requena L, Cerroni L, Kutzner H. Histopathologic Patterns Associated with External Agents. *Dermatologic Clinics*. 2012;30(4):731-48.
- Richards DC, Mikiashvili T, Parris JJ, Kourbatova EV, Wilson JCE, Shubladze N, et al. High prevalence of hepatitis C virus but not HIV co-infection among patients with tuberculosis in Georgia. *International Journal of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2006;10(4):396-401.
- Roenigk Jr HH. Tattooing--history, technics, complications, removal. *Cleveland Clinic quarterly*. 1971;38(4):179-86.
- Rorsman H, Brehmer-Andersson E, Dahlquist I, Ehinger B, Jacobsson S, Linell F, et al. Tattoo granuloma and uveitis. *Lancet*. 1969;2(7610):27-8.
- Rubianes EI, Sanchez JL. Granulomatous dermatitis to iron oxide after permanent pigmentation of the eyebrows. *Journal of Dermatologic Surgery and Oncology*. 1993;19(1):14-6.
- Sanghavi SA, Dongre AM, Khopkar US. Tattoo reactions-An epidemic on the surge: A report of 3 cases. *Indian Journal of Dermatology, Venereology and Leprology*. 2013;79(2):231-4.
- Schwarze HP, Giordano-Labadie F, Loche F, Gorguet MB, Bazex J. Delayed-hypersensitivity granulomatous reaction induced by blepharopigmentation with aluminum-silicat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2000;42(5 Pt 2):888-91.
- Sergeant A, Conaglen P, Laurenson IF, Claxton P, Mathers ME, Kavanagh GM, et al. *Mycobacterium chelonae* infection: A complication of tattoo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2013;38(2):140-2.
- Setlur J. Cosmetic and reconstructive medical tattooing. *Current Opinion in Otolaryngology and Head and Neck Surgery*. 2007;15(4):253-7.
- Shinohara MM, Nguyen J, Gardner J, Rosenbach M, Elenitsas R. The histopathologic spectrum of decorative tattoo complications. *Journal of cutaneous pathology*. 2012;39(12):1110-8.
- Spear SL, Arias J. Long-term experience with nipple-areola tattooing. *Annals of Plastic Surgery*. 1995;35(3):232-6.
- Sperry K. Tattoos and tattooing: Part II: Gross pathology, histopathology, medical complications, and ap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1992;13(1):7-17.
- Sweeney SA, Hicks LD, Ranallo N, Snyder Nt, Soldano AC. Perforating granulomatous dermatitis reaction to exogenous tattoo pigment: a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Dermatopathology*. 2013;35(7):754-6.
- Taaffe A, Wyatt EH. The red tattoo and lichen planus. *International Journal of*

- Dermatology. 1980;19(7):394-6.
- Teixeira M, De Wachter L, Ronsyn E, Goossens A. Contact allergy to para-phenylenediamine in a permanent eyelash dye. *Contact Dermatitis*. 2006;55(2):92-4.
- Thum CK, Biswas A. Inflammatory Complications Related to Tattooing: A Histopathological Approach Based on Pattern 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dermatopathology*. 2013;DOI: 10.1097/DAD.0b013e3182974558.
- Tope WD, Shellock FG.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permanent cosmetics (tattoos): Survey of complications and adverse events. *Journal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2002;15(2):180-4.
- Tsang M, Marsch A, Bassett K, High W, Fitzpatrick J, Prok L. A visible response to an invisible tattoo. *Journal of cutaneous pathology*. 2012;39(9):877-80.
- Urdang M, Mallek JT, Mallon WK. Tattoos and piercings: a review for the emergency physician. *The Wester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2011;12(4):393-8.
- Vagefi MR, Dragan L, Hughes SM, Klippenstein KA, Seiff SR, Woog JJ. Adverse reactions to permanent eyeliner tattoo. *Ophthalmic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2006;22(1):48-51.
- Wenzel SM, Rittmann I, Landthaler M, Baumler W. Adverse reactions after tattooing: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comparison to results of a survey. *Dermatology*. 2013;226(2):138-47.
- Wenzel SM, Welzel J, Hafner C, Landthaler M, Baumler W. Permanent make-up colorants may cause severe skin reactions. *Contact Dermatitis*. 2010;63(4):223-7.
- Wolf R, Wolf D. A tattooed butterfly as a vector of atypical Mycobacter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2003;48(5 suppl.):S73-S4.
- Wollina U. Nodular skin reactions in eyebrow permanent makeup: Two case reports and an infection by Mycobacterium haemophilum.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11;10(3):235-9.
- Wollina U, Gruner M, Schonlebe J. Granulomatous tattoo reaction and erythema nodosum in a young woman: Common cause or coincidence?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08;7(2):84-8.
- Wong SSY, Wong SCY, Yuen KY. Infections associated with body modification. *Journal of the Formosan Medical Association*. 2012;111(12):667-81.
- Wood A, Hamilton SA, Wallace WA, Biswas A. Necrobiotic Granulomatous Tattoo Reaction: Report of an Unusual Case Showing Features of Both Necrobiosis Lipoidica and Granuloma Annulare Patterns. *The American Journal of dermatopathology*. 2013;DOI: 10.1097/DAD.0000000000000032.
- Yang DS, Kim SC, Lee S, Chung Y. Foreign body epithelioid granuloma after cosmetic eyebrow tattooing. *Cutis*. 1989;43(3):244-7.

VII

부록

1. 구조적 문헌 고찰 검색 결과

1.1. 국외 데이터베이스

가) Ovid-MEDLINE (검색일: 2014.6.23.)

- 1 exp tattooing/
- 2 tattoo*.tw.
- 3 body penetrate.tw.
- 4 body art*.tw.
- 5 micro pigment*.tw.
- 6 permanent ink design*.tw.
- 7 contour make up*.tw.
- 8 face contour.tw.
- 9 permanent makeup*.tw.
- 10 art make*.tw.
- 11 permanent cosmetic*.tw.
- 12 OR/1-11
- 13 exp "Drug-Related Side Effects and Adverse Reactions"/
- 14 adverse effect*.tw.
- 15 adverse event*.tw.
- 16 adverse reaction*.tw.
- 17 side effect*.tw.
- 18 safety.tw.
- 19 complication*.tw.
- 20 health problem*.tw.

- 21 drug toxic*.tw.
- 22 OR/13-21
- 23 12 AND 22

나) Ovid-EMBASE (검색일: 2014.6.23.)

- 1 exp tattoo/
- 2 tattoo*.tw.
- 3 body penetrate.tw.
- 4 body art*.tw.
- 5 micro pigment*.tw.
- 6 permanent ink design*.tw.
- 7 contour make up*.tw.
- 8 face contour.tw.
- 9 permanent makeup*.tw.
- 10 art make*.tw.
- 11 permanent cosmetic*.tw.
- 12 OR/1-11
- 13 exp adverse drug reaction/
- 14 exp side effect/
- 15 adverse effect*.tw.
- 16 adverse event*.tw.
- 17 adverse reaction*.tw.
- 18 side effect*.tw.
- 19 safety.tw.
- 20 complication*.tw.
- 21 health problem*.tw.
- 22 drug toxic*.tw.
- 23 OR/13-22
- 24 12 AND 23

다) PubMed (검색일: 2014.6.23.)

- #1 tattoo*.tw.

#2 "body penetrate".tw.
 #3 "body art*".tw.
 #4 "micro pigment*".tw.
 #5 "permanent ink design*".tw.
 #6 "contour make up*".tw.
 #7 "face contour".tw.
 #8 "permanent makeup*".tw.
 #9 "art make*".tw.
 #10 "permanent cosmetic*".tw.
 #11 #1 OR #2 OR #3 OR #4 OR #5 OR #6 OR #7 OR #8 OR #9 OR #10
 #12 MeSH descriptor Drug-Related Side Effects and Adverse Reactions
 explode all trees
 #13 "adverse effect*".tw.
 #14 "adverse event*".tw.
 #15 "adverse reaction*".tw.
 #16 "side effect*".tw.
 #17 safety.tw.
 #18 complication*.tw.
 #19 "health problem*".tw.
 #20 "drug toxic*".tw.
 #21 #13 OR #14 OR #15 OR #16 OR #17 OR #18 OR #19 OR #20
 #22 #12 AND #21

1.2. 국내 데이터베이스

가) KoreaMed (검색일: 2014.7.15.)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tattoo	해당 없음	36	16
permanent ink	해당 없음	1	0
permanent makeup	해당 없음	2	2
permanent cosmetic	해당 없음	38	7
"micro pigmentation"	해당 없음	0	0
"body penetrate"	해당 없음	0	0
"face contour"	해당 없음	2	0
KoreaMed		79	25

나) KISS (검색일: 2014.7.15.)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Title, 의학학분야	56	20
tattoo	Title, 의학학분야	39	13
반영구화장	Title	0	0
영구화장	Title	4	1
permanent makeup	Title	2	0
KISS		101	34

다) RISS (검색일: 2014.7.15.)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Title, 의학학분야, 국내학술지논문	82	14
tattoo	Title, 의학학분야, 국내학술지논문	72	13
반영구화장	Title, 국내학술지논문	2	0
영구화장	Title, 국내학술지논문	5	2
permanent makeup	Title, 국내학술지논문	4	0
RISS		165	29

라) KMBASE (검색일: 2014.7.15.)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Title, Abstract	70	10
tattoo	Title, Abstract	131	22
반영구화장	Title, Abstract	0	0
영구화장	Title, Abstract	3	2
permanent makeup	Title, Abstract	2	0
KMBASE		206	34

마) 국회도서관 (검색일: 2014.7.15.)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Key Word, 등재(후보)학술지	62	4
tattoo	Key Word, 등재(후보)학술지	18	4
반영구화장	Key Word, 등재(후보)학술지	0	0
영구화장	Key Word, 등재(후보)학술지	3	2
permanent makeup	Key Word, 등재(후보)학술지	1	0
국회도서관		84	10

바) 과학기술학회마을(KISTI) (검색일: 2014.7.15.)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Title	12	2
tattoo*	Title	34	5
반영구화장	Title	0	0
영구화장	Title	0	0
permanent makeup	Title	0	0
과학기술학회마을		46	7

사) 국립중앙도서관 (검색일: 2014.7.15.)

검색어	limit	검색된 문헌	관련 문헌
문신	Title, 연속간행물, 기술과학	30	1
tattoo	Title, 연속간행물, 기술과학	28	1
반영구화장	Title, 연속간행물, 기술과학	0	0
영구화장	Title, 연속간행물, 기술과학	0	0
permanent makeup	Title, 연속간행물, 기술과학	0	0
국립중앙도서관		58	2

2. 선택된 국내 문헌

#	제 1저자(연도)	문신유형	연구유형	부작용 유형	문신 부위
1	권순호(2014)	미용문신	사례보고	통증/가려움	입술
2	설보람(2013)	미용문신	사례보고	통증	아이라인
3	이형래(2012)	서화문신	조사연구	감염/면역 관련	몸통/팔다리
4	이정연(2011)	서화문신	조사연구	면역 관련	몸통/팔다리
5	황선욱(2008)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손/발
6	조윤화(1989)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7	홍철(1989)	미용문신	조사연구	통증	아이라인
8	정재윤(2009)	미용문신	사례보고	감염	눈썹
9	이종선(2009)	미용문신	사례보고	신생물(암)	눈썹
10	이미경(1990)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11	김정원(1988)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12	김진우(1986)	서화문신	조사연구	면역 관련	몸통/팔다리
13	이유신(1989)	서화문신	조사연구	면역 관련	몸통/팔다리
14	노영석(1991)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15	김영우(1992)	미용문신	사례보고	통증	눈썹
16	심현수(2010)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17	조성빈(2008)	미용문신	조사연구	기타	

3. 선택된 국외 문헌

#	제 1저자(연도)	연구국가	문신유형	연구유형	부작용 유형	문신 부위
31	Antoszewski (2006)	폴란드	서화문신	조사연구	감염/기타	팔다리/몸통
61	Bedocs(2008)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71	Bhagal(2009)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77	Biro(1967)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기타	팔다리
78	Biswas(2011)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79	Bittencourt(2013)	브라질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184	Marshak(2008)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통증	아이라인
198	Deschesnes(2006)	캐나다	서화문신	조사연구	감염/면역/기타	기타
222	Falsey(2013)	미국	서화문신	기타	감염	해당없음
233	Fioramonti(2012)	이탈리아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	팔다리
239	Foulds(1982)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	팔다리
260	Garcovich(2012)	이탈리아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278	Giulieri(2011)	스위스	미용문신	사례보고	감염	눈썹
282	Goldberg(1989)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기타	아이라인
283	Goldberg(2008)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신생물(암)	팔다리
344	Hosberg(2013)	덴마크	서화문신	조사연구	기타	기타
345	Hosberg(2013)	덴마크	기타	조사연구	기타	기타
411	Khetarpal(2010)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기타	손발
427	Klontz(2005)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아이라인/입술
439	Kluger(2008)	프랑스	서화문신	사례보고	신생물(암)	몸통

441	Kluger(2010)	프랑스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몸통
442	Klug(2010)	독일	서화문신	조사연구	기타	기타
456	Kreidstein(1997)	캐나다	서화문신	사례보고	통증	몸통
463	Kvitko(2013)	브라질	서화문신	단면연구	감염	기타
482	Lee(2001)	한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기타	아이라인/눈썹
507	Lubeck(1952)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기타	기타
508	Lucke(1999)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발적	팔다리
527	Matsika(2013)	호주	서화문신	사례보고	기타	몸통
543	McLean(2011)	뉴질랜드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	기타
619	Pasolini(2011)	이탈리아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642	Porter(2005)	뉴질랜드	서화문신	사례보고	통증/감염	기타
674	Richards(2006)	미국	서화문신	조사연구	감염	기타
685	Rorsman(1969)	스웨덴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690	Rubianes(1993)	푸에르토리코	미용문신	사례보고	감염	눈썹
700	Sanghavi(2013)	인도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기타	팔다리
709	Sergeant(2013)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기타	팔다리
722	Shinohara(2012)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면역/발적	팔다리/몸통
743	Spear(1995)	미국	의료문신	조사연구	발적/통증	몸통
782	Teixeira(2006)	벨기에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794	Tope(2002)	미국	미용문신	조사연구	통증	아이라인
799	Tsang(2012)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809	Vagefi(2006)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아이라인
851	Wenzel(2010)	독일	미용문신	단면연구	면역 관련	입술
860	Wolf(2003)	이스라엘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	팔다리
861	Wollina(2011)	독일	미용문신	사례보고	감염/면역	눈썹
863	Wollina(2008)	독일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몸통
871	Yang(1989)	한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눈썹
928	Bhardwaj(2003)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1195	Korner(2013)	독일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신생물	손발/몸통
1233	Mahalingam(2002)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손발
1237	Marchesi(2014)	이탈리아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1273	Morales-Callaghan (2006)	스페인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기타
1276	Moshirfar(2009)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기타	아이라인
1313	Peters(1999)	미국	미용문신	사례보고	기타	아이라인
1372	Schwarze(2002)	프랑스	미용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아이라인
1416	Sweeney(2013)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몸통
1419	Taaffe(1980)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몸통
1811	Ostheimer(2014)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몸통
1822	Philips(2014)	미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감염	팔다리
1937	Wood(2013)	영국	서화문신	사례보고	면역 관련	팔다리

4. 국외 고찰 문헌

1저자(발행년도)	유해사례 유형		추정 원인	비고
Kluger(2010)	피부 감염		무자격자 문신 시술	
	염료에 의한 과민반응		문신 색소	
	문신으로 인한 피부암		문신의 홍터화	
	건선		유전	
	유육종증		원인 불명	
Kluger(2010)	루푸스 홍반		자외선	
	피부 팽창으로 인한 문신 뒤틀림		임신 중 피부 팽창	임신 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사례
	수술 부위에 문신이 있는 경우		문신 색소 침투 가능성	
	요추 부위 문신시 경막외 마취		문신 색소 침투 가능성	
	무균성 면역반응		바늘의 피부 침투	
Kluger(2012)	팔다리 부종		면역 반응	
	급성 국소 림프절 팽창		일시적 임파선염	
	자반증 및 혈종		유두진피 모세혈관 파열	원인이 정확히 기술되지 않음
	피하 잉크 확산		피부 심부 염료주입	
	국소 또는 광범위한 피부염		시술 후 연고 및 크림 사용	
	감염		비위생	
	혈관염		감염	
Kuczkowski(2006)	따가움			
	통증		척수강 내로 문신 색소 침투 가능성	출산 중 척수 마취 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사례
Long(1994)	세균 감염	매독	비위생	
		결핵	비위생	
	바이러스 감염	종두증	비위생	감염만을 다룸
		바이러스성 간염	비위생	
		HIV	비위생	
Mataix(2009)		급성 염증 반응	문신 시술 자체	1~2주 내 소실
			항 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한	
		지연성 반응	HIV 환자에서 면역 회복	
	염증성 반응		증후군 반응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주로 붉은색 염료 내 수은	
		육아종성 반응	염료 내 크롬, 수은, 코발트, 마그네슘 등	
		거짓상피증 반응	주로 붉은색 염료.	
			항 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한	
		사르코이드증	HIV 환자에서 면역 회복	
			증후군 반응	
퀘브너 현상		과저농피증		
		아급성 피부 홍반성 루푸스		

	세균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상구균		
		결핵		
		한센병		
		황색 포도상구균		심내막염
		S 구균	① 염료가 피부에 침투하여	
		녹농균	모세혈관 및 림프관에	패혈증
		화농성 연쇄상구균	접촉하여 발생 가능.	
		매독	② 위생상태	
감염	바 이 러 스	전염성 연속종	③ 염료 자체의 오염	
		사마귀	④ 비전문가에 의한 시술	
		B형 간염		
		C형 간염		
		HIV		
	진균	접합균증		
		칸디다성 질염		
		적색백선균		
		유모표피사상균		
		악성 흑색종		
종양		기저세포암	자외선, 염료 내 독성/발암	
		편평상피세포암	성 물질, 관련 유전 요인	
		각질가시세포종		
		용기피부섬유육종		
Durkin(2012)	MRI로 인한 화상		염료 내 철분	MRI 관련 부작용
	MRI 신호 감지되지 않음		염료 내 철분	
Beerman(1954)	매독(1기, 2기, 3기)			
	결핵			
	종두증			
	화농성 감염			
	사르코이드 증		매독에 초점 맞춘 문헌	
	Reticulo-histio-sarcoma		예전, 염료에 침이나 오줌을 섞을 때에 매독이	
	만성 원판상 홍반성 루푸스		더 유행하였음	
	건선		원인 서술되지 않음	
	흑색종			
	켈로이드			
	한센병			
	수은 과민			
Braverman(2006)	비감염성	염료에 대한 과민		
		육아종		
		흑색종/편평세포암		
		켈로이드		
		MRI 시 화상	염료 내 금속 성분	원인이 정확히 서
	감염성	문신 부위 국소 감염		술되지 않음
		심내막염		
		B, C형 간염		
		매독	과거 비위생적인 시술과정	
		결핵		

		유두종		
		HIV		
Cuyper(2008)	출혈		5일 내에 소실됨	
	인설		자연스러운 현상	
	부종			
	감염	박테리아	비위생	미용 문신과 의료 문신의 부작용에 관한 문헌
		바이러스	바늘 반복사용	
		간염		
		HIV		
	알레르기 반응/육아종		염료	
	켈로이드			
	속눈썹 탈락			
	눈꺼풀 괴사			
Messahel(2009)	안검외반			
	MRI 관련 부작용		염료 내 금속성분	
		문신 부위 국소 감염	문신 후 적절한 관리 부족	
	감염		바늘 반복사용	
		매독	시술시 침 섞음	매독이나 결핵에 이환된 시술자가 시술 시 염료에 침을 섞음으로써 발생
		결핵	시술시 침 섞음	
		사마귀(warts)		
		우두(vaccinia)		
	바이러스	수두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간염	바늘 반복사용	
		HIV	바늘 반복사용, 염료 오염	
Montgomery(2001)	비감염성	붉은색 염료 과민	염료 내 cinnabar	
		광과민	염료 내 카드뮴	
		사르코이드 유사 육아종	-	
		악성 흑색종	-	
	감염성	기저세포암종	-	청소년 대상 문신 위험 교육용 자료
		결핵	이환된 시술자의 침	
		사마귀	염료 혹은 바늘 오염	
		문신 부위 국소 감염	문신 후 적절한 관리 부족	
		매독	이환된 시술자의 침	
		B형 간염	바늘 반복사용	
Requena(2012)	감염성	HIV	-	
		포도알균/사슬알균	-	
		매독	-	
		한센병	-	
		결핵	-	
		파상풍	-	
		연성 하감	-	
		사마귀	-	
		우두	-	
		단순포진, 대상포진	-	
		전염성 연속종	-	
		B, C형 간염		
		피부사상균증		

	건선	-	
	편평태선	-	
	다리에 병	-	
	피부장애 원판상 홍반성 낭창	-	
	사르코이드증	-	
	육아종	-	
	유지방성생괴사	-	
	알레르기	-	
	광과민	-	
	백혈구파쇄성맥관염	-	
Roenigk(1971)	켈로이드		
	신생물		
	감염성 화농성 감염	비위생적인 시술	
	매독	비늘을 통한 전염	
	결핵	시술시 침 섞음	시술 시 비위생,
	한센병	-	염료 내 중금속
	우두	-	등을 원인으로
	간염	오염된 염료	간주
	문신 부위 국소 질환	-	
	알레르기	염료 내 cinnabar	
Setlur(2007)	광과민	염료 내 cadmium	
	사마귀, 켈로이드, 흑색종 등	-	
	문신 제거시 흉터, 색소변성	레이저 이용 시 붉은 색이 검게 변함	
	독성물질 생성	레이저 이용 시 발암성 물질 생성	문신 제거 시
	비대 흉터	tannic acid 이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
	피부 전증 화상	비 의료인 시술	포함
	색소에 대한 반응		
	알레르기 반응	염료	
	육아종	-	
	감염	비위생적 환경	
Sperry(1992)	MRI 시 문신 부위 화상	염료 내 금속 성분	
	무균성 농가진		
	염증반응, 농창		
	화농성 감염 절양다발증		
	단독		
	봉와직염		
	매독		
	한센병	인과관계 확실하지 않음	
	B형 간염		
	결핵		
	비화농성 감염	풍진	
		연성 하감	
		파상풍	
		전염성 연속종	
		HIV	비늘을 통한 전염

	문신 부위 피부 질환	우두		
		심상성 사마귀		
		단순포진, 대상포진		
		건선		
		편평태선		
		다리에 병		
		만성 원판상 홍반성 낭창		
		각질증 세포종		
	염료에 대한 반응	피부 경화, 소양감 동반 홍반	염료 내 수은(붉은색), 크롬 (녹색), 카드뮴(노란색), 코발트(파란색)	태양광이 반응 자극
	기타	켈로이드		
		사르코이드증		붉은색 염료에서 빈번
		다형 홍반		
		국소성 경피증		
		림프절병		
Wenzel(2013)	알레르기성/태 선상/육아종성 반응	사르코이드 육아종		
		기타 육아종		
		알레르기 과민반응		
		거짓림프종		
	감염	바이러스성 우사마귀		
		전염성 연속종	① 세균 등 염료 자체의 오염	
		단순포진		
		C형 간염	② 부적절한 피부 부위에 문신할 경우 주변부의 세균이 시술 중 유입	염료가 피부질환 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하여 염료 규 제를 주장함
		결핵		
		한센병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CA-MRSA의 피부 및	③ 문신 피술자는 시술 후 가려움과 타는 느낌을 받는데 그때에 문신부위 를 긁으면서 세균 유입	
		연조직 감염		
		기타 세균감염		
	암	백선		
		리슈마니아증		
		악성흑색종		
		기저세포암	염료가 림프절 순환을 통해 이동	
		편평세포암		
		각질극세포종		
Wong(2012)		피부감염, 육아종, 고름	중국산 문신 잉크	
		피부종양	비인증 시술자	
		농포성 피부 병변, 발열		피어싱, 문신, 메 조테라피 등의 시 술에서 발생하는 감염사례 고찰
		피부감염	증상을 보인 6명이 같은 시 술자에게 시술받음	
Brown(2000)		피부감염	오염된 염료	
		B형 간염	바늘 반복사용	
		C형 간염	오염된 염료	학교에서 청소년 에게 문신 위험에
		HIV	부적절한 소독	

알레르기 반응, 감염증		염료 내 미지의 성분	관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
Goldstein(1979)	무균성 염증반응, 화농성 감염	일시적 염증반응	
		농가진	
		심상성 농창	
		절종증	
		단독	
	비 화농성 감염	봉와직염	
		매독	이환된 시술자의 침 혼입
		결핵한센병	
		바이러스성 감염	
		피부 결핵	
	문신 부위 질병	풍진	
		연성하감	
		파상풍	
		전염성 연속증	
		종두증	
	염료 과민 반응	심상성 사마귀	
		단순/대상포진	
		건선	
		편평태선	
		다리에 병	
	기타	만성 원판 홍반성 낭창	
		각화극세포종	
		크롬(초록색)	
		코발트(푸른색)	
		카드뮴(노란색)	
Juhas(2013)	염증성	수은(붉은색)	
		켈로이드	
		사르코이드성 육아종	
		다형홍반	
		국소 피부 경화증	
	염증성	림프샘 장애	
		태선양 반응	
		습진양 반응	
		이물육아종	
		사르코이드성 육아종	
		거짓림프종	
		국한성 경피증	
		혈관염	
		두드러기	
		자가 감각	
		아나필락시스	
		건선	
		루푸스	
		피부섬유증	

	감염성	MRSA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피부 결핵	소독되지 않은 바늘의 재사용, 시술자의 침, 토양 혼입
		결핵한센병	성향이 있는 문신 피술자
		박테리아성 심내막염	오염된 염료
		인유두종 바이러스	
		전염성 연속종	
		B형 간염	비전문가 시술, 오염된 바늘
		C형 간염	
	신생물	흑색종	
		각화극세포종	트라우마, 상처, 문신 염료
		편평세포암	내 발암 물질, 만성 염증성
		기저세포암	반응 등 복합 원인 추정
		평활근육종	
Kaatz(2008)	알레르기, 태선양, 거짓림프종, 육아종 반응		염료 내 중금속, 오염된 염료
	감염		비위생적인 환경, 미숙한 시술자
	신생물(암)		
	평소 질환의 악화		
	괴브너, 단순포진, 대상포진 등		
	척수 마취 합병증		염료의 척수강 내 이동
	포도막염		
	MRI 관련 부작용		
Kazandijeva(2007)	염료 퍼짐현상		
	트라우마	초기 염증반응	
		농가진	
		심상성 농창	
		두창양 여드름	
		단독	
		봉와직염	
		괴저	
		패혈증	
	위험한 국소 감염	파상풍	
		연성 하감	
		피부 결핵	
		한센병	
		매독	
		편평사마귀	
		전염성 연속종	
		B,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접합균증	
		사상균증	
	진균증	사르코이드양 육아종	
		이물육아종	
		알레르기성 육아종양 반응	

	알레르기 반응	피부염		
		레이저 제거 시술 이후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광과민 반응	문신 후 햇빛 노출, 염료 내 카드뮴		
	문신 부위 국 소 피부 질환	건선		
		편평태선		
		만성 원판성 홍반성 낭창		
		거짓립프증		
Khosla(2010)	종양	기저세포암		
		유극세포암		
		악성 흑색종		
	국소 홍터			
	심한 국소 부종			
	알레르기 반응	염료, 라텍스 장갑		
	국소 감염			문신의 정신적인 측면
	패혈증			(psychiatric)에 대하여 다른 문헌
	혈액 매개 질환 감염(B, C형 간염, HIV 등)	소독되지 않은 기구		
	출혈	피술자의 선택적 세로토닌 억제제 복용		
Urdang(2011)	육아종			
	켈로이드			
	MRI 관련 부작용	염료 내 금속 성분		
	파상풍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피부 감염			
	패혈증			
	진균 및 바이러스 감염			
	심상성 사마귀			문신 유해사례의 유병률은 2~3%
	피부 결핵			라고 보고함.
	전염성 연속증			대부분의 유해 사례는 감염과 관련. 교도소 내
	매독			문신 시술이나 정맥 약물 사용자 의 경우 B, C형 간염과 MRSA 감 염에 취약함
	연성 하감			
	건선			
	MRI 검사 시 화상			
	심내막염			
	피부염			
	편평 태선			
	루푸스 양 반응			
	두드러기			
	광 과민성			
	흑색종을 포함한 종양			
	HIV			
	육아종			
	농가진			

Thum(2013)	해면양 반응			
	건선양 반응			
	혼합 패턴	태선양		
		액포 형태		
	결 절 성 / 확 산 패턴	육아종성		
		정확한 원인 불명		
		결핵성		
		문신용 염료 혹은 바늘		
		사르코이드성		
		(needle)로 추정		
	패턴	화농성 육아종성		
		생괴사성		
		거짓림프종성		
	수포성 패턴			
	혈관염			
	섬유화 패턴			
	거짓상피종양성 패턴			
병리 소견에 따른 문신 유해사례 분류				

5. 미국 규정

5.1. 뉴욕 주 규정 (Section 260.21 of New York State Penal Law – Unlawfully Dealing with a Child in the Second Degree)

§260.21 2급 미성년자 관련 불법 사항에 관한 법규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잉크나 색소로 자국을 남기는 문신 행위는 Class B의 경범죄에 해당됨

Article 4-A Regulation of Body Piercing and Tattooing

§ 460. 정의

1. “위원(commissioner)”은 보건 위원을 의미함
2. “문신(tattoo)”은 지울 수 없는 잉크 또는 색소를 피부에 주입하여 사람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의미함
3. “문신 시술자(tattooist)”는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4. “문신업소(tattoo studio)”는 문신업자가 문신 시술을 하는 장소를 의미함
5. “담당자(officer)”는 인구 백만 명 이상 도시 혹은 지역의 보건 위생법 실행에 주요한 책임을 지닌 공무원을 의미함; 이 직책의 목적을 위해, 담당자는 주법(stat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과 인구 백만 명 이상의 조례 (city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아래 감독관의 권한을 가짐
6. “부서(department)”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를 의미함

§ 461. 허가 사항(permit required)

1. 부서에서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누구도 문신 시술자가 될 수 없으며, 어떠한 사람이나 회사, 법인, 조합도 부서 허가 이전에는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없음
2. 모든 문신 시술은 보건법(public health law)에 따라 위원이 공표하는 법규와 규정에 맞게 실행되어야 함
3. 문신 시술자나 문신업소 등이 형사법, 보건의료법 등을 준수하고, 본 조항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미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서는 문신 시술자와 문신업소를 허가해야 함

§ 462. 본 규정의 적용

1. 본 조항은 교육법 131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방사선사(x-ray)에는 적용되지 않음
2. 본 조항은 시·군·구 등의 지역법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약을 주지도 않음; 또한 시·군·구 등의 문신 관련 법규 또는 규제에 적용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약을 주지 않음
3. 본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것도 문신 시술자나 문신업소의 고객이나 지역 사회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에 행동할 수 있는 담당자의 의무 또는 권한을 제한하지 못함; 또한 이 조항에 포함된 사항들은 현재 또는 미래의 담당자, 주 단위의 보건 담당자, 지방 보건부 담당자 의 직책이나 권한을 바꾸거나, 줄일 수 없음

§ 463. 허가 거부; Notice of hearing

마지막 허가 지원서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 부서는 기각 사유를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지원서 기각 전 지원자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듣게 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변호인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함; 이런 유형의 통지는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 또는 민법과 소환 규정에 따른 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지원자로부터 공판 요청이 있을 시에 그 장소와 시간은 부서에서 결정함; 만약 지원자가 기각 통고 후 30일 이내 공판 요청을 서면 제출하지 않았을 시, 부서의 허가 요청 기각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됨; 부서는 본 주(state)내의 모든 담당자를 소환할 권한을 지니며 그 기각 사유에 관하여 증언을 들을 수 있음; 이 섹션 내의 증언은 민법에 의해 통제 받을 것임; 만약 공판 이후, 지원이 기각되었을 경우, 그 사유는 직접적으로 전달해지거나, 등기 우편 또는 민법과 소환 규정에서 인정된 방식을 이용하여 전달되어야 함

§ 허가; 전시(display); 갱신; 재발급

1. 모든 허가는 2년 동안 유효함
2. 어떤 허가/허가증도 이전이나 양도가 불가능함
3. 조항에 따라 각 허가증은 허가 받은 문신업자가 문신 시술을 시행하는 문신업소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아야 함
4. 어느 자격증이든, 유예되거나 폐지되었지 않은 한, 위원이 규정한 재발급 비용을 지불 하였고 재발급 지원 서류를 제출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 2년이 추가 연장된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5. 어떤 사람, 회사, 기업, 조합이 만기 날짜 후 일 년 이내에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이 규정한 추가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함
6. 허가증 재발급은 허가증 분실, 파손 또는 훼손된 지원서로 인함; 따라서 지원서나 발급 비용은 위원의 규정사항을 따름; 재발급된 허가증은 “재발급(duplicate)”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기존의 허가증과 동일한 번호로 발급됨

§ 위원의 권한

위 조항들 외 추가적 권한과 의무

1. 이 조항에서 공인된 부서의 권한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담당자를 임명함
2. 허가를 위한 지원자의 자격과 적합함을 평가함
3. 발급되거나, 정지, 말소된 허가서 또는 허가 받지 않은 행위의 중지 명령이나 지시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함
4. 평가 지침 설명서 또는 법규를 준비하고 그것의 사본들을 준비함으로써 타당한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음
5. 타당한 자격증, 허가 발급, 갱신, 재발급의 비용을 제시하고,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알맞은 처벌을 조정함

5.2. 뉴욕 시 규정(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new))

– subchapter.7 Tattoo Regulation Act)

§ 17-355 이 조문(subchapter)은 “문신 규정 법”이라고도 불림

§ 17-356 정의. 본 조(條)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a) “문신(tattoo)”는 사람 몸에 영구적인 잉크나 색소를 피부 층 내에 주입하여 흔적을 만든다거나, 혹은 흔적을 만들기 위해 위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b) “문신 시술자(tattooist)”란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함

§ 17-357 자격증

(a) 문신 시술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문신 행위를 하면 안됨

(b) 뉴욕 주 교육법 131조에 의해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physician)에게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c) 다른 사법권 지역 (주, 도시, 나라)에서 문신 행위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7일간의 임시 자격증을 발급함; 이 자격증은 뉴욕 시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문신 시술자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만약 이 7일간의 임시 자격증 지원자가 문신 시술자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문신 시술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문신 시술자일 경우, 위원은 지원자가 section 17-358에 필요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면 7일 임시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음;

(d) 위와 같은 종류의 임시 자격증의 비용은 위원이 규정하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음

§ 17-358 자격증, 지원, 과정, 필요조건

(a) 문신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에게 문신 시술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이 지원신청서에는 위원에 지원자가 자격증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함; 지원서 내에는 지원자가 위증을 했을 경우 위증죄를 받게 된다는 서명도 포함되어 있음

(b) 만 18세 이상일 경우 누구든지 위원에게 문신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음; 자격증 신청 전 일 년 이내에 뉴욕 주의 미성년자 문신 금지 조항 섹션(criminal tattooing of a minor violation of section 260.21)을 위반한 사람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c) 문신 시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에 발표한 법규에 따라서 문신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함. 시험 내용에는 감염 관리, 문신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 commissioner이 발표한 법규에 따라서 각 지원자가 문신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함 - 시험에는 감염 관리, 질병관리본부가 추천하는 위험 방지 방법,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됨; 시험 비용은 위원에 규정한 법규에 기록되어 있음; 지원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증거도 같이 제공해야 함; 문신 시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자 시험 준비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함; 또한 이용 가능한 새로운 의료 관련 정보나 기술이 발견되면 이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d)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시험의 비용은 미화 100불임

§ 만료, 이적(transfer), 양도(assignment), 전시(display)

(a) 모든 자격증에는 고유 숫자가 부여되고 발행 날짜로부터 2년간 유효함

(b) 모든 자격증은 이적이나 양도가 불가능함

(c) 이 조문과 위원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문신 피술자가 불만이나 불편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자격증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표시 되어야하며 이 주소와 전화번호는 문신 피술자의 눈에 잘 띄

는 곳에 전시되어야 함

(d) 자격증은 재시험 없이 갱신될 수 있음; 자격증 만료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재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증은 section 17-358 조항에 따라 다루어지게 됨

(e) 말소된 자격증 소유자는 말소 기간이 끝난 뒤 섹션 17-358의 조항에 의거해 자격증을 재신청할 수 있음

(f) 자격증을 지닌 문신 시술자가 게시하는 모든 광고문에는 “뉴욕 시 보건부가 허가한 문신 시술자(Licensed by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문신 시술자의 자격증 고유 번호가 포함되어있어야 함. 이 하위분류의 목적을 위해 전화번호부에 번호를 등록하는 행위는 광고행위가 아님

§ 17-360 위생 상태; 시설물; 장비; 절차

(a)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문신 시술자가 시술하는 문신업소, 문신 시술소, 문신 가게 등은 항상 깨끗하고 올바른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통풍이 원활하며, 문신 시술자와 문신 피술자를 위한 밝은 불빛, 폐기물 처리 용기, 차갑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세면 시설, 위생 비누와 수건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 - 법규에 따라 이러한 위생 상태는 필수 조건임

(b) 위원은 문신 시술자가 문신 시술 전 손을 씻어야 하고 문신 시술 중 라텍스 장갑 등 다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에 대한 법규를 공포하여야 함

(c) 위원은 올바른 문신 도구 소독법, 적절한 폐기물 처리 방법(바늘 등), 문신 시술 방법 (문신 시술 전 준비 과정, 피부 소독 등, 또한 문신 시술 이후 문신 시술자나 피술자가 할 수 있는 사후 처치방법 포함)에 관련된 법규를 공포하여야 함

(d) 위원은 피부 병변(skin lesions) 혹은 다른 증상을 가진 이용자가 문신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한 법규를 공포하여야 함

(e) 어떤 사람도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음

(f) 문신 시술이 완료된 후, 문신 시술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올바른 사후 관리 방법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g) 모든 문신 시술자는 문신 피술자의 이름, 주소 나이, 문신 시술을 받은 날짜, 혹은 위원이 규정한 정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이 요구할 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17-361 자문 위원회

(a) 문신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관해 위원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부서 내 자문 위

원회가 설립될 것임 - 자문 위원회는 한명의 의장과 각각 8명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 있음

- i. 문신 기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2인; 한 명은 시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시장이 임명함
- ii. 문신 기술 교육 과정과 연관된 2인; 한 명은 시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시장이 임명함
- iii. 살균 및 위생 전문가 2인; 한 명은 시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시장이 임명함
- iv. 피부과 전문의 2인; 한 명은 시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시장이 임명함

각 구성원은 어떠한 보상 없이 2년 간 임명되며, 이후 재임명 될 수 있음.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뉴욕 시 내 개인 사업/일/직업을 가질 수 있음; 의장은 위원으로부터 임명됨

(b) 자문 위원회는 이 조문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위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나 조문에서 주요 사항을 공표하고 개정하는 것에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도 자문 의견을 제공해 줌

§ 위반과 처벌

(a) 미성년자에게 문신 기술을 하여 뉴욕 주 형법 섹션 260.21(New York State penal law section 260.21)을 첫 번째로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 간 자격 정지에 처함; 자격증 정지 후 문신 기술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자격증 정지 만기 10일전 위원이 요구하는 보석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 보석금은 6개월의 자격증 정지 후 18개월 동안 효력이 있음; 뉴욕 주 형법 섹션 260.21(New York State penal law section 260.21)을 두 번째로 위반하고 이것이 첫 번째 위반 이후 2년 이내일 경우 2년 간 자격 정지와 섹션에 따라 위원은 보석금을 몰수 할 수 있음; 첫 번째 뉴욕 주 형법 섹션 260.21(New York State penal law section 260.21) 위반 이후 2년 이내에 세 번째로 섹션 260.21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간의 자격 정지에 처함;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위원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 조문에 따른 자격을 정지되거나 취소할 수 있음

(b) 어떤 사람이든 이 조문 또는 다른 법규를 어겼을 경우, 첫 번째 위반일 때는 미화 300불 미만의 벌금; 2년 내로 2번째 위반일 경우 미화 500불 미만의 벌금; 2년 내로 3번째 위반일 경우 미화 1,000불 미만의 벌금형에 처함

(c) 섹션의 하위분류 A에 준하여 공인된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또는 섹션의 하위분류 B에 준하여 공인된 민사처벌을 무효화(recover) 시키기 위한 과정은 service of notion

of violation에서 시작하며, 보건위원회(board of health)에서 설립한 자문 위원회에게 돌려보내 질 것임; 자문 위원회는 섹션의 하위분류 B의 민사 처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섹션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법규

위원은 이 조문의 조항과 일치하는 법규를 공표할 것이며, 이 조문의 조항들을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들 또한 공표할 것임

5.3. 코네티컷 주 규정

가) 코네티컷 일반 법령 섹션 19a-92a. 문신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규정, 처벌

(a)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하여,

(1) “숙련된 간호사(advance practice register nurse)”는 하위섹션 (b) 섹션 20-87a에 따라 고급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의미함

(2) “의사(physician)”는 chapter 370에 따라 수술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의미함

(3) “의료 보조원(physician assistance)”은 section 20-12b에 따라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뜻함

(4) “간호사(registered nurse)”는 subsection (a)에서 section 20-87a에 따라 간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뜻함

(5) “문신(tattooing)”이란 다른 사람의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으로 표시하거나 색을 칠하는 행위를 뜻함

(b) 이 섹션의 하부 섹션 (d), 공중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규정에 따라 의사, 의사의 지휘 아래 숙련된 간호사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것, 의사의 관리 감독 책임 아래 간호사(registered nurse)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것, 의사의 관리 감독 책임 아래 의료 보조원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 의사의 감독 아래 기술자(technician²⁶⁾) “physician assistance”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것 외에 어떠한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음

(c) 누구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음

(d) 54장에 따라 공중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는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함

(e) 누구든 이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는 class C의 경범죄에 해당됨²⁷⁾

26) 일반적으로 서화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 시술자를 의미함

27) 미화 100불 미만의 벌금, 90일 미만의 징역에 해당함

나) Regulation of Connecticut State Agencies (Conditions for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Registered Nurses, Physician assistants, and Technicians Engaged in Tattooing)

19a-92a-1. 문신을 할 수 있는 조건(conditions for tattooing for human beings)

(a) 의사 또는 접골 의사(osteopathic physician)의 지시 아래 숙련된 간호사(advance practice register nurse)는 코네티컷 주의 규정인 섹션 20-87a-2부터 20-87a-5의 조건 아래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음. 접골 의사가 문신 시술을 지휘할 때에도 이 조건은 유효함. 문신 시술은 진단(diagnostic procedure)·치료(medical therapeutics)·진단검사(laboratory test) 등에 한정하여야 함

(b) 의사 또는 접골 의사의 감독, 관리, 책임 아래 간호사(registered nurse)가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할 경우에 의사는 간호사에게 문신 과정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과 적절한 임상 훈련을 제공해야 함 또한 간호사의 지식과 임상적 능숙도 관련 연례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보고서는 지역 보건부 혹은 담당자가 요청할 시 제공하여야 함. 지도하는 의사나 접골 의사는 간호사에게 의료 상담이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하여야 함. 간호사가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있을 때에는 의사나 접골 의사가 직접, 혹은 전화, 라디오, 전기 통신 등으로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만 함

(c) 의료 보조원(physician assistance)이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코네티컷 일반 법령(Connecticut General Statutes section) 20-12c와 20-d에 따름

(d) 의사 또는 접골 의사의 감독 아래 문신 시술자²⁸⁾(technician)가 사람에게 문신을 행할 경우 의사는 명확한 설명과 위생 절차를 포함한 임상 훈련을 제공해야 함. 의사나 접골 의사는 문신업자의 지식과 문신 숙련도에 대해 연례 검토서로 기록하여야 함. 이 보고서는 지역 보건부 혹은 담당자가 요청할 시 제공하여야 함. 문신업자에게 문신 시술을 허락(render)하기 이전에 감독 의사 혹은 접골 의사는 문신 시술이 위생 절차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방문하여 점검해야 하고 이

28) 코네티컷 주 문신 관련 규정에서 technician은 다른 주의 문신 시술자에 해당함

를 문서화하여야 함. 문신 피술자의 안전을 위해서 방문 점검은 최소 매년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시행하여야 함. 방문 점검 보고서는 지역 보건부 혹은 담당자가 요청할 시 제공하여야 함. 방문 점검은 다른 의사나 접골 의사에게 위임 될 수 없으며, 문신 시술자가 문신 시술을 하는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함.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의사나 접골 의사는 문신 시술자에게 의료 상담이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문신 시술자가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의사나 접골 의사가 직접, 혹은 전화, 라디오, 전기 통신 등으로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만 함

6. 프랑스²⁹⁾

6.1.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위생 조건에 대한 명령(2008년 2월 20일)

프랑스 보건부³⁰⁾의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건을 정하고, “공중 위생법” 수정을 위한 2008년 2월 19일자 법령 n. 2008-149. (행정 명령)

NOR: SJSP0766174D

국무 총리는, 보건부에 의해 유럽 의회의 98/34/CE 지침과 기술적 규칙과 기준, 정보 사회 서비스에 관한 법규 영역에서 정보 절차를 정한, 1998년 6월 22일자 심의회에 의거;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L. 1311-1조와 L. 5232-2조; 환경법에 의거, 특히, L. 541-1조와 후속 조항들; 형법에 의거, 특히 R. 610-1조; 2007년 7월 5일자 공중 위생에 대한 최고회의의 의견에 의거; 최고행정법원(사회부)의 합의

【명령】

1조 - I. - “공중 위생법”(행정 명령 조치) 세 번째 부분의 3권 첫 번째 표제에 다음과 같이 1장이 삽입된다.

1장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섹션 1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어싱

〈〈 Art. R. 1311-1. - 현 섹션의 규정은 “침습적 문신” 기술 실행에 적용한다. 이는, (반)영구 화장 기술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한다. 단, ‘피스톨로 귀를 뚫는 기술’을 사용한

29) 프랑스 규정은 프랑스 공식 기관지(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에 명령, 훈령, 행정 규칙(Décrets, arrêtés, circulaires)으로 공표된 것을 번역하였음

30) 프랑스의 건강, 젊음, 체육, 참여적 삶 부(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et des Sports)를 프랑스 보건부로 지칭함. 2014년 현재 보건부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는 사회, 보건, 여성 권리 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s Droits des femmes)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귀의 외이(外耳)와 코의 측면은 제외한다.

〈〈 Art. R. 1311-2. - R. 1311-1조에서 언급한 기술³¹⁾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는 지방의 지역장(長)에게 신고한다. 이 기술의 중단도 같은 관청에 신고한다. 신고 방식은 “프랑스 보건부”의 법령에 의해 정한다.

〈〈 Art. R. 1311-3. - R. 1311-1조에서 언급한 기술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R. 1311-4. 항에서 제시하는 위생과 보건 조건에 관한 교육 이수를 마쳐야 한다. “프랑스 보건부”의 법령이, 이 교육이 행해지는 지역 관청의 대표를 통하여, 기관의 카테고리과 교육 자격이 있는 기관, 교육의 내용, 허용되는 학위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결정한다.

〈〈 Art. R. 1311-4. - R. 1311-1조에서 언급한 기술의 시행은 위생과 보건의 일반적 원칙을 준수하여 실행된다. 특히,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한다.

〈〈- 피부 표피를 뚫거나 피부나 점막을 접촉하여 들어오는 기구, 이 기구들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기구들은 살균 상태로 한 번만 사용하고, 각각 사용 전에 살균되어야 한다.

〈〈- 기술 장소는 이 기술의 기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방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안의 적용을 위한 양식은 “프랑스 보건부”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 Art. R. 1311-5. - 시술에 의해 생긴 폐기물은 감염 위험 주의 폐기물로 간주한다. 이 폐기물의 제거는 법령 R. 1335-1조부터 R. 1335-8조까지와 R. 1335-13조와 R. 1335-14조의 규칙에 따른다.

섹션 2

귀의 외이(外耳)와 코의 측면 피어싱에 한정하는 규칙³²⁾

섹션 3

공통규칙

〈〈 Art. R. 1311-10. - “침습적 문신”은 L. 513-10-1부터 L. 513-10-4까지의 조항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는 문신 제품들로만 시술할 수 있다.

〈〈 처음 구멍을 뚫을 때부터 유착까지 사용되는 금속 막대와 유착 이후에 사용되는 금속 막대는 적용을 위해 R. 5132-45조의 행정 명령과 니켈 사용에 관련된 규정 본문을 따른다.

31) 침습적 문신 기술

32) 피어싱에 대한 규칙이므로 번역 생략함

〈〈 Art. R. 1311-11. - R. 1311-1항과 R. 1311-6에 언급된 기술은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의 서면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시술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이 시술을 하는 사람은 L. 1312-1항에서 언급한 감독 관청에 3년 동안 이 동의서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Art. R. 1311-12. - R. 1311-1항과 R. 1311-6항에서 언급한 기술로 시술하는 사람은 그들의 고객이 이 시술을 받기 전에, 이 시술을 받을 경우에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과 지켜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이 정보는 이 시술이 이루어지는 장소 안에 잘 보이는 형태로 게시되어야 하고, 문서 형태로 고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정보의 내용은 “프랑스 보건부”의 법령에 따라 정한다.

〈〈 Art. R. 1311-13. - 현재 장에 제시된 규칙은, 의료인들의 치료 행위로 수행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에 관련된 법규와 행정 규칙이 별도로 규제한다.

II. “공중 위생법” 첫 번째 부분(행정 명령 부분)의 3권 첫 번째 표제의 2장 섹션2는 다음의 규정들로 보충된다.

〈〈 Art. R. 1312-9. - R. 1311-1조에서 언급된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어싱 기술 시행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사람은 5단계³³⁾의 벌금형을 받는다.

- 〈〈 1. R. 1311-2조에 의거하여 자신의 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2. R. 1311-4조에서 제시한 위생과 보건에 대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3. R. 1311-3조에서 제시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 4. R. 1311-12조에서 제시한 게시와 정보 전달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 〈〈 5. R. 1311-5조에서 제시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6. R. 1311-10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구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 7. R. 1311-11조에서 제시한 조건인,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시술한 경우

〈〈 Art. R. 1312-10. - ‘피스톨로 귀를 뚫는 기술’을 사용한 귀의 외이(外耳)와 코의 측면 피어싱 시행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에는 5단계의 벌금형을 받는다.

- 〈〈 1. R. 1311-7조에서 제시한 신고 조건이나 실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 〈〈 2. R. 1311-8조에서 제시한 위생에 대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3) 프랑스에서 경범죄를 분류할 때에는 다섯 단계로 벌금을 매김. 1단계는 최대 38유로, 2단계는 최대 150 유로, 3단계는 최대 450유로, 4단계는 최대 750유로, 5단계는 최대 1500유로(재범인 경우 최대 3000유로)임

- 〈〈 3. R. 1311-12조에서 제시한 게시와 정보 전달을 하지 않은 경우
- 〈〈 4. R. 1311-10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구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 5. R. 1311-11조에서 제시한 조건인,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시술을 한 경우
- 〈〈 Art. R. 1312-11. - R. 1312-9조와 R. 1312-10조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범법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 또는 범법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몰수당하는 추가적인 벌을 받는다.
- 〈〈 Art. R. 1312-12. - 법인은 형법 121-2항에서 제시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 장에서 제시하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형벌상 책임으로 신고될 수 있다.
- 〈〈 법인이 받게 되는 형벌은,
- 〈〈 1. 형법 131-41 항에 제시된 조건에 따르는 벌금,
- 〈〈 2. 범법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 또는 범법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의 몰수이다.
- 〈〈 Art. R. 1312-13. - R. 1312-9항과 R. 1312-10항에 제시된 범법행위의 재범시에는 형법 132-11항과 132-15항에 의거하여 처벌 받는다.

Art. 2. - I. - R. 1311-2조의 규정들은 같은 조(條)에 제시된 항들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부터, 같은 날짜에서 시작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앞 항에 언급된 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에 이루어진 활동은 이 날짜에서 시작하여 12개월 안에 신고되어야 한다.

II. - R. 1311-12조의 규정들은 이 조(條)에 제시된 항들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에 적용된다.

III. - R. 1311-5조과 R. 1311-10조의 규정들은 현재 법령이 공포되고 6개월 후에 발효된다.

IV. - R. 1311-9조의 규정들은 현재 법령이 공포되고 1년 후에 발효된다.

V. - R. 1311-3조과 R. 1311-4조, R. 1311-8조는 감시 감사 조(條)에 제시된 항들이 공포되고 1년 후에 발효된다.

Art. 3. - 국새 보관인 법무장관, “프랑스 보건부”장관 각자가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공포될 현행 법령의 관련된 사항의 실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

6.2. 문신용품의 제조 포장 및 유통에 대한 명령(2008년 3월 5일)

문신용품의 제작과 포장, 유통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국가적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공중 위생법”을 수정하기 위한 2008년 3월 3일의 법령 n. 2008-210. (행정 명령)

NOR: SJSP0766088D

국무 총리는, 프랑스 보건부의 보고에 의해 유럽 의회의 98/34/CE 지침과 기술적 규칙과 기준, 정보 사회의 서비스에 관련된 법규 영역에서 정보 절차를 정한, 1998년 6월 22일의 심의회에 의거,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L. 513-10-1조에서 L. 513-10-4조, L-5437-1조과 L. 5437-2조; 소비자법에 의거, 특히, L. 221-1-3조; 노동법에 의거, 특히 R. 231-51조; 형법에 의거, 특히 R. 610-1조; 식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1989년 9월 18일에 수정된 n. 89-674의 법령에 의거 최고행정법원(사회부)의 합의

[명령]

1조. - “공중 위생법” (행정 명령 조치) 5번째 부분의 1권 3번째 표제의 8장 이후에 다음과 같이 9장이 추가된다.

〈〈 9장

〈〈 미생물과 독소

〈〈 현재 장은 행정 명령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2조. - “공중 위생법” (행정 명령 조치) 5번째 부분의 1권 3번째 표제의 9장 이후에 다음과 같이 10장이 추가된다.

〈〈 10장

〈〈 문신용품

〈〈섹션 1 .

〈〈 문신용품의 제조, 포장, 수입

〈〈Art. R. 513-10-1. - 문신용품은 알맞은 방법을 사용하여 살균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들은 사용할 때까지 살균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용기(容器)에 담겨 공급된다.

〈〈 여러 개의 용기를 한 번에 담는 것은, 각각의 용기를 분리했을 때, 용기에 있는 물건의 살균상태를 해치지 않는 조건일 때 허용된다. 각각의 용기는, 한 사람에게 한 번 쓸 수 있는 양으로 정의된다.

〈〈 염료 물질의 품질은 1989년 9월 18일의 법령 n. 89-674의 2조에 언급된 명령에 의해 정해진 사항에 따르며,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의 전문적 연구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상위에 있는 또 다른 명시를 따른다.

〈〈 용기의 품질과 염료 물질 외 다른 물질은 L. 5112-1조에 언급된 유럽 통합기구에 서 제정한 약전의 전문적 연구를 따르며,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의 전문적 연구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상위에 있는 또 다른 명시를 따른다.

〈〈Art. R. 513-10-2. - L. 513-10-2의 두 번째 항에서 제시된 신고는 수신확인증을 받는 등기 우편으로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에 보내야 한다.

〈〈 신고 사항은:

〈〈1. 이름이나 상호, 주소와 기관이 속해 있는 기업의 법률적 성격³⁴⁾

〈〈2. 프랑스에서의 기관의 주소와 고려하고 있는 활동의 정확한 성격

〈〈3. 하청업체의 이름, 주소, 제조 작업이나 물건의 살균 중, 전체나 부분 등 위임하는 활동

〈〈4. 공급하는 제품의 사용 형태

〈〈5. L. 5131-2조의 네 번째 항에서 언급된 활동들의 대표자의 이름, 지위, 전문 자격, 활동 경험

〈〈 신고서에 서명을 하는 사람은 L. 513-10-2조의 두 번째 항의 행정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자격에 대해 정보를 주어야 한다.

〈〈 제공된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내용을 같은 양식에 작성하여,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에 제출한다.

〈〈Art. R. 513-10-3. 프랑스 내에 설립된 문신 제품 제조자나 공급 책임자는 관리당

34) 어떠한 법이나 규칙에 적용을 받는 기업인지에 관한 내용

국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5131-6 조 3항에서 제시한 서류를 R. 513-10-5조의 6번에서 언급된 주소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제품의 양과 질에 대한 작성 양식
- 〈〈2. 문신 용품의 원료의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명기
- 〈〈3. 제품의 생산 조건과 관리감독 조건에 관한 설명
- 〈〈4. 제품의 보존 기간과 그것을 결정짓는 관리 방법
- 〈〈5. 인간의 건강에 대한 제품의 안전 평가
- 〈〈6. 인간의 건강에 대한 제품의 안전 평가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전문적 자격의 등급
- 〈〈7. 제품 사용으로 인간 건강에 원치 않는 작용(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 원료의 존재 정보
- 〈〈8. L. 5131-7조 첫째 항에서 제시한 정보들을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에 전달했다는 증명
- 〈〈 현재 조항에서 언급된 각각의 요소는 그 서류가 만들어진 날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 정보 중 하나이라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가 표기된 정오표를 만들어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 〈〈현재 조항에서 제시한 서류를 구성하는 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의 결정에 의해 구체화된다.

〈〈섹션 2

〈〈 문신용품의 제작

〈〈Art. R. 513-10-4. - 문신용품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은 후에 발행된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의 대표 이사의 제안에 따라 “프랑스 보건부”의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 〈〈1. 문신용품 제작에 들어갈 수 없는 원료의 목록
- 〈〈2. 문신용품 제작에 들어갈 수 없는 원료의 목록, 단 이 목록에서 정해진 조건과 제한 사항을 준수 할 것.
- 〈〈 문신용품의 위험성 측정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과, 활동 형태, 임무는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섹션 3 〈〈문신용품의 포장

〈〈Art. R. 513-10-5. - 다른 입법 규정이나 행정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과는 별개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되는 문신용품 각각의 용기(容器)와 포장에는 읽기 쉽고, 이해가능하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이름

〈〈2. 포장 시의 내용물 용량, 무게나 부피로 표시

〈〈3. 최대 유효 기간, 이 제품을 적정한 조건으로 보관했을 때 언제까지 처음에 의도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특히 L. 5131-4조의 규칙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지로 정의됨. 이 날짜는 “A utiliser avant” (이 날짜 전에 사용할 것) 이라는 문구와 함께 명시되고 그 후에 날짜나 날짜가 찍어 있는 라벨 위치 정보가 뒤따라 표기된다. 필요시에는 제시된 최대 유효기간을 보증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날짜는 월, 년의 순서로, 명확하게 작성한다.

〈〈 4. 제조 묶음의 번호나 제조의 식별이 가능한 조회 번호

〈〈 5. “살균”(되었다는) 명시

〈〈 6. 이름이나 회사명, 프랑스 내에 설립된 제조자나 유통 대표자의 주소; 이 사항들을 생략할 때도 회사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주소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L. 5131-6조의 3항에서 제시한 서류에 나와 있는 장소를 밑줄을 쳐 표시한다.

〈〈7. 사용상의 특별한 주의 사항, 특히 R. 513-10-4조의 2번에 언급된 목록에 표기된 사항들

〈〈8. 내용물의 목록은, 혼합할 때를 기준으로 다량으로 포함된 내용물부터 적게 포함된 내용물의 순서로, “ingrédients”(내용물) 라는 표시 후에 쓴다. 농도가 1%에 미치지 않는 내용물은 농도가 1% 이상인 것 다음에 아무 순서대로나 쓸 수 있다.

〈〈 염료 물질은 « 색 분류(CI) » 대장에 따라 지칭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 국제 화학 명칭(IUPAC) », « 화장품 내용물 국제 분류법(INCI) »의 명칭, « Chemical Abstract Service(CAS) »의 분류 번호나 통상적인 화학 명칭으로 지칭한다.

〈〈 염료 물질 외에 다른 내용물은 « 국제 화학 명칭(IUPAC) »에 의해 지칭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유럽 약제 일람표의 명칭, CAS의 번호나 통상적인 화학 명칭으로 지칭한다.

〈〈 내용물로 간주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a) 사용된 원료 안에 포함된 불순물

〈〈b) 제조 시에 사용된 보조적인 기술 물질이지만 최종적인 제품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물질

〈〈9. 필요한 경우에는, R. 513-10-14조에서 제시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나 팩스 번호, 인터넷 주소.

〈〈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6번에서 언급한 주소와 7번, 8번, 9번에서 제시한 정보가 포장이나 덧붙여진 용지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섹션 4

〈〈 문신용품에 행해지는 국가적 감시 시스템

〈〈Art. R. 513-10-6. - 이 섹션의 적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잘못된 사용³⁵⁾”: 제품의 사용 목적 - 일반적인 사용, 사용 방법, R. 513-10-5조의 7번에서 언급된 사용 시 특별한 주의사항- 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이상반응”: 문신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초래하거나, 이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초래된, 유해하거나 의도되지 않은 반응,

〈〈“심각한 이상반응”: 입원이 필요하거나,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기능적인 불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선천적 기형을 발생시키는 이상반응

〈〈Art. R. 513-10-7. - 문신용품은 그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 위협을 주의하기 위한 감시 감독을 받는다. 이 감시 감독은 제품의 판매 후에 적용된다.

〈〈Art. R. 513-10-8. - 국가적 감시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

〈〈2. 소비자법 L. 221-1-3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제시되는 자격이 있는 행정 당국

〈〈3. R. 513-10-4조에서 언급된 문신용품의 위험성 측정에 대한 전문가 그룹

〈〈4. 건강 전문가

〈〈5. 제조자와 그들의 대표, 문신 제품의 제작에 관여하는 사람들, 문신용품의 유통 대표자와 배급업자

〈〈6. 문신 기술을 하는 사람들

〈〈Art. R. 513-10-9. 문신용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감시감독은 다음을 포함한다.

35) 악용, 남용

〈〈1. L. 513-10-2조의 1항에서 언급된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와 R. 513-10-12조에 언급된 정보의 수집과 같은 관련한 정보의 수집

〈〈2. 예방 목적으로 이루지는 정보의 등록, 평가, 활용; 이 정보들은 문신용품의 사용에 관한 실제와 판매와 관련된 정보들을 고려해서 분석된다.

〈〈3. 이 제품들의 사용 안전성에 관한 연구와 실습의 이행

〈〈4. 수정 사항의 실행과 유지

〈〈 감시 감독의 실행은, R. 513-10-3조에 제시된 서류에서 제출된 정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내포할 수 있다.

〈〈Art. R. 513-10-10. -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은 문신용품에 대한 국가적 감시감독 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행동을 이끌고 통괄하며, 현재 섹션에서 제시한 규칙들이 준수되도록 감시한다.

〈〈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은 L. 5131-9조 II의 2항을 적용하여, 건강 전문가, 문신 시술자와 소비자법 L. 221-1-3조에서 제시한 방식을 따라 지정된 권한이 있는 행정 당국이 이들에게 제출하는 정보를 수신한다.

〈〈Art. R. 513-10-11. 문신 용품에 의해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그것을 확인한 건강 전문가나, 그것을 알게 된 문신 시술자는 즉각,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자는 또한 그들이 알게 된 다른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신고한다.

〈〈신고는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에 의해 만들어진 표본에 따르며, 특히 이 이상반응이 제품의 잘못된 사용³⁶⁾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한다.

〈〈Art. R. 513-10-12. “프랑스 건강 제품 위생 안전청”의 대표 이사가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제품의 제조자나 유통 대표자는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L. 5131-10 조에서 언급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 1. 제품의 명칭

〈〈 2. 이름이나 회사명, 제조자나 유통 대표자의 프랑스 내에 설립된 주소, R. 513-10-5조 6번에 부합하는 제품의 라벨에 씌어진 사항들

〈〈 3.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물질의 정확한 농도

〈〈 4. 상품화된 다양한 포장의 겉모습과 용량

〈〈 이 정보들은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보존되고 기록보관소에 보관된다.

36) 오남용

〈〈Art. R. 513-10-13. - R. 513-10-12 조에 언급된 정보에 접근한 사람은 형법 226-13조에서 제시한 “직업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섹션 5

〈〈 공공정보

〈〈Art. R. 513-10-14. 공공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R. 513-10-5조에서 언급된 내용물 리스트의 형식 아래에 품질에 대해 설명된 양식

〈〈2. 또한, L. 5132-1조의 1번과 현행법의 L. 1342-2조, 노동법 R. 231-51조에서 언급된 위험물질이 문신 용품의 제작에 포함된 농도의 범위 또는 최대 농도를 ‘퍼센트’로 표기

〈〈3. R. 513-10-3조의 7번에서 언급된 “이상반응”의 성격과 빈도, 이때 잘못된 사용에서 비롯된 경우는 제외

〈〈 Art. R. 513-10-15 - 선행 조항에서 제시된 정보를 얻기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제품의 이름과 상표, 필요한 경우에는 색깔을 명시하여, R. 513-10-5조 6번에서 언급된 주소로 편지를 보내거나, 같은 조항 9번에 언급된 연락처로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품의 제조자나 유통 대표자는 이 요청을 수신한 이후로부터 3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그는 5년 동안 모든 요청과 응답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조. “공중 위생법” (행정 명령 조치)의 다섯 번째 부분의 4권 세 번째 표제의 6장 이후에 다음과 같이 7장이 추가된다.

〈〈7장

〈〈 문신용품

〈〈Art. R. 5437-1. - 프랑스에 설립된 문신용품 제작자나 유통 대표자가 다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에는 5단계³⁷⁾의 벌금형을 받는다.

37) 프랑스에서 경범죄를 분류할 때 다섯 단계로 벌금을 매김. 1단계는 최대 38유로, 2단계는 최대 150유로, 3단계는 최대 450유로, 4단계는 최대 750유로, 5단계는 최대 1500유로(재범인 경우에는 최대 3000유로)의 벌금

〈〈1. R. 513-10-4조에서 제시한 법령을 따르지 않은 문신용품을 제작하여 무상이나 유상으로 유통하였거나 R. 513-10-3조에서 언급한 정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R. 513-10-14조에서 제시한 공공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조항에서 정의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범법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들을 몰수당하는 추가적인 벌을 받는다.

〈〈Art. R. 5437-2. - 범인은 형법 121-2항에서 제시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앞에 나오는 조에서 제시하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형벌 상 책임으로 신고 될 수 있다.

〈〈 범인이 받게 되는 형벌은,

〈〈 1. 형법 131-38조에 제시된 조건에 따르는 벌금,

〈〈 2. 범법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들의 몰수이다.

〈〈Art. R. 5437-3. - R. 5437-1조에 제시된 범법행위의 재범 시에는 형법 132-11조와 132-1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는다.

〈〈Art. R. 5437-4. - 무상이나 유상으로 유통하는 문신용품의 용기나 포장에 R. 513-10-5조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표기하지 않는 위반을 하면 3단계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4조. - I. - R. 513-10-1조의 규칙들은 현재 법령이 공표되고 2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II. - R. 513-10-2조의 규칙들은 현재 법령이 공표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III. - R. 513-10-3조와 R. 513-10-5조의 규칙들은 현재 법령이 공표되고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조. - 경제 재정 고용부 장관과, 국세 보관인 법무장관, “프랑스 보건부”장관 각자가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공표될 현행 법령의 관련된 사항의 실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

6.3. 문신과 피어싱의 사전 고지정보에 대한 명령(2008년 12월 3일)

“침습적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시술에 앞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2008년 12월 3일자 법령

NOR: SJSP0829095A

“프랑스 보건부(部)”는,
민사법에 의거; “공중 위생법” 특히 R. 1311-11조, R. 1311-12조, R. 1312-9조, R. 1312-10조에 의거

【명령】

1조. - “공중 위생법” R. 1311-1조와 R. 1311-6조에서 정의된, (반)영구 화장 기술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을 시술하기 전에, 고객은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술 후에 지켜야 하는 주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조 - 고객에게 시술되는 기술에 따라 구두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다.

- 영구적인 신체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문신의 돌이킬 수 없는 특징
-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특징
- 감염 위험
- 알레르기 위험, 특히 문신의 염료나 피어싱의 장신구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진행 중인 시술의 금기 징후에 대한 연구
- 시술된 기술에 따른 유착 시간, 유착에 따르는 위험성
- 시술이 이루어진 후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 특히 빠른 유착을 위한 것

3조. - 현재 법령의 추가조항(부록)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시술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이 기술을 시술하는 사람은 이 정보에 대해 고객에게 다시 알려줘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술이 이루어진 후의 처치에 대한 지시를 보충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www.sante-jeunesse-sports.gouv.fr³⁸⁾에서 다운로드 받을

38) 프랑스 보건부 누리집

수 있다.

4조. - 미성년자에게 이루어지는 시술의 경우, 1조에서 제시한 정보는, “공중 위생법” R. 1311-11조에서 언급된 서면 동의를 받기 전에, 미성년자와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이 있는 사람 양측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문신이나 피어싱을 시술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5조. - “프랑스 보건 복지부”의 국장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실릴 이 법안의 시행에 책임이 있다.

【추가 조항(첨부)³⁹⁾】 문신, (반)영구 화장, 피어싱의 위험과 주의 사항

2008년 2월 19일의 법령 n. 2008-149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위생과 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전문가에 의한 문신, (반)영구 화장, 피어싱 시술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비롯된 “공중 위생법” R. 1311-12조는 전문가가 “그들의 고객이 이 시술을 받기 전에, 이 시술을 받을 경우에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과 지켜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피부 침투가 포함된 행위(특히, 피어싱, 문신, (반)영구 화장)는, 시술 행위를 받는 사람의 피부가 소독되지 않았거나, 피부 표피를 뚫는 기구가 살균되지 않았거나, 위생 규칙 전체가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어싱 -몸의 어떤 부분이든-,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사소한 출혈이나 작은 혈액이나 체액의 방출(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님)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감염(가장 빈번한 것은 세균성이지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구가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수단으로 고객에서 다른

39) 본 내용 자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높임말로 번역함

고객으로, 시술자로부터 고객으로, 또 예기치 않은 찰림에 의해 고객에게서 시술자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특히 고객이 치료를 받고 있거나(혈전 방지제 등), 시술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제품(문신 염료나 피어싱 장신구의 금속)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시술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주치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시술 후에 지켜야 할 기본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고객은 신체 위생에 대한 규칙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부위의 치료는 유착 기간과 질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술 이후 초기에는 소독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문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시술을 한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안내 사항(필요할 경우, 정보를 제공)

6.4. 문신과 피어싱 시술자의 교육에 대한 명령(2008년 12월 12일)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어싱’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임.

NOR: SJSP0830157A

“프랑스 보건부(部)”는, 유럽 의회와 2005년 9월 7일 전문가 자격 승인에 관한 심의회의 2005/36/CE 지침에 의거; 노동 법에 의거, 특히 R. 6351-1조와 R. 6351-6조;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R. 1311-3조와 R. 1312-9조;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실행에 대한 위생과 보건을 규정한 2008년 2월 19일의 법령 n. 2008-149의 2-V조를 따름.

[명령]

1조. - “공중 위생법” R. 1311-3조에서 제시된 교육은 최소 21시간으로 하며, 연속하는 3일로 나누어 배치한다. 교육은 두 개의 모듈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추가조항⁴⁰⁾에 정한다.

2조. - 교육 기관은 교육 전체를 수강한 교육생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 수료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교육생들의 성명
- 교육 일자
- 교육 기관의 명칭, 주소, 등록 번호, 교육 자격 취득일

교육 기관은 매해 1월 31일 전에 교육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는 지방의 지역장(長)에게 이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교육에서 교육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한다.

3조. - “공중 위생법” R. 1311-3항에서 제시한 교육을 주최하고자 신청하는 교육기관은, 관할 구역의 관할권이 있는 지역의 지역장(長)에게 교육자격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다. 이 서류는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한다.

- a) 교육 기관의 설립자의 성(姓)과 주소, 법률적 대표의 성(姓)
- b) 노동법 R. 6351-6에 따른 교육 활동 신고서의 등록 번호
- c) 교육 장소와 기술적, 교육적 자료에 대한 정보
- d) 해당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성과 이름, 그들의 자격(직위)
- e) 해당 교육 각각의 모듈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 f) 해당 교육의 주기(週期)
- g) 교육생들의 잠재적 재정 부담 총액

이 서류상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내용을 지역장에게 통지한다.

4조. - “공중 위생법” R. 1311-3항에서 제시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교육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한다.

- a) ‘의학적 위생’ 교육이 가능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자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교육 담당 팀⁴¹⁾

40) 부록

41) 교육을 담당하는 팀에는 ‘의학적 위생’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자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어야 함

b) 교육에 필요한 기술적, 교육적 자료들⁴²⁾

교육 자격은 또한 본 법령의 1조, 2조, 5조에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5조. -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a) 본 법령에 제시된 조건에 맞는 교육을 보장할 것
- b) 교육의 만족할만한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숫자의 교육 담당자들로 구성된 교육 담당 팀을 구성할 것
- c)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교육생들의 규칙적인 출석을 확보할 것

6조. - 지역장(長)은 필요 서류가 갖추어진 교육 자격 요청 서류에 대해 신고자에게 확인증을 준다.

신고 사항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역장(長)은 신고자에게 서류를 보충하도록 권고한다.

지역장은 서류 제출 확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그 교육 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교육 자격을 심사한다.

7조. - 만일 교육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특히 서류에 명시된 조건들에 일치하지 않거나 현행 법규에 의해 정해진 교육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 지역장은 교육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은 교육 자격 박탈일로부터 시작하여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다시 교육 자격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없다.

교육 자격 박탈에 대한 결정은, 해당 기관이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후에만 이루어진다.

8조. -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나 “병원 위생” 전공의 대학교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이 교육을 면제 받는다. 앞서 언급된 2005/36/CE의 지침에 따라 정의된 선행 조항에서 제시한 자격증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의 자격 있는 관청에서 발급한 “교육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교육을 면제 받는다.

42) 교재 등

9조. - 각각의 지역장은 매년 6월 30일 전에, 교육 자격이 있는 기관들의 리스트를 “프랑스 보건부”에 제출하는데, 이때 각 기관의 실제 교육생 인원수를 포함한다.

10조. - 2조 5항에 언급된 정보를, 교육 기관이 교육 자격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시작한 기간에 대해, 지역장에게 처음 제출하는 날은 2010년 1월 31일 이전으로 정한다.

11조. - “프랑스 보건 복지부”의 수장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실릴 이 법안의 시행에 책임이 있다.

【추가 조항(첨부)】

이론 교육의 기준

이론 교육은 다음 7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1영역	문신과 피어싱에 관련한 규칙과 문신의 염료와 피어싱의 장신구에 대한 규칙 상기
2영역	해부학, 피부 생리학 특히 유착에 대한 일반 지식
3영역	“공중 위생법” R. 1311-4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위생 규칙 - 세균 미생물 - 위생 규칙과 관련된 보편적인 주의 사항 - 소독제와 살균제 : 효력 범위와 사용 방법
4영역	감염과 알레르기 위험성에 대한 일반 지식. 특히, - 감염을 일으키는 요인, 특히 문신과 피어싱 행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대표적인 요인 - 감염의 메커니즘 - 위험 인자 - 전염이 일어나는 방식 - 실제 시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 금기 징후⁴³⁾
5영역	소독과 살균 - 열에 민감한 재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의 살균 - 기구들의 소독, 사용한 의료 기구의 조정과 유지를 포함함. - 절차와 사용 기구들의 명시성
6영역	시술자 보호를 위한 규칙들, 특히 혈액에 의한 감염사고로부터의 보호 규칙,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과 권고되는 백신
7영역	폐기물의 처리

실습 교육의 기준

이 모듈은 시술되는 기술에 따라 다시 그룹을 짜서 분화된 방식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이 모듈은 실제 시술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생들이 한 번 이상의 실습을 하

43) 시술하지 말아야 할 상황

는 것을 포함한다. 이 실습 교육은 아래의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8영역	다양한 작업 공간에 대한 이해(청소와 살균)
9영역	문신이나 피어싱 행위를 위한 무균 과정의 기술 방법 - 손 위생에 대한 과정 지식 - 장갑 사용에 대한 지식. 특히, 소독 - 일하는 장소를 준비하는 지식 - 장비들을 준비하는 지식. 특히, 소독과 그 준비 - 소독된 장소를 준비하고 이용하는 지식 - 소독의 과정을 아는 지식, 소독 과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식

6.5. 문신과 피어싱 작업의 신고양식에 대한 명령(2008년 12월 23일)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작업에 대한 신고 양식을 정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

NOR: SJSP0831381A

“프랑스 보건부”는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R. 1311-1조, R. 1311-2조, R. 1311-3조, R. 1312-9조, R. 1312-10조;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기술에 관련한 위생과 보건의 조건을 정한, 2008년 2월 19일의 법령 n. 2008-149의 2-I 조에 의거

【명령】

1장

문신,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업에 대한 신고

1조. “공중 위생법” R. 1311-2조에서 제시한 신고는 그 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업이 행해지는 지역의 지역관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법령의 1장, 2장, 4장의 적용을 위해 “신고자”는 “공중 위생법” R. 1311-1조에서 언급한 한 가지 또는 복수의 기술을 시행하는 개인으로 간주한다.

2조. - I. 신고 기재 사항

1. 신고자의 성과 이름
2. 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주소

3. “공중 위생법” R. 1311-1조에서 제시한 기술 중 시행할 기술들의 성격

II. - 신고자는 “공중 위생법” R. 1311-3에 맞는 교육 증명서나 이와 동등하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자격 증명을 제출한다.

3조. - 신고 사항이 형식에 맞지 않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역장은 신고자에게 신고 사항을 정규화(형식에 맞게)하거나 (빠진 부분을) 보충하도록 권고한다. 지역장은 신고 서류가 잘 갖춰진 신고서에 대해 신고자에게 확인증을 준다.

2장

이전이나 폐업에 대한 신고

4조 -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피어싱 업소를 폐업할 경우 폐업하기 최소 15일 전에 실제로 업이 행해졌던 지역의 지역장에게 신고한다.

다른 장소로 업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현재 법령의 첫 번째 조항에 맞추어 새로운 신고를 해야 한다.

3장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행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특수 규칙

5조. - 현재 법령의 1장과 2장 규정의 예외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행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현재 장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한다.

일시적인 작업은 한 장소에서 1년에 평일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용인된다.

현재 장의 적용을 위해서 “신고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경영자나 소유자, 또는 작업을 하는 개인, 필요한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자로 간주된다.

6조. - I. 신고 기재 사항

1. 신고자의 성과 이름, 신분
2. “공중 위생법” R. 1311-1조에서 언급한 기술을 작업하는 장소의 주소
3.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짜
4.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술의 성격

5.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성과 이름

II. 신고자는 “공중 위생법” R. 1311-3조에 의해 서술된 규칙을 준수하는 현재 조(6조) I의 5번에 언급된 개인에 대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4장

잠정조치

7조. - “공중 위생법” R. 1311-3 조에서 언급한 법령의 시행 시작에서 2년 후에, 1조에서 언급한 신고자는 교육 증명서나 이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지역장에게 제출한다.

8조. - “프랑스 보건부”의 수장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실릴 이 법안의 시행에 책임이 있다.

6.6. 문신과 피어싱 작업의 위생에 대한 명령(2009년 3월 20일)

‘피스톨로 귀를 뚫는 기술’을 제외한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시술의 위생과 보건의 바람직한 실행을 위한 2009년 3월 11일의 법령

NOR: SJSP0818333A

“프랑스 보건부(部)”는,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R. 1311-1조, R. 1312-4조, R. 1311-5조, 특히 R. 1312-9조;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건을 정한, 2008년 2월 19일자 법령 n. 2008-149의 2-V조에 의거

【명령】

1조. - 현행 법령의 첨부조항(부록)들은 “공중 위생법” R. 1311-4조를 적용하여, (반)영구 화장과 피스톨을 사용하지 않은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시술에 적용하기 위한 위생과 보건의 일반 규칙들을 정의한다. 첨부조항들은 또한 기구들의 살균 매뉴얼에 관한 기록도 포함한다.

2조. - 행사나 모임 등 일시적으로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이례적으로, 현재 법령의 1조에서 제시한 기술 중 하나를 작업할 경우, 작업실이 없으면, 대신 방출의 위험성을 제한할 수 있는 물리적인 벽에 의해 대중으로부터 분리된 작업 공간이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⁴⁴⁾. 단, 다른 규칙들은 여전히 적용된다.

3조. - 추가 조항(부록)은 인터넷 사이트 www.sante-jeunesse-sports.gouv.fr⁴⁵⁾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4조. - “프랑스 보건부”의 국장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실릴 이 법안의 시행에 책임이 있다.

【추가 조항(첨부) | 】

(반)영구 화장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시술을 위한 위생과 보건 일반 규칙

1. 문신은 적절한 환경에서 작업되어야 한다.

문신은 환기가 잘 되고 협소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되어야 한다.

이 장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다른 모든 기능들로부터 독립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공간(작업실)

그 방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만족해야 한다.

- 다공질(多孔質)이 아닌 매끄러운 물질로 이루어지고, 살균 제품의 반복적인 사용과 유지 보수를 견딜 수 있는, 작업실 바닥과 평면,

- 섬유로 되어 있지 않고, 세척이 가능한 표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작업실에 포함되어 있거나 바로 옆에 팔려 있어야 한다. 세척 공간은 최소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이나 기계적으로 물이 나오고 잠기는 세면대,

44) 결국,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문신업소 대신에 벽으로 만든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해도 된다는 의미임. 문신 컨벤션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판단됨

45) 프랑스 보건부 누리집

액체비누 분사기, 일회용 수건(냅킨) 공급기를 포함해야 한다.

b) 다음과 같이 분리된 두 공간

- 재료의 소독과 세척 전용 공간: 이 공간은 작업실의 조건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공간은 분리된 두 개의 부분을 포함한다. : 재료의 세척-살균 공간, 소독-포장 공간

- 폐기물과 오염된 천(세탁물) 보관 전용 장소

작업실과 소독-세척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다공질이어서는 안 되고, 쉽게 세척 가능해야 한다.

고객에게 설치되는 기구를 둘러싸는 피복은 세척 가능해야 한다.

전문가(시술자)는 시술실과 소독-세척 공간에 동물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2. 이 공간들은 실제 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작업실과 세척 전용 공간은 매일 청소해야 하고, 특수 살균작용 용액으로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 바닥과 표면, 기구의 세척은 규격 NF EN 1040과 NF EN 1275가 적혀 있는 살균-세척 제품으로 한 번 세척하거나, ,

- 상업(일반) 세제-헹굼-같은 규격이 적혀 있는 살균제로 연속하여 세 번 살균해야 한다.

작업실의 기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일회용 소재에 살균-세척 제품을 적셔서 물(젖은, wet) 청소를 해야 한다.

각각의 고객 사이에⁴⁶⁾ 사용된 모든 표면은 청소되고 살균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실 안에 생물학적인 얼룩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실과 그 기구들은 지체 없이,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일회용 소재에 살균-세척 제품을 적셔서 청소를 해야 한다.

3. 전문가는 손 위생에 대한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손을 소독하기 전에 모든 장신구는 제거되어야 한다.

시술자의 손 소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NF EN 1040, NF EN 1499 규격이 명시된 살균 액체 비누나 살균 거품 용액으로,

46) 시간적인 의미임

NF EN 1499 규정의 첨부조항 A에서 묘사되는 손씻기 기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손의 위생적인 세척이나

- NF EN 1040, NF EN 1275, NF EN 1500 규격이 명시된 수분-알콜 제품을, NF EN 1500 규정의 첨부조항 A에서 묘사되는 손 비비기(마찰) 기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손의 위생적 처치를 해야 한다.

손을 소독한 후에 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술자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사용되는 장갑은 라텍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료여야 한다. 장갑은 CE⁴⁷⁾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살균된 장갑은 의료 규칙 II (a)등급, 살균되지 않은 장갑은 I 등급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장갑은 고객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어야 하며, 같은 시술이 진행 중이더라도 적어도 두 시간마다 장갑을 교체해야 한다.

시술자가 문신 시술과 관계없는 다른 어떠한 물건에 접촉할 때마다 장갑을 벗어야 한다. 시술을 재개하기 전에, 손을 소독한 후에 새로운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4. 시술자는 특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문신을 하는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문신을 할 피부나 점막 부위는 상처 없이 깨끗해야 하며 다음의 네 단계를 준수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1) 4단계에서 사용되는 살균제품과 같은 계열의 살균 액체 비누나 살균 거품 용액으로 세척

2) 헹굼

3) 건조

4) 진피 소독법은 NF EN 1040과 NF EN 1275 규격에 해당하는 소독액을 두 번 연속적으로 도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의 도포 사이와 두 번째 도포 후에, 특정 소독액이 작용하는 시점 제조자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만, 적어도 완전히 건조될 때 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문신을 할 부분의 제모는 문신 시술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일회용 금속 장치로 이루어진다.

5. 전문가(시술자)는 알레르기와 감염의 위험을 줄여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47) 'conformite europeenne'. 유럽연합의 규정에 맞는 제품이라는 표시. 유럽 연합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

각각의 고객에게 하는 각각의 시술마다 피부에 침투하는 바늘은 소독된 것이어야 하고 일회용이어야 한다. 바늘의 받침대(관)은 소독되어야 하고, 각각의 사용 후에 « 소독 매뉴얼 » 추가조항에 묘사된 과정을 따라야 한다.

고객의 피부나 점막과 접촉하지 않은, 앞서 언급된 기구에 연결된 다른 요소들은 NF EN 1040, NF EN 1275, NE T-72-180 규격이 씌어진 세척-소독 용품으로 세척되어야 한다. 이 세척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써야 하며 세척은, 매일, 그리고 얼룩이 생길 때마다 이루어진다.

사용되는 염료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규칙들에 따라야 하고, 제조자의 권장 사항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문신 염료는 주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희석되어야 한다.

검사를 하는 의자나 침대는 일회용 보호장비로 덮여야 하고, 손님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어야 한다.

6. 전문가(시술자)는 특수 위생 규칙을 준수하며 문신을 시술해야 한다.

작업 테이블은 시술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사전에 테이블을 소독을 한 후에, 미리 준비된 염료 캡, 문신 염료, 행균 물을 올려놓을 일회용 무균 스포를 설치해야 한다.

염료 캡을 채울 때, 염료 병의 주입 용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염료 캡에 닿아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염료 캡 안에 염료를 담아 놓을 수 있다.

바셀린을 사용할 경우, 바셀린은 원래 포장된 상태에서 일회용 장치를 사용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시술이 이루어진 직후에, 바늘의 받침대(관)은 « 소독 매뉴얼 » 추가조항의 규정에 따라, « 소독 전 단계 » 통에 잠기게 해야 한다.

감염 위험 주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특히, 바늘과 장갑)의 제거는, 이에 해당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 조항(첨부) II】

신체 피어싱 기술의 시술을 위한 위생과 보건 일반 규칙⁴⁸⁾

48) 피어싱에 대한 내용이므로 생략

【추가 조항(첨부) III】

기구 살균 매뉴얼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들의 살균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

1. 처치 전 단계 또는 살균 전 단계: 재사용이 가능한 모든 기구는 각각의 사용 직후에 기구 전체가 세척-살균 용액 속에 잠기도록 담겨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분해한 후에 제조자에 의해 권장된 희석 비율과 담그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면서 기구 전체를 담가야 한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수돗물로 충분히 헹궈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세척 : 세척은 반드시 '살균 전 단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스테인리스 기구들도 반드시 세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용 전에, 그리고 첫 번째 살균 전에 이루어진다. 세척은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세척 기계나 초음파 용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세척은 반드시 다음 네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화학적 작용(세척), 기계적 작용(솔질하기), 온도와 시간(세척용품의 제작자의 지시에 따름) ; 세척 후에는 충분한 물로 헹궈야 하고,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일회용 부직포나 직물로 닦아서 꼼꼼하게 건조해야 한다.

살균 전에 기구의 청결과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그 기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살균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3. 포장 : 포장은 살균된 상태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균 방식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살균 : 살균은 내열성이 있는 기구를 위하여, 진공을 만들 수 있는 뜨거운 증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134도로 18분 동안 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건조한다. 살균 기계의 포장, 적재 준비, 적재, 개시, 하역 단계와 살균 기계의 일상적인 관리는 제작자의 권고를 따른다.

5. 내열성이 없는 기구를 위한 살균의 대안

내열성이 없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기구나 내열성이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기구를 위한 높은 수준의 살균 과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살균 전 단계’와 세척 단계는 살균을 하는 다른 기구들에 사용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내열성이 없는 기구의 살균 단계는 기구를 살균 용액에 완전히 담그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높은 단계의 살균을 위하여 제조자의 권고에 맞는 온도와 시간을 지켜서 NF EN 1040, NF EN 1275, NF T72-180 규정에 부합하는, 내열성이 없는 의료 장치를 위한 살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단계가 끝나는 대로 즉시, 이 기구를, 일회용 살균 장갑을 사용하여 살균된 용기 안에 있는 플라스틱의 살균된 물로 충분히 행궤야 한다(살균된 물은 각각의 작업마다 새롭게 교체해야 하며, 용기는 한 번 사용한 후 다음 사용 전에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행궤이 끝나면 이 기구는 살균된 일회용 부직포나 직물로 꼼꼼하게 닦아 건조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즉시 사용되거나, 살균 포장에 의해 보호되어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즉시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사용하기 전에 항상 살균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각의 살균마다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구의 유형, 날짜, 사용된 제품, 시간, 기술자의 이름 등)

6. 보관

기구는 라벨을 붙이고,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6.7. 문신과 피어싱 기술자의 교육에 대한 명령 개정(2010년 1월 20일)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어싱’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을 수정하기 위한 2010년 1월 20일의 법령

NOR: SASP0927622A

“프랑스 보건부(部)”는, “공중 위생법”에 의거, 특히 R. 1311-3조, R. 1312-9조.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기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건을 정한, 2008년 2월 19일자

법령 n. 2008-149의 2-V조에 의거;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어싱’ 기술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에 의거;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시술에 대한 신고 양식을 정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에 의거; ‘피스톨로 귀를 뚫는 기술’을 제외한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시술의 위생과 보건의 바람직한 실행을 위한 2009년 3월 11일의 법령에 의거.

[명령]

1조. - 위에서 기술된 2008년 12월 12일자 법령의 10조 후에 다음과 같이 10 bis가 추가된다.

⟨⟨Art. 10 bis. - “공중 위생법” R. 1311-1조에서 언급한 기술을 프랑스 내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지 않지만, 행사나 모임 등 일시적으로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이례적으로 시술하는 개인은 “공중 위생법” R.1311-3조의 교육 의무를 만족해야 한다.

⟨- 1조와 2조를 적용하여 발급된 교육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행사 주최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특수한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 행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이 특수한 교육은 최소 7시간이며, 공공행사 영역에서 문신과 신체 피어싱 작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위생과 보건 일반규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이 특수한 교육은 특정한 행사의 자격으로만 유효하다.

⟨⟨ 2조에서 6조까지의 원칙에 의해 교육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만이 이 특수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 교육 기관은 교육 전체를 수강한 교육생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 수료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교육생들의 성명
- 교육 일자
- 그 교육이 유효한 자격을 주는 행사의 날짜와 장소
- 교육 기관의 명칭, 주소, 등록 번호, 교육 자격 취득일

⟨⟨ 교육 기관은 행사의 주최자에게 교육생들의 명단을 전달한다.

⟨⟨ 행사의 주최자는, 프랑스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에서 원활

한 언어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조. - “프랑스 보건부”의 국장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실릴 이 법안의 시행에 책임이 있다.

6.8. 문신용품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의 목록 개정(2013년 5월 24일)⁴⁹⁾

문신용품 제작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들의 목록을 정한 2013년 3월 6일의 법령을 개정한 2013년 5월 24일의 법령

NOR: AFSP1313386A

“프랑스 보건부(部)”는,
문신용품 제작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들의 리스트를 정한 2013년 3월 6일의 법령에 의거, 특히 1항의 4번

[명령]

1조. - 위에서 기술된 2013년 3월 6일자 법령의 1조 후에 다음과 같이 1 bis가 추가된다.

〈〈Art. 1 bis - 1조의 행정규칙에서 4번에 언급된 물질에 대한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2조. - “프랑스 보건부”의 국장과, “프랑스 의약품, 건강 제품 안전청”의 대표 각자가 프랑스 공화국 공식 기관지에 공표될 현행 법령 관련 사항의 실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

49) 금지 원료 목록은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개정된 목록은 검색되지 않음

7. 일본

7.1. 미용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도쿄 지방 법원 1990년 3월 9일, 판례시보 1370호 159항)

[죄가 될 만한 사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의 기재대로 1988년 4월 7일 경부터 1989년 4월 24일 경까지 도쿄 미나토쿠(港区) 가게 안, 혹은 도쿄 시부야쿠(渋谷区)〈번지 생략〉소재의 가게 안에서 대략 12번에 걸쳐 표의 기재 A씨와 기타 9명에 대하여 명, 기미 등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국소 마취제 실로카인(xylocaine)주사액을 기재한 신체 부위에 도포하거나 주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사기 혹은 바늘을 이용하여 해당 신체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표목] <생략>

[쟁점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하는 판시행위에서 국소 마취제 도포 및 주사 및 주사기에 의한 색소주입행위가 모두 의사법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다투지 않지만, 바늘에 의한 색소주입 행위는 그 목적이 미용에 있고 인체에 위험이 크지 않은 행위로서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유사한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용인, 묵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판소 판단을 말하고자 한다.

전 제시 관계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람의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앞으로 “본건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 색소를 문힌 바늘을 가느다란 봉 끝 혹은 전동 기구에 고정시켜 사람의 피부에 여러 번 투과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이다. 본건 행위를 시술함으로써 색소를 일정기간 피부 내에 정착시켜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 눈썹, 입술 등의 색조를 아름답게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멍이나 기미 등 피부 병변(病變)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건행위는, 몇 년 전부터 아트 메이크업이라든가 반영구 화장과 유사한 용어로 통칭되어, 다수 업자가 잡지 등에 광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인간의 피부는 그 표면이 표피, 진피, 피하조직의 삼중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표피는 부위에 따라 또는 개인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두께는 0.1 혹은 0.3mm이라는 매우 얇기 때문에 본건행위를 시술하면 바늘 끝을 표피 내에 세우는 것은 기술적으

로 불가능하며, 적어도 진피 내까지 바늘이 도달하여 진피까지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출혈이 따르게 된다. 이는 일정기간 색소가 피부 내에 유지된다는 본건행위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신진대사에 의해 약 한달 이후에는 탈락하는 표피에 색소를 넣는다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건은, 정상적인 피부뿐만 아니라, 병변이 있는 명, 기미, 화상 자국 위에 본건 행위를 시술한 것이며, 그 때 거의 모든 고객에서 상당한 출혈이 있어, 행위 후에 정상 피부 표면 위보다 염증 등으로 더욱 더 심각한 손상을 입은 반면, 색소 정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행위 전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 상태에 되어 버리거나, 혹은 색소 주입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주입된 색소가 얼룩이 되어 두드러지고, 오히려 흉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기술한 바와 같이 명 등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아트 메이크업 본래의 목적은 거의 달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또 전 게시 관계증거에 의한 본건행위 위반성에 대해서 판단한다. 의사법에 있어서 의료 행위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 및 기능으로써 행하지 않는 한 인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행하는 자의 주관적 목적이 의료인지 아닌지는 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건행위는, 바늘로 피부를 찌름으로써, 전기와 같이 피부 조직에 손상을 주고 출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하는 경우, 화농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간염 등 질병에 이환되는 위험이 있다. 또 색소를 피부 내에 주입함으로써 인해, 색소 자체 성분을 원인물질로 하는 알레르기 등의 위험이 있는 것과 함께, 색소 내에 존재하는 혐기성 세균 등에 감염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 게다가 여러 번 피부에 연속적인 자극을 주고 손상시킴으로써 진피 내에 유상피 육아종이라는 병변이 생기는 것도 지적되어 있는 것이 인정되며, 본건행위가 의사가 아닌 자가 행함으로써 인체에 구체적인 위험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변호인은, 본건행위가 미용을 목적으로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서 인식되고, 또 문신이 사회적으로 용인 혹은 묵인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에 유사한 본건행위는 영업으로서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단속도 받지 않는 것에서 판단한다면 벌써 사회에 받아들여진 행위라는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본건행위가 미용이라는 측면에서 효용이 있어 사회적으로 널리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본건행위가 전기와 같이 인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의사가 아닌 자가 본건행위를 행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그리고, 본건행위가 바늘로 사람 피부에 색소를 주입한다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예전

부터 행해지고 오는 문신⁵⁰⁾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문신도 본건행위와 같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신이 역사, 습속을 바탕으로 신체의 장식 등 많은 동기, 목적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본건행위는 전기와 같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고객을 모으고 있고, 그 광고가 충분한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인데, 이가 본건처럼 피부 병변을 두드러지지 않게 한다는 상기 목적에 거의 효과가 없거나 부적합한 것인 데다, 많은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그 요금(피부 1㎠ 당 3만 엔 혹은 5만 엔 정도)도, 고객의 기대에 거의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극히 고가라는 두드러진 차이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문신도 본건행위도 둘 다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위법성의 정도는 당연히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문신과 본건 행위 모두 결국 이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즉 그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실체마다에 취급 대상이 되는지가 판단되고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문신이 위법이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묵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와 같은 위법성의 정도가 다른 본건행위도 묵인 혹은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행위의 실체가 전기와 같은 것인 이상, 본건행위의 위법성은 높지 않은 것이라고는 인정될 수 없고, 하물며 본건행위가 사회 통념상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행위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상으로, 변호인의 본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 행위이라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령 적용】

벌조(罰條) 의사법 31조1항1호, 17조

형종 선택 징역형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 형법 21조

소송 비용 부담형사소송법 181조 1항 본문

7.2. 의료행위 단속에 대한 공고(후생노동성 2001년 11월 8일)

□ 의정의발 제105호, 의사면허가 없는 자에 따른 제모행위 등의 취급에 대해서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행한 제모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되어, 보건위생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법상의 의의(疑義)에 대해서” (2000년 7월 13월부 의사

50) 문맥상 서화문신으로 판단됨

제68호 후생노동성 건강정책국 의사과장 통지)에서 의사법 적용에 관한 견해를 보여 주고 있으나 국민에게 위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시 철저하게 하기로 하였으니, 관내 읍·면·동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 등에 이 공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제모행위 등에 대한 의사법의 적용

아래와 같은 행위는,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기는 위험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업(業)으로서 행하면 의료법 제17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1) 사용하는 기기가 의료용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레이저 광선 혹은 기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을 모근(毛根) 부분에 조사하여, 모유두(毛乳頭), 피지선 개구부(開口部) 등을 파괴하는 행위

(2) 바늘 끝에 색소를 묻혀 피부 표면에 먹 등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

(3) 산(酸) 등 화학약품을 피부에 도포하여, 주름, 기미 등에 대하여 표피 박리(剝離)를 행하는 행위

제2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등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 실태 조사 후 행위의 신속한 정지 권고 등 필요한 지도를 한다. 지도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 239법조 규정에 따른 고발을 염두하며, 경찰과 적절한 제후를 도모한다.

8. 유럽 연합

아래 목록에 있는 방향족 아민, 독성 물질은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없다.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7-1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없는 방향족 아민의 목록

CAS number	EC-number	Substance
293733-21-8		6-amino-2-ethoxynaphthalene
		4-amino-3-fluorophenol
60-09-3		4-amino-3-fluorophenol
97-56-3	202-591-2	o-aminoazotoluene
90-04-4	201-963-1	o-anisidine
92-87-5	202-199-1	Benzidine
92-67-1	202-177-1	Biphenyl-4-ylamine

106-47-8	203-401-0	4-chloroaniline
95-69-2	202-411-6	4-chloro-o-toluidine
91-94-1	202-109-0	3,3'-d-dichlorobenzidine
119-90-4	204-355-4	3,3'-dimethoxybenzidine
119-93-7	204-358-0	3,3'-dimethylbenzidine
120-71-8	204-419-1	6-methoxy-m-toluidine
615-05-4	210-406-1	4-methoxy-m-phenylenediamine
101-14-4	202-918-9	4,4'-methylenebis (2-chloroaniline)
101-77-9	202-974-4	4,4'-methylenedianiline
838-88-0	212-658-8	4,4'-methylenebis-o-toluidine
95-80-7	202-453-1	4-methyl-m-phenylenediamine
91-59-8	202-080-4	2-naphtylamine
99-55-8	202-765-8	5-nitro-o-toluidine

101-80-4	202-977-0	4,4'-oxydianiline
106-50-3	2003-404-7	Para-phenylenediamine
139-65-1	205-370-9	4,4'-thiodianiline
95-53-4	202-429-0	o-toluidine
137-17-7	205-282-0	2,4,5-trimethylaniline
87-62-7		2,6-xylidine
95-68-1		2,4-xylidine

표 7-2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없는 독성 물질의 목록

CI Name	CAS Number	CI Number
Acid Green 16	12765-78-4	44025
Acid Red 26	3761-53-3	16150
Acid Violet 17	4129-84-4	42650
Acid Violet 49	1694-09-3	42640
Acid Yellow 36	587-98-4	13065
Basic Blue 7	2390-60-5	42595
Basic Green 1	633-03-4	42040
Basic Red 1	989-38-8	45160
Basic Red 9	569-61-9	42500
Basic Violet 1	8004-87-3	42535
Basic Violet 10	81-88-9	45170
Basic Violet 3	548-62-9	42555
Disperse Blue 1	2475-45-8	64500
Disperse Blue 106	12223-01-7	
Disperse Blue 124	61951-51-7	
Disperse Blue 3	2475-4609	61505
Disperse Blue 35	12222-75-2	
Disperse Orange 3	730-40-5	11005
Disperse Orange 37	12223-33-5	
Disperse Red 1	2872-52-8	11110
Disperse Red 17	3179-89-3	11210

Disperse Yellow 3	2832-40-8	11855
Disperse Yellow 9	6373-73-5	10375
Pigment Orange 5	3468-63-1	12075
Pigment Red 53	2092-56-0	15585
Pigment Violet 3	1325-82-2	42535:2
Pigment Violet 39	64070-98-0	42555:2
Solvent Blue 35	17354-14-2	61554
Solvent Orange 7	3118-97-6	12140
Solvent Red 24	85-83-6	26105
Solvent Red 49	509-34-2	45170:1
Solvent Violet 9	467-63-0	42555:1
Solvent Yellow 1	60-09-3	11000
Solvent Yellow 2	60-11-7	11020
Solvent Yellow 3	97-56-3	11160

표 7-3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 허용치

물질명	ppm	ppb
비소(As)	2	
바륨(Ba)	50	
카드뮴(Cd)	0.2	
코발트(Co)	25	
크롬(Cr) (VI) ⁵¹⁾	0.2	
수용성 구리(Cu)	25	
수은(Hg)	0.2	
니켈(Ni)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최저치	
납(Pb)	2	
셀레늄(Se)	2	
안티몬(Sb)	2	
주석(Sn)	50	
아연(Zn)	50	
다중 고리 방향족 탄화수소(PAH)	0.5	
벤조피렌(BaP)		5

51) 크롬이 미량(trace of chromium)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 문신용 염료의 포장에 “크롬이 포함됨.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과 같은 경고문을 표시해야 함

9.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지⁵²⁾

웹 기반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문항은 아래와 같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첫머리에 설문조사 전 설문 참여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는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의 타투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한국 타투인협회(KTAA)와 한국타투협회(KTA) 소속 타투이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으로만 수행되고, 본 설문의 결과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며 추후 정부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은 서화문신을 하는 타투이스트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타투를 받는 고객이나 반영구화장을 하시는분은 본 설문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타투를 받는 고객이나 반영구화장을 하시는 분이 본 설문에 참여하실 시에, 협의를 통하여 설문조사 결과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익명이 보장됩니다. 설문 결과는 빈도 및 답변의 내용만 알 수 있으며, 누가 어떠한 답변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로 발표될 시에 한국 타투이스트들의 현황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9.1. 타투이스트가 된 동기 및 교육 내용

1. 타투를 배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예술·창작에 대한 욕구 ☐ 타투가 멋있어 보여서 ☐ 유망 직종이라고 판단하여서 ☐ 호기심에 ☐ 기타()
2. 타투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 인터넷 등을 통한 독학 ☐ 기존의 국내 타투이스트에게 도제식 수업 ☐ 기존의 국외 타투이스트에게 도제식 수업 ☐ 타투 아카데미 등 학원 수강 ☐ 기타 ()
2-1. 국외 타투이스트에게 타투를 배웠다면,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
3. 타투를 배울 때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타투 머신 사용법 ☐ 타투 디자인 등 미술 관련 교육 ☐ 기존 타투이스트의 시술 과정 관찰 ☐ 피부, 고무판 등에 타투 실습 ☐ 타투에 대한 이론 ☐ 타투샵 운영/고객관리에 관한 내용 ☐ 기타 ()

52) 본문에서는 문신 시술자 및 서화문신, 문신업소로 지칭하였으나,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자의 특징 상 해당 용어를 ‘타투이스트’, ‘타투’, ‘타투샵’으로 지칭함

4. 주로 받은 교육 이외에 추가적으로 교육 시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5. 대략 얼마 동안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타투를 해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 씩 대략 일주일 간 교육을 받은 후라면, 2, 7로 입력하면 됩니다.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은 후였고 대략 하루 세 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면, 3, 3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숫자만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하루 () 시간씩 () 일 간 교육을 받은 후

9.2. 타투 업태

6. 현재 타투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6-1. 타투리스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 ☐ 현재 처벌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 기타 (), Ⅲ. 으로 이동
6-2. 타투리스트 활동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7. 타투리스트 외에, 생계를 위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 현재 타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1. 타투샵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9. 타투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타투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타투리스트 활동을 합니까?
☐ 다른 타투아티스트의 타투샵에 고용 ☐ 출장 타투 ☐ 다른 타투리스트의 타투샵에 프리랜서 형태 ☐ 기타 ()
10. 지난 한 달 간, 몇 명의 고객에게 타투를 시술하였습니까? (숫자만을 입력하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대략 ()명
11. 지난 한 달 간, 몇 건의 타투를 시술하였습니까? (숫자만을 입력하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대략 ()건
12. 지난 한 달 간, 타투를 받은 고객은 남 녀 각각 몇 명입니까? (숫자만을 입력하십시오)
남성 ()명 : 여성 ()명
13. 지난 한 달 간, 타투를 받은 사람들의 연령 분포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숫자만을 입력하십시오)
10대()명 20~30대()명 40~50대()명 60대 이상()명

14. 신체 어느 부위에 주로 타투를 합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얼굴	☐ 목
☐ 손발	☐ 안구
☐ 몸통	☐ 팔다리
☐ 기타 ()	
15. 귀하의 개인적인 타투 금기사항이 있습니까? (ex. 특정 부위에는 시술하지 않음,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는 시술하지 않음, 특정 상황에서는 시술하지 않음 등)	
☐ 예 ☐ 아니오	
15-1. 그 금기사항은 무엇입니까?	
16. 타투 시술 시, 마취 연고나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6-1. 어느 경우에 마취 연고나 마취제를 사용합니까?	
17. 타투이스트 활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7-1. 처벌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8. 귀하에게 타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로로 귀하를 알고 타투를 받으러 방문합니까?	
☐ 기존 고객의 소개로	☐ 타투샵을 지나다가
☐ 블로그나 SNS를 보고	☐ 광고를 보고
☐ 기타 ()	
18-1. 혹시 광고를 하신다면, 어떠한 경로로 광고를 합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블로그 등 SNS 운영 ☐ 인터넷 광고 ☐ 신문 잡지 광고 ☐ 기타	

9.3. 타투 관리 현황

19. 타투용 염료나 니들(needle), 타투 머신, 파워 서플라이 등 타투 관련 도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입합 니까?	
☐ 국내 인터넷 사이트	☐ 국외 인터넷 사이트
☐ 오프라인 타투용품점(의료기기 취급업자)	
☐ 오프라인 타투용품점(의료기기 취급업자인지 확실하지 않음)	
☐ 기타 ()	
20. 위생적인 타투 작업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회용품 사용	☐ 멸균기를 사용한 도구 소독
☐ 타투 작업 부위 소독	☐ 위생적인 작업환경
☐ 타투이스트가 시술 전 손을 씻는 것	
☐ 기타 ()	
21. 1회용 거즈나 니들 등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일반쓰레기로 처리 ☐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	

☐ 소각	☐ 기타 ()
22. 타투를 받은 이후 받은 사람들이 흔하게 불평하는 부분은 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	☐ 부작용 발생
☐ 타투 색이 얼어짐	☐ 타투 시술 자체에 대한 후회
☐ 기타 ()	
23. 타투를 받은 후에, 어떠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타투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에게 방문할 것을 권고합니까? (구체적인 신체 증상 기입)	
24. 본인의 의뢰인에게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타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25.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전한 타투 작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타투이스트를 위한 위생관리 등의 교육 실시 ☐ 타투이스트 자격 관리제도 마련 ☐ 타투샵 등록 및 관리제도 마련 ☐ 타투 시술 관련 안전관리 규정 마련 (예. 미성년자 타투 시술 금지 등) ☐ 기타 ()	
26. 현재 타투이스트의 활동 혹은 타투 자격 마련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9.4. 일반 정보

2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 여	
28.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 세		
29.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중학교 졸업 이하	☐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중퇴	☐ 2년제 대학교 졸업	☐ 4년제 대학교 졸업
☐ 석사 이상		
30. 귀하가 타투이스트로서 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서울	☐ 인천	☐ 대전
☐ 부산	☐ 대구	☐ 울산
☐ 광주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기타 ()	☐ 타투이스트 활동 안 함



발행일 2015. 1. 31

발행인 임태환

발행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ISBN : 978-89-6834-151-9

